季刊 1979年 3月 13日 登錄
登錄番號 바-565

제13권 제3호 1991 가을

韓國開發研究

우리의 文化經濟學的 課題와 對應方向 朱 鶴 中

構造的 財政收支分析에 의한 財政運用의 評價 文 亨 杓

地價와 巨視經濟變數間의 因果關係에 관한 實證分析 孫 在 英

成果給制度의 巨視經濟的 含意 : 利潤共有制度를 중심으로 全 聖 寅

金融産業構造의 決定要因에 대한 實證分析 左 承 喜

國民生活水準의 國際比較分析 權 純 源

ENGLISH SUMMARY(英文要約)

KDI

韓國開發研究院

季刊 韓國開發研究

제 13 권 제 3 호 1991 가을

우리의 文化經濟學的 課題와 對應方向 ……朱 鶴 中… 3

構造的 財政收支分析에 의한
財政運用의 評價 ……文 亨 杓… 31

地價와 巨視經濟變數間의 因果關係에
관한 實證分析 ……孫 在 英… 55

成果給制度의 巨視經濟的 含意 :
利潤共有制度를 중심으로……全 聖 寅… 75

金融產業構造의 決定要因에 대한
實證分析 ……左 承 喜… 89

國民生活水準의 國際比較分析……權 純 源…113

ENGLISH SUMMARY(英文要約) ……139

編 輯 陣

委員長 宋 大 熙
幹 事 朴 佑 奎
委 員 金 寬 永 金 址 鴻
劉 承 旻 崔 範 樹
編 輯 申 東 祚

編輯問議 : 編輯委員會(965-0395)
購讀問議 : 發刊資料相談室(960-3283)

論評 및 書評 寄稿案內

本 季刊誌는 本誌에 發表된 論文과 本院에서 發刊되는 研究叢書 및 其他報告書에 대한 院內外 專門家들의 論評 혹은 書評을 揭載하고 있읍니다.

研究主題 및 그 內容과 관련되는 研究方法論 혹은 國家政策上의 爭點을 表出시켜 向後의 研究課題와 政策方向 設定에 寄與하고, 아울러 實質的이고 建設的인 批判과 討論의 習慣을 造成하자는 것이 그 趣旨입니다. 이를 諒知하시어 아래와 같은 要領에 의하여 虛心坦懷한 所感과 批評을 寄稿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첫째, 길이는 200字 原稿紙 基準 30枚 內外로 限定하되 原稿紙에 淨書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論評은 該當論文에 담긴 誤謬 혹은 爭點을 內容으로 하여 가급적 論文이 發刊된 후 3個月 以內로, 書評은 該當報告書의 主要內容 紹介, 寄與度 및 問題點 評價, 그리고 向後 研究課題 提示를 內容으로 하되 原則的으로 報告書가 發刊된 후 6個月 以內로 作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原稿는 郵便 혹은 人便으로 『韓國開發研究』編輯委員長에게 提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寄稿된 論評과 書評은 本院 所定의 審査節次를 거치도록 되어 있읍니다. 論評은 該當論文 執筆者의 應答과 함께 揭載하겠읍니다. 채택된 原稿는 稿料를 支給합니다.

우리의 文化經濟學的 課題와 對應方向

朱 鶴 中

政治經濟學은 하나의 技術도 아니고 科學도 아니다. 이는 科學 위에 서고 技術과 藝術을 管理하는 法과 行爲의 시스템으로서 어떤 수준의 道義文化(moral culture)로서만 성립될 수 있다.

—*John Ruskin*

生活水準의 값은 財貨의 所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있다.

—*Amartya Sen*

傳統的인 좁은 經濟學의 視角을 벗어나 여기서는 「러스킨」의 政治經濟學과 「센」의 福祉經濟學을 접목시킨 文化經濟學의 定立을 시도하였다. 文化經濟學은 人本主義에 입각하여 國民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뒷받침하는 것을 目的으로 科學 위에 서고 技術을 관리하며 일정한 수준의 道義文化를 필수요건으로 한 法과 行爲의 시스템의 展開를 硏究對象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러한 視角에서는 財貨의 所有보다 삶을 더 중요시한다.

먼저 「러스킨」의 政治經濟學과 「센」의 福祉經濟學의 이론적 특징을 살펴본 후 삶의 質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法秩序와 行爲와 受容能力과 道義文化의 重要性을 부각시킨 후, 이러한 理論的 視角을 우리나라의 大衆交通生活에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大衆交通網의 科學性, 交通秩序와 運轉行爲, 그 社會的 費用과 그 分擔, 交通서비스의 受容能力 등 文化經濟學的 課題를 提起하였다. 이러한 例示的 課題는 우리의 交通生活뿐만 아니라 政治, 經濟, 社會, 言論, 文化 등 모든 分野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問題點을 안고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

여기서 對應方向으로서 제시된 經濟社會秩序의 確立, 社會的 報償體系의 合理化, 受容能力의 淳化와 培養, 道義文化의 涵養 등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文化經濟學의 시각이 도입되어야 이러한 對應이 經濟學의 틀에 收容될 수 있으며 이러한 視角의 援用은 우리 經濟가 당면한 經濟的 難題들을 根本的으로 해결하는 데 새로운 接近의 모색을 가능케 할 것으로 생각된다.

筆者：本院 先任硏究委員

* 本 論文의 草稿를 읽고 유익한 論評을 하여 주신 李奎億, 趙正濟 박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Ⅰ. 問題의 提起

우리 經濟社會는 불과 한 世代라는 짧은 기간에 대단한 量的, 質的 經濟成長을 가져왔다. 「보리고개」와 「단벌신사」로 상징되었던 60년대의 가난에서 벗어나 바야흐로 1인당 국민소득 6千弗 時代로 접어들었으나 이에 걸맞지 않는 大衆消費社會가 90년대에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物質的 풍요를 급속히 이룬 것은 否認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개개인의 國民은 냉엄한 效率第一主義와 物質萬能主義의 거센 파도 속에서 經濟力集中이 반영하는 거대한 組織의 하나의 부속과 부품의 역할을 하는 불안한 人間關係를 유지하며 정신없이 바쁜 가운데 「不確實性의 時代」에 직면하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적인 脆弱階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우리 國民은 표면상 어느 정도의 生活要件을 갖추기는 하였으나, 生活全般에 있어서 기계적이고 沒個性的인 쫓기는 生活에 급급한 실정이며 과연 누구의 무엇을 위한 經濟成長이었느냐 하는 疑問에 대하여 속시원한 解答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問題에 대하여 經濟學徒로서 관심을 갖는 이유로서 크게 네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경제학의 本質이 사람의 복지와 滿足度를 가장 크게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經濟의 主體인 個個人이나 國民全體가 물질적 풍요와, 나아가 福利를 느끼지 못하고 단순히 어떤 組織의 手段이 된다면 이는 目標와 手段이 바뀐 現象이라고 하겠다. 둘째, 先進諸國의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大衆消費社會를 뒷받침하는 大量生產體制에서 單純化와 劃一化의 특징이 퇴색하면서 多品種少量生產體制 아래 재화와 서비스를 個性化, 高附加價値化하는 大衆文化와 消費社會가 전개될 것인바,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政府와 企業의 정책입안자의 眼目과 視角의 調整이 필요하다. 셋째, 重厚長大型의 製品으로 특징지어지는 產業社會에 각종 滯症으로 社會的 費用이 증대되고, 大氣, 水質, 土壤 등의 環境汚染으로 所得水準의 증대에 비하여 삶의 質의 向上은 극히 미흡하거나 限界的인 반면에,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한 非效用이 날로 증대되어 國民生活의 非福祉要因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어 經濟成長의 質的變化를 유도하여야 할 必要가 있다. 끝으로, 經濟發展의 本質이 迂廻生產이 함축하는 바와 같이 時間을 버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經濟活動結果로 남는 資本施設의 保存性과 耐久性에 대한 配慮가 학문적으로도 미흡하고 현실적으로 부족한바, 이에 대한 注意를 환기시키면서 이것이 經濟發展에서 갖는 意味를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近代產業社會가 갖는 여러가지 問題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經濟學의 한 應用分野로서 정립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이른바 文化經濟學(cultural economics)이다. 이 논문을 통하여 文化經濟學의 視角과 理論的 骨格을 살펴보고, 이것이 함축하는 經濟社會發展論的 意義를 살펴본 후에 우리 經濟社會가 안고 있는 文化經濟學的 課題를 大衆交通生活의 例示的 分析으로 검토한 후 그 對應方向을 큰 테두리로 묶어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文化經濟學의 視角과 理論體系

文化經濟學은 모든 분야의 선각자가 흔히 그러하였듯이 經濟學說史上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존 러스킨」(John Ruskin, 1819~1890)을 그 創始者로 하고 있다. 「러스킨」에 의한 文化經濟學은 政治經濟學이라는 넓은 意味와 藝術文化活動에 관련된 應用經濟學이라는 좁은 意味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의 文化經濟學은 「러스킨」의 政治經濟學이 발간된 이후 오랫동안 경제학자의 주목을 끌지 못하다가 근래에 近代經濟學의 무기력한 現實對應能力에 대한 失望과 經濟學의 本質에 대한 反省으로 「러스킨」의 政治經濟學이 再吟味되고[1], 「아마트야 센」(Amartya Sen)과 같이 國民福利라는 觀點에서 福祉經濟學의 定立이 시도되면서 체계화되는 過程에 있다[2].

反面에 좁은 의미의 文化經濟學은 藝術文化活動이라는 특수한 서비스의 生産과 配分의 問題를 비롯하여 이를 위한 財源調達과 投資 등의 問題를 다루는 經濟學의 하나의 應用分野로서 體系化되고 있으며, 이에 관심이 있는 學者들로 文化經濟學會가 결성되어 있다[3]. 여기에서는 좁은 의미의 文化經濟學보다 넓은 의미의 文化經濟學이 지니는 視角과 問題意識을 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러스킨」의 政治經濟學

古典經濟學의 하나의 學派로서 이미 130여년 전에 經濟學의 基本前提에 대한 하나의 反省으로서 제기된 「러스킨」의 政治經濟學은 크게 세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는 政治經濟學의 本質과 主題에 대한 反省이며, 둘째는 그의 독특한 價値論이며, 셋째는 그의 政治經濟學을 뒷받침하는 法秩序와 經濟行爲의 社會시스템과 道義文化에 대한 그의 立場이다.

가. 經濟學의 本質과 主題에 대한 反省

19세기 영국과 독일의 産業革命過程에서 팽배해졌던 物質主義와 非人道主義에 충격을 받은 「러스킨」은 政治經濟學의 本質을 家計經濟學과는 달리 國民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 社會나 國家를 運營, 管理하는 데 관한 學問體系로 보고 物質보다는 삶(life)의 풍요에 그 焦點을 맞추고 있다[4]. 여기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그 結果와 原因을 이루며 삶의 상징적인 活力으로 나타나고 그 維持의 바탕이 된다고 한다. 또한 「러스킨」에 의하면 삶이란 특징적으로 人性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幸福과 힘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經濟社會의 量的 增大는 幸福과 일관성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한 個人의 安樂을 무한히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변 사람들의 犧牲을 강요하거나 그들의 삶의 可能性을 박탈하여서는 안된다고 한다.

이러한 目的 아래 「러스킨」은 政治經濟學을

1) J. Ruskin(1862, 1871), 池上 惇(1991a, 1991b).
2) A. Sen(1985, 1987).
3) 文化經濟學會(The Association for Cultural Economics)는 미국 애크론大學校(The University of Akron)에 그 事務室을 두고 있으며 「헨돈」(W.S. Hendon) 교수가 現會長이다.
4) J. Ruskin(1871), pp. 2~3.

科學도 아니고 技術(art)도 아닌 法秩序와 行爲의 體系로서 파악하였고, 그 體系는 科學 위에 서고 技術과 藝術을 관리하며 어떤 수준의 道義文化의 要件을 갖추어야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5]. 이러한 政治經濟學에 대한 그의 視角은 그 당시 科學萬能主義의 思潮와 오늘날 이른바 科學的 分析을 고집하는 合理主義經濟學의 視角과는 근본적인 差異가 있다. 經濟活動의 計測과 計量分析을 고집하는 전통적 經濟學은 經濟活動의 循環性 때문에 因果關係를 분리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因果關係를 機械論的인 函數關係로 파악함으로써 經濟社會現實과 乖離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러스킨」의 政治經濟學은 科學 위에 섬으로써 전통적 經濟學을 수용하였으며, 그 위에 技術과 藝術을 관리하고 어떤 수준의 道義文化의 要件을 갖춘 法秩序와 行爲의 體系라는 점에서 보다 광범위하고 經濟人과 產業社會의 行態를 중요시한 人本主義經濟學이라고 하겠다.

사실상 같은 과학과 기술수준을 지녔다 하더라도 經濟秩序에 따라 같은 生產要素로서 이룬 경제활동의 결과가 社會主義體制의 몰락을 초래한 것과 같이 달리 나타날 수 있으며, 다른 모든 條件이 같다 하더라도 美·日經濟의 역사적 경험과 같이 道義文化와 經濟行爲의 差異에 따라 國民經濟의 盛衰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觀點에서 게임의 규칙인 法秩序와 道義文化와 經濟行爲의 相關關係로 政治經濟學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러스킨」의 主張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 크다.

5) J. Ruskin(1871), p.1.
6) J. Ruskin(1871), pp.12~13.
7) J. Ruskin(1862), p.79.

나. 價値論의 修正

政治經濟學의 목적을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규정한 「러스킨」은 물질적 富(rich)와 풍요(wealth)를 上下의 位階를 지닌 槪念으로 파악하고 이를 삶(life)과 연결짓고 있다. 이러한 連繫關係에서 「러스킨」은 재화의 가치를 固有價値(intrinsic value)와 有效價値(effectual value)로 구분하였다[6]. 財貨의 固有價値는 단순히 일정한 속성과 기능을 갖는 것으로서 그 기본 위에 消費者의 受容能力(acceptance capability)에 의하여 有效價値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統一米나 京畿米는 쌀로서 固有價値를 지니고 있으나 前者보다 後者의 有效價値가 높은 것을 「러스킨」의 價値論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固有價値는 物質的 富와 관련되며 有效價値를 더함으로써만 풍요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受容能力과 享受能力을 배양하고 이에 맞는 財貨를 生產·消費함으로써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사람의 受容能力과 享受能力은 「센」의 복지경제학과 같이 客觀性이 다소 미흡한 短點은 있으나 理論的으로는 바른 接近임을 否認할 수 없다.

이러한 「러스킨」의 價値論은 古典學派와 같이 가치가 勤勞에서 生成된다는 勞動價値說에 두면서도 勞動에 특별한 意味를 주고 있다. 즉 勞動은 단순하게 정신적, 육체적인 일이 아니라 사람과 대립되는 客體에 사람의 生命을 불태우는 藝術家的인 努力으로 보았다[7]. 이러한 과정에서 勤勞者는 理性과 精誠과 體力으로 自然的, 經濟的 制約을 극복함과 아울러 의문과 시련과 갈등 등 內面的인 어려움을 이겨나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勞動은 익혀진

技術을 단순히 반복하는 機械論的인 것이 아니라 知性과 創意, 敎育과 訓練, 硏究와 改善으로 간단없이 보다 더 잘하고 좋은 財貨를 만드는 完全主義者의 執念과 삶의 보람을 찾으려는 熱意에 찬 것이다. 이러한 視角에서 勞動의 價値創造를 보아야만 勤勞態度와 匠人精神이 生産性增大와 技術革新과 競爭力 强化에 미치는 影響을 인정할 수 있는 理論的 根據가 성립된다.

다. 法秩序와 經濟行爲와 道義文化

「러스킨」은 政治經濟學을 科學과 技術과 藝術을 종합한 法秩序와 行爲의 體系로 보고 어떤 수준의 道義文化라는 前提條件下에서 성립된다고 하였다. 政治經濟學에 대한 이러한 視角은 경제현상을 단순한 投入·産出關係로 규정짓고 사람의 勞動마저 하나의 生産要素로 규정한 機械論的인 전통적 經濟學과 근본적인 差異點을 나타내고 있다. 「러스킨」의 立場은 단순한 投入産出關係를 포함한 經濟社會 全體를 폭넓게 보고 게임의 규칙을 포함한 法秩序 안에서 體系的인 行爲로 보고 있다. 또한 많은 經濟主體가 개별적으로 利己心을 발휘해야 하는 行爲는 法秩序와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어떤 수준의 道義文化로서 다듬어진다고 한다.

물론 「러스킨」의 主張은 法秩序와 行爲와 道義文化에 치우친 느낌은 있으나 전통적 經濟學의 틀로서 설명하지 못하던 生産性과 作業環境이 무관하다고 결론지었던 「호오돈」工場의 實驗結果(the Hawthorne Experiment)나 대조적인 美國과 日本經濟의 成長實績의 현격한 差異가 이러한 視角으로 보면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된다. 즉 「호오돈」工場의 實驗에서 作業與件의 좋고 나쁜 變化에도 勞動生産性이 계속 높았던 것은 實驗의 對象으로 選擇되었다는 意識이 勞動者에게 作用한 때문이며[8], 近年에 있어 객관적인 經濟與件이 보다 나쁜 日本經濟의 實績이 美國보다 좋은 것은 日本人들이 갖는 보다 높은 수준의 道義文化와 社會的 適應能力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法秩序와 道義文化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經濟行爲는 協同的인 人間關係와 원활한 意思疏通으로 나타나는데 「러스킨」은 이를 그의 유명한 藝術評論의 하나인 「베니스의 돌」이란 名作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9].

즉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베니스라는 都市는 石工, 設計者, 施工者, 市民 등이 각자의 機能을 다하는 사람들의 協同的 組織을 이룸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都市를 이루는 몇가지 협동적인 인간관계를 들면 첫째는 개개인의 住居環境은 물론 살기 좋은 도시를 형성하는 協力體로서 自治團體, 둘째 都市를 만드는 專門家와 助言者로서 이를 향유하는 市民과의 對話와 協力의 바탕, 셋째 歷史나 文化의 保存은 물론 홍보, 교육, 복지시설을 포함한 쾌적한 空間의 形成, 넷째 각종산업시설의 적절한 配置, 다섯째 다른 지역과의 文化交流와 독특한 地域文化 창달을 위한 文化活動의 基盤(infrastructure)造成 등이다. 이러한 要件들은 協同的 人間關係를 전제로 한 상반된 利益集團과 主體간에 對話와 理解로써 전체적인 調和를 이룸으로써 充足되며 가장 좋은 都市의 형성이란 全體로서의 目的을 달

8) F.J. Roethlisberger & W.J. Dickson(1939).
9) J. Ruskin(1862, 1871), 池上 惇(1991 b), pp. 94~97 참조.

성하게 된다.

이와 같이 法秩序와 行爲와 道義文化間의 연계는 경제사회가 分業化, 專門化되고 거대한 有機體로서 성장함에 따라 어느 한 個體의 잘못이 전체를 좌우하는 근대적 組織社會에서는 불가결한 要件이다. 이러한 連繫가 원활하게 作動하여 協同的 人間關係가 성립하기 위해서 情報의 公開를 통한 意思疏通의 원활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하여 하나의 社會的 監視機能이 확립된다. 이와 같은 「러스킨」의 見解는 19세기 英國이나 70년대까지의 우리나라에는 너무 時代的으로 앞서거나 주요한 一部를 설명하는 데 불과하였으나, 오늘날 恐龍과 같이 거대하게 자라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近代經濟社會에서 주목하여야 할 하나의 先見之明이라고 하겠다.

2. 센(Sen)의 福祉經濟學

전통적인 經濟學의 틀 가운데에서 福祉의 本質을 규명하는 가운데 「센」은 그의 독특한 效用論을 전개하였다. 그의 學說은 80년대 중반에 제기한 차원이 높은 原論的인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應用이 구체화되지 않아 定說化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결론적으로 그의 立場은 「러스킨」의 問題提起와 유사하여 文化經濟學 또는 人本主義經濟學의 하나의 支柱가 될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가. 傳統的 效用論에 대한 檢討와 批判

「센」이 그의 效用論을 전개하기에 앞서 이미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效用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있다. 「센」에 의하면 功利主義的 立場에서 效用은 크게 두가지 의미로 定義된다고 한다[10]. 첫째는 古典的 功利主義의 입장으로 快樂(pleasure), 滿足(satisfaction) 또는 幸福(happiness)으로 보는 視角과, 둘째 近代的 功利主義의 입장으로 欲求充足(desire-fulfillment)으로 보는 視角이다. 그 이외에도 근래에는 效用은 무엇이든 개인이 극대화하려는 것이나 어떻게 평가되든지를 불문하고 단순히 개인의 福利(well-being)나 便益(advantage)으로 理解되기도 한다. 여하튼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의 效用은 근래에 數理的으로 정확히 규정되는 반면 그 內容은 극히 부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이론적 設定과 實證分析에서 개인의 행복, 개인의 욕구, 행복에 대한 개인의 입장, 개인의 동기, 선택행위의 극대화 등등 분명히 구분될 수 있는 문제를 분별하지 못하는 '합리적인 바보들(rational fools)'로 사람들을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11].

效用을 快樂(pleasure)이나 滿足이나 幸福으로 보는 立場에 대하여, 「센」은 學界에서 이 개념이 너무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尊重되는 것은 기쁨을 주는 것이며 그 評價에 의하여 기쁨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기쁨의 定義는 지나치게 넓은 개념이며 「벤덤」(J. Bentham)의 幸福과 「마샬」(A. Marshall)과 「피구」(A. Pigou)의 滿足도 같이 광범위한 개념이다. 이들 개념은 어떤 同質的 量으로 계량화될 수 없으며 다른 요인으로 구성된 方向量(vector)과 精神的 狀態와 그 원인을 제공하는 影響과 연결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넓은

10) A. Sen(1987), pp.7~12.
11) A. Sen(1985), p.4.

범주 속에서도 說得力은 극히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幸福은 가치있는 것의 成就라고 해석되기도 하나 종교, 정치적 선전, 문화적 압력 등으로 사회적 適應化(social conditioning)를 이루어 불만스러운 상태에서 客觀性이 없는 幸福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12].

效用을 慾求充足으로 보는 近代的 功利主義에 대하여도 「센」은 만족하지 못한다. 「피구」는 대부분의 商品이 기대하는 滿足度와 같은 비율로 욕구된다고 假定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이러한 滿足과 慾求의 관계가 만족과 불만족을 이루어 경제적 福祉로 나타나며 유사한 測定値와 연결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센」은 慾求가 評價의 기준으로 부정되면 「피구」의 유도된 욕구의 중요성이 그 의미를 잃게 된다고 주장한다[13]. 즉 욕구는 評價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이는 평가활동이 아니며, 내가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等式關係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내가 원하기 때문에 價値가 있다는 말은 바로 내게 價値가 있기 때문에 원한다고 할 수가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왜 이것을 높이 評價하느냐라는 질문에 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재치있는 농담일 뿐 욕구가 평가의 일반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 또한 「센」은 慾求充足이 福利나 생활수준의 높음을 반드시 나타낼 수 없다는 반증으로서 혹사되는 奴隷, 의기상실한 失業者, 희망 없는 極貧者, 순한 主婦 등을 들고 있다[14]. 이들의 소박한 慾求와 그의 充足은 결코 큰 成功으로 볼 수 없고, 형편이 좋은 사람의 자신만만하고 강한 慾求의 充足과 같은 성격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慾求充足은 가치의 유일한 目的物이 될 수 없으며 評價方法으로서도 큰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效用의 세번째 해석은 選擇(choice)인바, 선택은 효용의 序數만을 나타내고 基數로써 測定은 보다 복잡한 行動樣式의 규정이 前提되어야 한다. 이 이외에도 선택은 二進法的 관계라는 제약적 限界가 있으나 경제학에서 흔히 이러한 입장이 채택되는 理由는 觀察이 가능하고 선택만이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選擇은 評價와는 별개의 행동으로 慾求의 反映을 나타낼 따름이며 選擇은 개인별 比較가 어려울 뿐 아니라 個人의 動機에 의존한다는 제약이 있다[15]. 만약 選擇이 개인의 福利만을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문제가 없으나 흔히 선택의 기준은 그 이외의 國家의 矜持, 자기가 소속한 운동팀, 가족의 누구를 위해서라고 하면 個人의 福利는 부차적이거나 派生的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검토과정을 통하여 「센」은 기쁨, 욕구충족, 선택과 같은 效用의 解析은 福利나 生活水準을 규정하는 데 불충분하며 價値의 목표물과 평가방법으로서도 缺陷이 크다고 결론짓고 있다.

나. 生活水準의 機能과 受容能力

效用理論의 無力함은 그 원인이 되는 主觀性을 보다 客觀性 있게 개념의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데 있다. 그러므로 「피구」의 주장과 같이 최소한의 양적, 질적 基本生活 要件이 규정되어야 하나 「피구」는 이러한 개념을 可用

12) A. Sen(1987), p.8.
13) 上揭書, p. 9.
14) 上揭書, p. 11.
15) 上揭書, p. 13.

資料의 不足이라는 이유로 포기하고 말았다. 「센」은 「피구」가 포기하였던 槪念의 追求가 옳은 방향이나 단순한 財貨의 所有, 또는 물질적 풍요(opulence)만으로는 개념상 불완전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개인의 生活類型에서 파생하는 必要까지 감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6]. 이리하여 「센」은 財貨가 목적을 위한 手段으로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위하려는 삶(life)이 되거나 될 수 없는 삶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삶은 달성되어야 할 여러가지 生活要件인 機能(functionings)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力量으로 受容能力(capabilities)으로 구성되며 生活水準은 풍요와 財貨와 效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機能과 受容能力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17].

「센」은 이러한 그의 見解의 原典은 흔히 富의 極大化에 치중하고 있다고 이해되고 있는 「아담 스미스」의 國富論에서 찾고 있다. 「아담 스미스」는 財貨와 國富에 대한 執着과 物質本位의 分析에서 탈피하려고 하였다고 한다. 즉 生活條件의 표준적 특징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공식석상에 나타나도 부끄럽지 않은" 복장의 기능을 지적함으로써[18], 이러한 機能을 달성하는 要件, 즉 사회적 風俗과 문화적 規範에 따라 적합한 의복과 구두 등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스미스」는 이러한 사회적 풍속과 문화적 규범을 특정한 사회의 經濟的 與件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스미스」는 스스로의 입장을 拜金主義와 物質의 극대화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豐饒와 受容能力(생활조건의 달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특성까지 분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스미스」의 지적을 발전시켜 「센」은 이른바 受容能力에 따른 接近方式(the capability approach)을 제기하였다. 즉 생활수준의 평가에 있어서 機能은 成就를, 受容能力은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각각 의미하여 이 能力이야말로 적극적 의미에서 自由의 槪念을 함축하고 삶을 영위하면서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機會를 부여한다고 「센」은 주장한다[19]. 따라서 機能을 규정할 때 여러가지 代案을 감안하면 受容能力은 품위있는 기능의 확인에 반영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요컨대 生活水準은 存在의 상태를 나타내고 기능은 狀態의 여러 측면을 규정하며 이는 受容能力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여러 기능의 複合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대안의 선택적 자유를 반영하고 적절한 기능의 결합이 풍요로운 상태를 이루도록 유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 한 商品에 대한 例示的 適用

「센」의 재화의 機能과 受容能力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抽象的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가 들었던 식빵이란 財貨의 한 例로써 독자의 理解를 돕고자 한다. 「위이너」(Robert Wien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食品으로서의 가치보다는 貯藏과 輸送과 販賣에 보다 편리한 특징을 지닌 標準化되고 방부제가 든 生產物을 점차 수용하기에 이르렀다[20]. 이리하

16) 上揭書, p. 16.
17) 上揭書
18) A. Smith(1910), pp. 351~3.
19) A. Sen(1987), pp. 37~38.
20) N. Wiener(1967).

여 무의식중에 우리는 만족스러운 商品이라기보다는 먹이를 먹는 기분으로 식빵을 胃로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이러한 産業化의 不幸을 염두에 두고 「센」은 식빵을 최소한 두가지의 機能, 첫째로 營養攝取와 둘째로 對話의 手段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營養攝取를 위한 배려사항은 ① 新陳代謝率, ② 身體의 크기, ③ 年齡, ④ 性別(여성의 경우 임신 또는 젖먹이의 유무), ⑤ 身體活動水準 ⑥ 건강상태, ⑦ 의료서비스에 대한 近接性과 이용가능성, ⑧ 營養에 관한 지식과 교육, ⑨ 氣候條件 등이다. 社交와 對話의 수단이 되기 위하여 ① 살고 있는 사회의 一般慣行, ② 개인의 社會的 地位, ③ 관혼상제와 축제 등 특수한 行事目的, ④ 초대된 사람의 住居地로부터의 距離 등의 事項이 감안되어야 된다고 한다[21].

물론 「센」이 지적한 이러한 여러 要件을 하나하나 배려하여 식빵을 選擇한다는 것이 상당한 機會 및 情報費用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나, 여기서 간과해서 안될 것은 福利에 반영되는 재화의 機能이 어떠하여야 한다는 하나의 例示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財貨의 기능이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어떻게 영위하느냐를 규정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성격의 재화가 消費者의 需要를 충족시키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근대사회의 多樣化와 情報化에 따라 소비자가 재화의 고유한 潛在能力을 평가하고 이를 소비하는 享受能力을 培養함으로써 이러한 수요를 創出한다. 또한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구매력으로 뒷받침된 評價能力과 享受能力에 부응하기 위하여 格調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며 供給活動이 유발되고 이러한 수요가 충족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文化的 消費生活은 消費者 主權의 행사와 아울러 정책당국의 消費者 保護施策으로 한층 더 活性化될 수 있다.

3. 좁은 의미의 文化經濟學

경제학의 한 응용분야로서 좁은 의미의 文化經濟學은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 公共團體와 企業 등이 여러가지 文化活動과 事業을 主管하거나 支援함에 따라 古典音樂과 舞臺藝術 등을 포함한 文化·藝術部門을 위한 財源의 調達과 配分을 다룸으로써 財政學의 公共財理論이 그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또한 文學, 出版, 藝術 등을 포괄한 이른바 文化産業의 경제적 비중이 점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經濟分析을 중심으로 公企業, 敎育, 保健醫療와 같이 하나의 應用과 政策硏究分野가 형성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文化經濟學은 1857년 「러스킨」의 「藝術의 政治經濟學」의 出版으로 처음 시도된 이후[22] 오늘날 文化經濟學會를 중심으로 文化經濟의 理論, 歷史 및 政策의 硏究를 중심으로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代表作으로는 1966년에 미국에서 발간된 「舞臺藝術의 경제적 딜레마」와[23] 1983년 日本에서 출간된 「文化經濟學의 始發: 문화시설의 經濟效果와 自治體의 施設造成」[24]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분야의 本格的 硏究는 시도된 바가 없다. 이에 대한 實證的 硏究는 후일에 누군가에 의하여 연구되

21) A. Sen(1985), pp. 25~26.
22) J. Ruskin(1957).
23) W.J. Boumol and W.G. Bowen(1966).
24) 總合開發機構(1983).

기를 희망하면서 本 論文에서는 보다 넓은 의미의 文化經濟學의 課題와 對應方向에 초점을 맞추어 보기로 한다.

III. 우리 現實의 文化經濟學的 診斷과 課題

1. 文化經濟學的 問題意識

文化經濟學에 대한 再照明은, 근래에 전통적 物質主義 經濟學으로써 經濟學의 危機와 產業社會의 退化現象과 그 副作用에 대처할 수 없으나, 人本主義 經濟學의 재발견과 경제학의 궁극적 목적인 國民福祉增進에 대한 反省을 통하여 현재 體系化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므로 독자에 따라서 여기에 제시된 視角은 아직 定說化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立場을 취할 수 있으나, 「센」이 生活水準의 尺度로서 국민소득개념에 대한 비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체로 옳은 方向의 것보다 정확하게 틀린 立場을 採擇하는 이유를 물으면서[25] 「러스킨」의 政治經濟學의 파라다임과 「센」의 生活水準을 중심으로 한 福祉經濟學을 接木시킨 넓은 의미의 文化經濟學의 틀에서 우리의 交通生活과 그 文化라는 하나의 現實的 事例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의 文化經濟學的 課題를 導出한 후 節을 달리하여 對應方向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넓은 의미의 文化經濟學의 요지를 다시 집약하여 보면 「러스킨」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 社會나 國家를 유지, 운영하는 手段으로서 政治經濟學을 보고 그 운용목적을 國民 전체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life)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의 서두에 인용한 바와 같이 「러스킨」의 政治經濟學은 어떤 수준의 道義文化(moral culture)를 불가결한 要件으로 전제하고 科學的 근거 위에서 藝術과 技術(arts)을 관리하는 하나의 行爲와 法의 體系(a system of conduct and legislature)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體系를 통하여 「러스킨」의 政治經濟學에서는 富는 없고 삶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으며[26], 같은 맥락에서 「센」은 生活水準의 값은 派生的이며 다양한 관련성으로 달리 해석될 수 있는 財貨의 所有가 아니라 삶 그 자체에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7].

이러한 視角에서 보면 文化經濟學의 특징은, 첫째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하는 人本主義的 經濟學의 指向이다. 이는 전통적 경제학에 있어서 중요시해 온 經濟成長과 物量의 極大化와 利潤追求를 위한 能率과 效率의 極大化라는 力點과는 대조적이다. 둘째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점에서는 전통적인 經濟學과 같으나 技術과 예술을 管理하는 行動과 法의 體系로서 國民經濟를 유지 및 운용하는 수단으로 파악한 것은 傳統的 經濟學과 큰 차이가 있다. 즉 國民經濟가 法으로 규정되는 어떤 社會秩序 속에 여러 경제주체가 게임의 規則을 지키는 가운데 經濟活動을 영위하는 행동이 전체로서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投入物이 같을 경우에는 같은 質과 量의 財貨 혹은 서비스가 생산된다는 전통경제학의 機械論

25) A. Sen(1987), p.34.
26) J. Ruskin(1862), p.88.
27) A. Sen(1987), p.25.

的 假定은 문화경제학의 視角으로 볼 때에는 반드시 성립되지는 않는 前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 「러스킨」이 가장 강조한 것은 어떤 수준의 道義文化라는 必須要件이다. 이 道義文化라는 要件은 모든 경제주체가 모두 갖추어야 하며, 法과 社會秩序 가운데 바른 경제활동이란 行動으로 연계시켜 주는 안전핀이 된다. 끝으로 「러스킨」과 「센」이 맥을 같이하고 있는 삶의 質이란, 福利增進에 있어서 財貨의 固有價値와 機能은 消費者의 受容能力에 따라, 그 效用 또는 有效價値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受容能力은 객관적으로 다룰 수 없어 度外視되어 왔으며 情報費用도 없는 것으로 假定되고 있다. 복잡다양해지고 情報에 대한 近接性이 크게 制約的인 現實 속에서 情報의 公開性이 매우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 交通生活과 文化의 例示的 分析

이상과 같은 文化經濟學의 시각으로 우리의 國民經濟를 포괄적으로 分析·診斷하는 것은 紙面과 時間이 허용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日常生活에서 체험하는 交通生活과 그 文化라는 구체적 事例로서 우리 國民經濟가 안고 있는 文化經濟學的 課題를 도출해 보기로 한다. 近代社會의 특징의 하나는 都市化의 추세로서 우리나라에서도 都市人口 비율이 1990년에 72%에 달하며 人口 百萬을 넘는 대도시도 서울을 비롯하여 6개 都市에 이른다. 급등한 地價로 인하여 주변 市邑에 거주하며 대도시로 출퇴근하는 人口도 적지 않다. 이러한 대다수의 國民에게 절실한 것은 안전하고, 편리하며 경제적인 大衆交通手段과 交通網이다. 그동안 폭발적인 輸送需要에 부응하기 위하여 交通當局은 지하철 건설, 좌석버스제도의 도입, 콜택시의 신설, 택시의 증차 등등 輸送體系의 개선과 그 能力의 확대에 힘써 왔으나 우리에게 大衆交通網과 手段이 있느냐 하는 물음에 자신있게 답변하지 못하고 주저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우리의 소득수준이나 발전단계에 걸맞는 交通網과 大衆交通手段, 나아가 대다수 국민의 健康하고 幸福한 삶에 도움이 되는 교통망과 대중교통수단은 불행히도 사실상 없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가. 大衆交通體系의 科學性

大衆交通需要를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며 값싸게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그 수단이 되는 大衆交通網은 전체로서 하나의 體系를 이루어 科學的으로 설계되고 運營되어야 한다. 이러한 命題는 國民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科學 위에 서고 技術을 관리하는 法과 行爲의 시스템이라는 「러스킨」의 立場을 여기서 말하는 文化經濟學的 視角과 바로 관련지을 수 있다. 大衆交通體系는 주어진 도시의 住居狀態와 道路網과 그 부대시설인 버스, 電鐵, 택시 등 각종 大衆交通手段의 量과 그 運營을 포괄한다. 따라서 이 體系에는 實物인 設備(hardware)와 관련 制度를 포함한 運營(software)이 복합되어 있으며, 다양한 관련 機關과 集團의 權限과 利害關係가 상충됨으로써 國民의 便益과 運營의 效率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設計와 調整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각종 大衆交通手段이 적절한 輸送能力을 지니며, 수단간의 代替性과 補完性을 유지하며, 運行路線이 노선별 交通需要에 적절하게 과학적으로 설정되고 노선간의 연계성을

지니며, 交通停滯效果를 가급적 억제하여야 한다.

한정된 이 紙面에 대중교통체계의 科學性을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수 없으나 지난 10년간 車輛別 台數의 認許可와 버스와 電鐵網을 포함한 路線間 連繫問題 두가지만을 例示的으로 여기에서 지적하기로 한다. 大都市의 大衆交通은 時間帶에 따라 다소 다르나 一般的으로 서비스 供給의 不足狀態에서 만성적인 超過需要狀態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초과수요는 서울과 부산에 지하철의 신설이 있었으나 영업용 차량에 대한 프리미엄과 지난 10년간 10倍에 달하는 自家用乘用車와 24倍에 달하는 自家用버스의 폭발적인 증가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 택시서비스의 供給不足은 大都市에서 택시 타기가 힘들고 合乘이 성행하는 것으로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附表 1>과 같이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전국 영업용 승용차와 버스의 등록대수는 각각 6萬 2,800대와 2萬 8,200대에서 15萬 9千대와 4萬 5千대로 증가하여 2.5倍와 1.6倍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營業用 車輛의 증가는 서울과 부산의 2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서울의 영업용택시의 증가는 같은 기간에 2倍에 불과하고 서울과 부산의 營業用 시내버스의 증가는 각각 24%와 49%에 불과하다.

반면에 전국적으로 自家用 乘用車와 자가용버스의 증가는 지난 10년간 각각 10倍와 24倍에 달하며 서울과 부산의 경우에는 8.0倍와 22.3倍에 이르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1990년의 非營業用버스의 登錄臺數는 영업용버스의 4萬 5千대에 비해 무려 7倍가 넘는 33萬 8千대에 이르러 대단한 社會的 浪費와 때로는 변태영업으로 인한 社會的 問題까지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알 수 없는 것은 營業用車輛의 認許可를 規制하는 당국의 태도이며, 대다수 국민의 심한 불편과 많은 經費負擔 가운데 反射的 利益을 얻는 것은 기존 운수업체와 자동차 제조업체이다.

비교적 輸送效率이 높은 버스와 電鐵이 目的地가 다른 乘客의 편의를 위하여 버스路線間과 버스와 電鐵路線間의 連繫가 이루어지고 利用者의 추가비용 부담이 없도록 換乘制度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교통체증이 극심한 주어진 現實에서는 버스路線은 가급적 두 地點을 직선거리로 운행하여 무리한 左回轉을 피하며 부득이할 경우 左回轉地點에 이르는 거리를 감안하여 조심스럽게 停留場의 位置가 選定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電鐵과 버스間의 換乘制度는 고사하고 民營의 버스間의 換乘制度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利用者의 交通費負擔을 가중시키고 중복되는 구간에서 다른 路線의 버스간에 무모한 競爭과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다. 버스路線도 직선거리로 운행하기보다는 迂廻하여 乘客의 時間浪費와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많은 路線이 외곽지점에서 출발하여 都心地에서 돌아가는 형태로 許可되어 있기 때문에 都心地의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路線의 운전기사는 運行을 주어진 時間內에 하여야 하기 때문에 난폭운전과 과속운전을 자연 유발하고 있다[28].

이상과 같이 볼 때 大都市의 大衆交通體系

28) 文東周, 「大衆交通手段의 改善方向」, 『서울의 交通問題 討論會』, 國土開發硏究院, 1984, pp.150~151.

는 科學的으로나 技術的으로 전체를 設計하여 하나로 묶은 綜合的인 體系라기보다는 運行台數, 料率, 路線 등이 規制된 가운데 業體別, 車種別로 個人企業의 利潤 極大化가 추구되는 體系化되지 않은 狀態라고 하겠다. 이러한 대중교통체계의 결함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허가된 영업용차량대수, 미흡한 도로 및 부대시설, 편중된 주거지역 등 實物的 制約이 대중교통의 體系化를 저해하기도 하였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大衆交通體系라는 큰 觀點에서 제도의 개선과 운영의 묘를 살리는 設計와 硏究開發의 노력이 미진한 데 보다 큰 理由가 있다고 하겠다. 이미 지적한 「러스킨」의 「베니스의 돌」이 아름다운 都市를 이루는 데 이에 관련된 많은 機能의 分擔者가 모두 제 몫을 다 잘하여야 하겠으나 大衆交通體系의 경우는 이를 設計하는 主務官署의 企劃要員이 그 책임을 다하고 개선의 노력을 선도하여야 할 것이다[29].

나. 交通秩序와 運轉行態

政治經濟學을 法과 行爲의 시스템으로 규정한 「러스킨」의 學說이 전통적 經濟學에서 경원시되어 온 이유의 하나는 추상적인 法과 行爲의 시스템을 경제학의 분석적 틀에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法과 行爲를 합리적인 法秩序 속에서 합리적인 經濟行爲를 하는 것으로 假定함으로써 法과 行爲의 시스템은 論外의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합리적인 法秩序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經濟行爲를 합리적으로 하지 않는 經濟社會에서 전통적 經濟學의 視角은 그 說得力을 잃게 된다. 즉 합리성의 假定이 수용되지 않는 狀況에서 전통적 經濟學은 一般理論이 될 수 없고 이를 토대로 한 政策的 處方은 그 實效를 거둘 수 없다.

우리의 日常生活에서 法과 行爲의 시스템이 可視化되어 그 相關關係를 볼 수 있는 것이 交通秩序와 運轉行爲이다. 우리의 交通秩序는 선진국에 비하여 많이 흐트러진 狀態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는 交通法規는 물론 運轉者의 態度, 道路狀況, 交通表識配列, 運轉技士의 報酬計算方式, 버스의 運行方法 등 여러 가지 要因이 복합되어 이루어진 結果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흐트러진 交通秩序에 대한 一次的인 責任은 交通警察의 差別團束과 營業用 專門技士의 무리한 運轉行爲라고 하겠다. 일반국민의 눈에 비친 交通團束은 분명히 營業用 차량이 심한 違反運轉을 자행하는데도 교통순경의 태도는 지나치게 관대한 반면에, 사소한 自家用 차량의 교통위반이 있으면 반드시 적발하는 法執行의 二重性을 나타낸다. 따라서 營業用버스의 운행은 거칠고 난폭하며 택시는 이른바 「총알택시」라고 불릴 정도로 乘客의 安全을 경시할 정도이다. 交通團束도 事故多發地域이나 交通混雜地域에 配置되기보다는 交通法規를 어기기 쉽게 된 곳에 團束要員을 배치하고 전술한 바와 같은 선별적인 團束을 하는 것이 흔한 大都市의 風景이다.

이러한 현상은 團束者와 被團束者가 낮은 수준의 道義文化를 지니고 있음에 연유한다. 일반적으로 交通巡警은 올바른 啓導보다는 團束件數를 올리는 實績主義에 집착하며 運轉技士의 서비스정신과 職業的 專門性은 상실된 상태이며 運輸業體는 收入의 極大化만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원칙이 없고

29) 上揭論文, pp.157~160.

物質主義가 팽배한 狀況 아래 當事者 누구도 삶의 보람과 일에 대한 自負心을 찾을 수 없다. 가장 큰 被害는 정당한 代價를 지불하는 대중교통의 利用者인 대다수 國民이 입고 있으며 그것도 社會的으로 보호되어야 할 婦女子, 老齡者 등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被害를 입는다. 간단없는 市內버스의 暴走와 急停止의 연속 속에서 시달림과 말할 수 없는 택시의 不親切로 하루가 시작되고 끝나는 우리의 日常生活이다. 따라서 많은 國民이 이러한 시달림과 不親切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무리가 있더라도 大學生까지 自家運轉을 하게 되고 그 결과 交通混雜을 더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民生의 어려움과 人權의 유린과 消費者의 피해를 수십년간 방관하는 우리 모두의 道義文化와 指導階層의 사회적 責任感을 어떻게 규정하여야 할지 筆舌로 형언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收入에만 집착하여 乘客의 안전에 대하여 船長과 機長이 갖는 것과 같은 버스技士의 責任感과 技士職의 專門性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사람다운 道義를 저버린 營業用技士는 職業人으로서의 삶의 보람을 어디에서 찾는지 헤아릴 수 없다. 이리하여 우리는 고도의 經濟成長을 하였지만 그에 비례한 幸福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問題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 같다. 우리 國民이 왜 급하고 거칠고 不親切한가에 대한 識者間의 의문에 대하여 하나의 假說을 제기하면 상술한 바와 같은 交通現實에서 비롯한 日常生活의 타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어려서부터 大衆交通 서비스에서 親切은커녕 不快感를 느끼고 급하게 乘下車하여야 하며 난폭운전으로 누구와 부딪쳐도 無關心하게 生活하게 되었다. 좁은 노폭의 大路에서도 靑信號를 받고서 어른이 빨리 걸어야 겨우 건너는 橫斷步道에서 부녀자, 아동, 노인 등은 交通法規를 지키려면 뛰어야 하는 狀況이다. 버스는 서서 기다리다가는 제대로 탈 수 없게 停車하고 시간에 쫓겨 급하게 밀면서 타야 탈 수 있으며, 택시를 타려면 큰 소리로 행선지를 외쳐야 하고 그나마 맞지 않으면 그대로 疾走해 버려 무례한 사람취급을 받는다. 家庭과 學校에서 아무리 좋은 德目을 배워도 누구나가 가장 빈번히 접하는 일그러진 交通現實에서 이는 生活化할 수 없으므로 배우는 意味가 없으며, 生活하기 위하여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연히 급하고 거칠고 不親切하게 된다는 하나의 假說이다.

다. 社會的 費用과 그 分擔

흐트러진 交通秩序 속에서 난폭한 運轉行態는 우리의 부끄럽게 높은 交通事故를 유발하고 있다. 交通事故에 따른 人命과 財産上의 被害는 國民所得에 포함된 非福利要因을 구성하므로 國民所得에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國民計定修正論者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개진되기도 한다. 급증하는 自動車 臺數와 거친 運轉으로 날로 심해지는 交通滯症은 모든 交通利用者의 時間浪費와 車庫 및 燃料의 손실로 엄청난 社會的 費用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大衆交通手段이 마땅치 않아 自家用 乘用車를 마지못해 구입·유지하는 個人負擔도 당연히 우리 交通現實의 社會的 間接費用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大衆交通手段이 부적합하여 우리나라를 피하는 外國觀光客으로 인한 잠재적 觀光收入의 減少도 우리의 社會的 費用의 一

部가 된다. 이러한 費用項目을 추정한다는 것은 可用資料의 制約으로 여기에서는 시도할 수 없는 바이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費用을 國民經濟의 각 部門의 生産性과 國際競爭力을 저해하는 要因이며 資源의 浪費를 초래한다는 事實이다.

이와 같은 交通問題에서 유발되는 社會的 費用의 負擔마저도 계층간에 형평스럽지 않다. 일반적으로 低所得階層의 出退勤距離가 먼 것을 전제하면 저소득계층의 時間損失이 더욱 가중될 것이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間接費用 增加에 따른 原價上昇도 결국은 製造原價에 전가되어 消費者 負擔으로 歸着되며 엥겔係數와 消費形態로 보아 교통체증으로 인한 社會的 費用負擔은 逆進的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 검토되고 있는 交通問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自動車綜合保險의 負擔을 보면 이 역시 受益者負擔이란 형평한 原則에 어긋나는 실정이다. <附表 4>에 의하면 1990년 自動車 綜合保險料의 84% 이상이 自家用 車輛으로부터 거두어져 自家用車輛의 경우는 黑字를 내고 있는데, 營業用車輛綜合保險에서 일어나는 赤字를 메워주고 있다. 특히 交通事故에 의한 人命被害가 貨物車와 버스에 의한 것이 1990년에 64%에 달하고 여기에 택시의 그것을 합하면 73%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상술한 바와 같은 車輛用途別 綜合保險의 收支結果는 과히 짐작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事故發生의 確率에 따라 保險料를 바로 계산하고 조정하여 保險料負擔을 공평하게 부과하여야 할 정부의 保險當局은 일그러진 交通秩序와 運轉行態에서 유발하는 交通事故에 대한 保險料負擔을 또한 바르지 못하게 賦課시키고 있다. 비록 金錢的으로 보면 그리 크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보면 經濟的 正義에 관한 중요한 問題이다.

運轉者의 費用으로 근래에 무시 못하는 것이 交通罰則金과 駐車費이다. 운전자의 犯則行爲가 자그만치 45가지로 규정되어 있고 그 가운데 현재의 交通現實에서는 지켜지지 못하는 것도 적지 않다[30]. 더욱 不合理한 것은 罰則金의 수준과 차종별 差異이다. 아무리 가벼운 8가지 犯則이라 하더라도 5千원에서 7千원이고 그 이외는 모두 1萬원에서 3萬원에 이른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貨物車와 버스가 자가용에 비하여 비교적 事故가 많고 인명손실의 위험이 큰데도 罰課金은 自家用乘用車와 같다. 이러한 規定은 아무리 善意로 해석하여도 交通法則違反을 경고 또는 징계함으로써 부끄러움을 환기시켜 遵法精神을 깨우치려는 意圖보다는 交通治安當局이 벌과금의 收入極大化를 기하려는 意圖가 큰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所得水準에 비하면 몇萬원이란 벌과금은 과다하며 이러한 벌과금을 恣意的으로 自家用乘用車에 집중적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올바른 公權力의 行使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근래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不條理는 駐車違反의 牽引이다. 不法駐車의 적발은 公共機關이, 견인은 하청된 個人業體가 시행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교통순경과 견

30) 現行과 같은 交通體系下에서는 道路交通法이 規定하고 있는 규정을 모두 준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하겠다. 그 몇가지를 例로 들면 다음과 같다 : 안전거리미확보(道路交通法 第7條), 승차 및 적재제한위반(同法 35條), 운전자 준수사항으로서 고인 물을 튀게 하는 행위(同法 48條) 등.

인차가 같이 다니면서 경고시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警告狀을 부치는 것과 동시에 급하게 견인해 가는 牽引爲主로 法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불법주차의 견인과 관련하여 항고의 사례가 비교적 많으며 행정처분의 公信力마저 손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절대적으로 부족한 駐車場設備 때문에 주차장 요금이 간단없이 대폭 인상되어도 막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都市中産層의 交通費用負擔을 증가시키고, 國民經濟全體로서도 社會的 費用을 增大시키는 結果를 초래하고 있다.

라. 大衆交通서비스의 有效價値와 受容能力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大衆交通서비스라는 生産物은 어떻게 評價하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적절한 說明은 같은 기능을 지닌 商品의 同質性을 가정하는 전통적 經濟學으로서는 할 수 없다. 다만 獨寡占理論에서 製品差別化(differentiated product)로 인한 독과점의 횡포와 不公正去來로 설명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文化經濟學이라 이름한 「러스킨」의 政治經濟學의 目的 및 價値論과 「센」의 福祉經濟學이 말하는 生活水準上의 商品機能論과 消費者의 受容能力이란 觀點에서 우리의 大衆交通서비스를 평가해 보면 커다란 含蓄的 意味를 찾아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大衆交通서비스는 국민의 幸福하고 건강한 삶을 저해하는 要因이며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강요되었다는 점에서 그 負의 效用은 더욱 클 것이다. 더욱이 高所得階層은 그러한 非效用을 다른 交通手段을 선택함으로써 이를 피할 수 있으므로 이는 低所得階層의 상대적 소외감과 非效用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와 生産物의 관계는 「러스킨」의 價値論과 「센」의 效用論으로 잘 설명될 수 있다. 분명히 大衆交通 서비스는 이른바 「러스킨」이 말하는 固有價値를 지니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受容能力과 서비스에 대한 期待水準에 미달함으로써 有效價値는 크게 낮고 따라서 얻는 福祉水準보다 높은 費用支出을 소비자는 강요당하는 經濟的 不合理가 발생한다. 같은 맥락에서 「센」이 商品의 機能을 식빵의 例示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소비자의 세련되고 다양한 受容能力으로 보아 오늘날 우리의 大衆交通서비스는 그야말로 水準以下로서 效用을 크게 저하시킨다.

여기서 大衆交通서비스 利用者의 受容能力과 그 供給者인 運轉技士의 勞動價値와 政府의 役割에 대해 좀더 부연해 보기로 한다. 물론 效用價値가 낮은 강요된 대중교통서비스라 하더라도 利用者의 受容能力의 限界가 그렇게 낮은 狀態에서 수십년을 참고 견디는가 하는 點이다. 좀더 市民精神을 발휘하여 運轉者와 業者를 告發하고 앞에 예를 든 불합리한 交叉路와 信號燈을 설치한 公務員에게 抗議하며 市議會와 全國에 의해 선출된 代議員에게 압력을 가하여 改善토록 해야 하겠다. 분명한 것은 利用者인 消費者의 受容能力이 높은 수준에 놓이고 이것이 集團的으로 表出되지 않으면 供給者는 商品의 質과 改善에 힘쓰지 않고 이에 따라 삶의 質의 向上과 福祉增進을 기할 수 없다. 또한 우리의 受容能力 이상으로 經濟社會發展을 實現할 수도 없다. 우리의 受容能力의 向上이야말로 政治, 經濟, 社會의 民主化를 위한 하나의 前提要件이라 하겠다.

대중교통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직접적인 勞動投入을 하는 運轉技士의 일하는 態度는 그

有效價値를 스스로 비하시키고 物質萬能主義로 스스로 얽매이게 하는 勤勞態度이다. 같은 勤勞條件으로서도 專門技士로서 누구보다도 운전을 잘 함으로써 乘客에게 정신적 報償을 받지 못하며 자신들이 하는 일의 보람을 찾지 못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한 정신적,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대립되는 客體에 생명을 불태우는 藝術家的 努力인 「러스킨」의 勞動과는 거리가 먼 주어진 狀況에서 마지 못한 움직임이라고 하겠다. 만약 이러한 서비스에 商品과 같이 品質檢査를 한다면 모두 不合格이 될 것이며 輸出品이라고 한다면 모두 返品되어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다. 서비스業의 本質인 서비스가 없고 運轉技士는 專門性을 저버리고 사람의 安全을 다루는 業種에서 職業倫理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부끄러운 우리의 大衆交通서비스이다.

大衆交通서비스는 국민을 위한 公益事業으로 政府의 관련부처가 협력하여 적절한 水準의 質과 量을 공급할 責任이 政府의 役割이다. 사실상 大衆交通서비스는 上下水道, 一次的 保健醫療, 基礎敎育, 道路網과 더불어 政府가 최우선적으로 供給하여야 할 國民生活의 基本需要(basic needs)의 하나를 이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政府는 이러한 國民生活의 隘路에 대하여 注意를 주지 않으며 根本的인 對策을 강구하려는 意志와 努力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다. 世界的인 대규모 行事를 치렀고 계획하고 있는 우리 政府가 우리 國民에게 이렇게 나쁜 大衆交通서비스가 주어지는 現實을 방관한다는 것은 政策優先順位와 財源配分順位가 民生과 民福을 중요시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모름지기 國民經濟運營에 根幹을 이루는 制度와 秩序의 確立으로 國民生活의 基本需要를 충족시키는 데 力點을 둘 것이며, 民間部門이 할 수 있는 領域에서는 경합적인 活動을 피하고 바른 行政指導를 게을리하지 않는 작은 政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 위험한 것은 政府의 經濟活動에 있어서 계측되는 經濟性에만 집착하여 社會的 費用을 경시하거나 市內버스와 같이 公共性이 큰 事業을 行政的으로 바로잡지 못한 채 民營化와 競爭에 맡긴다는 것은 民生爲主의 政府라고 할 수 없다. 地方政府가 民間部門이 할 수 있는 아파트事業과 再開發事業을 벌이면서 大衆交通서비스의 改善에 人力과 資金의 不足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구차한 辨明에 불과하다. 여기에도 政府가 지니는 受容能力의 限界가 問題視된다.

3. 交通生活과 그 文化의 當面課題

이상과 같이 개관하여 본 우리나라의 大衆交通手段과 交通生活의 現實을 文化經濟學的 視角으로 검토해 보면 이미 인용한 바 있는 「러스킨」과 「센」이 강조한 項目 하나하나가 우리의 當面課題로서 注目된다. 「러스킨」의 政治經濟學이 國家나 社會의 扶養手段을 그 대상으로 하며 國民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life)을 뒷받침하는 것을 그 目的으로 하고 있고 「센」의 福祉經濟學도 삶의 質의 수준을 높이는 것에 그 主眼點을 두고 있다. 우리의 교통생활은 국민의 삶의 質과 거리가 먼 이른바 「交通地獄」이라고 할 정도이며 높은 교통사고율과 사망률은 물론 유발되는 대기오염과 소음공해로 국민건강의 커다란 저해요인을 이루고 있다. 일상교통생활을 뒷받침하는 대중

교통수단은 근대생활에 있어서 국민의 衣食住 生活 다음으로 중요한 기본생활요건이며 公共財的인 성격을 띤 產業領域이나 地下鐵을 제외한 大衆交通手段이 利潤追求만의 亂市를 이루고 있다. 대중교통이란 서비스의 質은 「러스킨」의 有效價値나 「센」의 受容能力의 限界를 벗어난 것은 물론 전통적 市場經濟學에서 말하는 서비스產業의 本質인 서비스가 형편없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대중교통수단은 없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이와 같은 대중교통현실이 초래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供給者와 規制者와 利用者가 「러스킨」이 지적한 용납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道義文化와 道德性을 갖추지 못하고 「러스킨」의 有效價値를 이루는 受容能力과 「센」이 지적한 利用者의 受容能力이 말할 수 없이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利用하기 때문이다. 國民의 交通便益을 염두에 두어야 할 交通當局은 대중교통업의 認許可業務, 路線決定, 運行時間配定 등등의 職務遂行을 良識 있게 그 責任을 다하지 못하고 심지어 交通法規違反의 規制에 있어서도 그 기준에 差異가 있으며 事故에 대비한 保險料負擔과 그 受惠에도 不公平한 點이 있다. 大衆交通業主와 그 被傭者는 서비스업의 本然을 지키려는 努力과 注意가 엿보이지 않고 서비스의 不在와 우리나라의 不親切의 상징이 된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다고 할 정도이다. 社會의 한 構成員으로서 서비스로 代價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이러한 서비스를 스스로 利用할 수 있는지를 政策當局者와 業主가 試乘하면서 反省해 볼 만하다. 대중교통수단의 利用者도 교통생활의 現實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社會的으로 보호되어야 할 老弱者, 婦女者, 靑少年 등 취약계층이 매일 非人間的인 交通現實에 시달리는 데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質을 좋은 方向으로 높여 가도록 政府當局과 業者에게 問題提起와 아울러 是正措置를 요구하지 않은 데 대하여 그 責任을 면할 수 없다.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交通現實의 不合理에 대하여 이용자인 우리 國民의 태도는 無關心 내지는 無感覺狀態로 消費者主權을 行使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계층의 소극적 태도는 利用者 모두가 겪는 不便에서 자기들만 벗어 나려고 家族의 構成員에게 乘用車를 사주는 利己的인 對應에 불과하다. 利用者로부터 좀더 적극적이며 용기 있는 합리적인 集團行動이 필요하다. 交通現實을 개선하기 위한 課題로서 모든 關係者에 의한 交通法秩序體系와 運轉行爲가 하나의 體系로서 調和되어야 하겠다. 난폭운전의 代表的 事例라고 볼 수 있는 事業用車, 특히 大型車의 運行이 交通法에 따라 다스려지고 專門技士의 運轉은 自家運轉者에게 모범이 되는 社會的 雰圍氣가 조성되도록 交通秩序의 守護者인 治安當局의 努力이 强化되어야 하며, 자기 위주의 운전행위가 많은 사람에게 不便과 지체를 초래하지 않도록 自家用時代의 交通文化가 형성되어야 하겠다. 또한 어느 區間의 道路와 부대 시설물을 이 世代가 이루었다고 後代에게 물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反省도 있어야 하겠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假說을 제기하면 많은 社會科學者와 識者들이 우리 國民이 성급하고 不親切하며 거칠다고 우려하는바, 그 원인이 우리 日常生活 가운데 劣惡한 交通生活 내지는 交通文化에서 기인하지 않나 생각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서도 交通生活과

文化의 改善이 시급하다. 아무리 家庭敎育과 學校敎育을 잘 받고 실행하려고 하더라도 아침에 집을 나서면 바로 交叉路를 건너고 大衆交通手段을 이용하게 되는데 누구나 交叉路를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뛰어야 하고 난폭운전의 滿員버스에 시달리거나 불친절한 택시技士의 눈치를 보면서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타기 전에 먼저 타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低學年學童과 老弱者와 婦女子들이다. 특히 兒童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狀況을 매일 겪고 자란다면 孟母三遷之敎의 故事에 나타나듯 성급하고 거칠며 不親切한 性向을 띨 수밖에 없다. 問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性向을 지닌 國民의 經濟行爲는 適當主義와 無理, 不合理와 浪費, 不滿과 不誠實의 可能性이 그렇치 않은 경우보다 훨씬 클 것으로 豫想되며 이러한 要因들이 복합되어 오늘날 우리의 過消費, 國際競爭力의 弱化 등 總體的 經濟難局을 誘發하게 되지 않나 생각된다.

IV. 우리의 文化經濟學的 對應方向

오늘날 古典學派에서 新古典學派를 거쳐 「케인즈」學派에서 新「케인즈」學派로 이어진 전통적 經濟學은 先後進國이 안고 있는 커다란 經濟的 難題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無力感을 느끼고 있다. 거의 半世紀에 걸쳐 經濟學界가 많은 努力을 기울여 왔으나 後進國의 開發問題의 실마리는 고사하고 經濟成長 要因을 모두 갖춘 歐美先進諸國의 經濟運營과 政策的 對應에서조차도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경제적 亂調가 거듭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 經濟도 그 例外는 아니다. 60년대초에 그 어려웠던 經濟的·社會的 與件과 70년대의 성급한 重化學工業建設과 70년대 중반의 여러가지 政策的 失策을 극복하고 80년대 중반부터 安定的 高度成長과 對外收支黑字를 이루었던 우리 經濟가 급격히 無力해짐과 동시에 보다 自由化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國民 모두가 보다 높은 生活水準을 누리면서도 이에 상응하게 滿足感과 幸福感을 누리지 못하는 데 대한 經濟的 解明이 불충분하다.

이러한 近代經濟學의 根本問題에 대하여 「러스킨」의 政治經濟學을 위주로 한 이른바 文化經濟學的 處方과 對應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우리 經濟가 안고 있는 問題點에 具體性을 더하기 위하여 우리의 大衆交通生活과 그 文化를 例示的으로 분석·진단하면서 政策課題를 검토하였다. 여기에서 취한 便法은 經濟現象의 추상적 경향을 구체화하고 일반 독자의 共感帶를 넓히려는 하나의 시도에 불과하며 巨視經濟運用과 金融, 財政, 產業, 敎育, 保健醫療, 企業經營 등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 經濟를 活性化하고 競爭力을 갖출 뿐만 아니라 國民 모두가 누리고 살 수 있는 福祉社會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文化經濟學的 對應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1. 經濟社會秩序와 規則의 確立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러스킨」의 政治經濟學은 法과 行爲의 시스템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法은 경제행위의 게임의 규칙을 의미하며 經濟行爲는 법의 범위내에서 게임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法과 秩序는 正當性과 合理性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의 基本法인 憲法은 이상적으로 近代福祉國家의 理念을 수용하고 있으나 그것을 근거로 한 法律과 規則은 그 理念을 바로 잇지 못하고 있다. 이미 예시한 交通法規와 같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많은 法規나 條例가 日本統治와 美軍政 아래 制定되었기 때문에 民主國家의 民福增進을 위한다기보다는 統治와 行政爲主로 되어 있으며 그 慣行은 아직도 國民위에 서서 복잡한 節次를 강요하는 무사안일한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앞에서 事例로 든 交通違反의 자의적인 적발은 고사하고 交通罰課金의 豫算上 변칙적인 使用은 자동차의 대수가 적고 그 규모가 적은 金額일 경우 하나의 行政上 便法으로 處理한다고 볼 수 있으나 벌과금의 단위가 높고 自動車의 보유대수가 3百萬臺를 넘어서고 交通規制要員을 증원하여 罰金收入이 5百億원 이상에 이르고 앞으로도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現時點에서는 豫算執行原則에 어긋나는 중대한 例外라고 하겠다. 따라서 經濟秩序와 規則은 그 正當性과 合理性이 면밀히 검토되어 合目的的이며 一貫性 있는 하나의 法體系를 이루고 바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現實的으로 지켜질 수 없는 秩序와 規制은 그것을 독려하고 시행토록 하는 데 政策當局에 엄청난 負擔을 줄 뿐 아니라 국민 모두를 假想的 犯法者로 타락시키며 이른바 털면 먼지 안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국민의 位相을 낮추게 한다. 반면에 중요한 秩序와 規制의 要件은 當局에 의하여 누구에게나 적용되어 바르게 施行되어야 한다. 이리하여 항간에 있어 상식으로 통하고 있는 유력한 背景이 있으면 善處된다는 通念이 깨어지고 地位高下를 막론하고 法 앞에 平等하다는 常識이 보편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國民이 위임한 政府의 公權力이 뒷받침되고 이를 바탕으로 公務員은 法과 게임의 規則의 테두리 안에 형성되는 秩序의 守護者로서의 役割을 담당하고 社會의 有力階層은 혼란한 與件을 악용하여 게임의 규칙에서 벗어나려는 衝動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2. 社會的 報償體系의 合理化

秩序와 規制의 확립은 바른 行動이 더 크게 報償되는 社會的 報償體系에 의하여 그 安全裝置를 갖출 수 있다. 여기서 社會的 報償은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보상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 보상체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팽배한 物質主義의 틀 안에서도 여러 分野에서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經濟個體에게 종적으로나 횡적으로 대체적으로 걸맞는 經濟的 報償이 주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복잡한 交通現實 가운데 법규에 따라 운전을 잘한 버스技士는 그렇지 못한 技士보다 더 많은 報酬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社會的 報償體系나 交通規則의 運營에 衡平性이 없고 비현실적으로 부과되는 벌과금도 버스會社의 經費로서 共同負擔이 되기 때문이다. 土砂를 운반하는 重裝備車의 技士의 보상체계는 運行回數에 따라 給與가 산정됨으로써 오히려 난폭운전을 조장하는 본의 아닌 副作用을 초래한다. 같은 교수가 같은

시간에 글을 쓰면 稿料로 낮은 금액을 받고 같은 시간에 大企業에 나가 강의를 한다면 더 받는 現實 아래 利己心을 잃은 道士가 아니면 아무도 좋은 글을 쓰려 하지 않는다. 반면에 강의는 한정된 청중에게 1回로서 끝나나 論文은 보다 많은 독자에 오랫동안 두고두고 읽혀지며 우리의 文化遺産으로 축적되므로 그 사회적 기여나 耐久性을 중시한 經濟原則으로 보다 더 큰 經濟的 報償이 주어져야 마땅하다.

우리 현실에 있어서 직종간 經濟的 報償體系의 不合理性은 중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의 급여에 대비한 학원강사와 가정교사의 수입으로 상징할 수 있다. 후자의 社會的 寄與를 경시하는 것은 아니나 어디까지나 敎育의 本質로 보아 전자가 敎育의 主役이며 사회적 기여도 더 클 것이다. 그러나 兩者의 活動期間을 감안하여 평생수입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보더라도 敎育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학원강사와 가정교사의 收入이 대학교수와 교사의 給與보다 훨씬 많은 것이 현실정이다. 물론 학부모의 과욕과 우리의 受容能力의 問題도 있으나 經濟社會發展의 政策手段을 보유한 政策當局이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시정되어야 할 가격메커니즘의 하나이다. 더욱이 개개인의 경제적 보상이 可處分所得으로 평가되는데 비추어 正規敎育機關의 從事者는 課稅對象이 되고 非正規敎育機關의 從事者에 대한 所得稅徵收는 미진할 경우 租稅衡平의 原則에 위배됨은 물론 경제적 보상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주어진 人的資源의 配分을 왜곡하게 된다.

사회적 보상이라고 하면 경제적 보상과 더불어 名譽와 尊敬 등 사회적 예우까지 포함된다. 비경제적 보상을 더하기 위하여는 物質主義로 單一細胞化되고 있는 社會的 價値가 多樣化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화된 가치의 社會風土는 각 분야에 종사하는 第1人者가 自負心을 가지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동시에 금력과 권력에 專門性을 굽히지 말아야 하며 社會의 분위기가 專門性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政治家는 政治家로서, 學者는 學者로서, 企業家는 企業家로서, 藝術家는 藝術家로서 이 社會에서, 나아가 世界에서 第1人者가 되려는 平生의 努力을 다해 나가야 하며 다른 專門性과 다른 분야의 轉職을 겸양하는 사회적 美德으로 자기분야의 專門性을 높여 나가야 하겠다. 이제 物質的으로는 우리 社會가 「아담 스미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부끄럽지 않게 입을 수 있는 양복을 갖춘 時代인 만치 이에 걸맞게 이제는 專門家가 부끄럽지 않는 專門性을 갖추는 마음의 姿勢를 다듬어야 할 때라고 하겠다.

3. 受容能力의 淳化와 培養

우리 社會는 이미 經濟的으로 販賣者의 市場에서 購買者의 市場으로 전환하였고 政治的으로는 選擧에 의해 國民의 代表가 선출되며 地方自治까지 復活되는 民主化時代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의 意識과 受容能力은 아직도 지난날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변화와 그 속도에 걸맞지 않게 아주 늦은 속도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어쩌면 우리 社會의 크고 작은 非理와 不條理가 끊임없이 파생되는 주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지난날과 같이 非理와 不條理를 그대로 受容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앞에서 예시한 대중교통수단의 난폭운전과 짧은 靑信號만 하

더라도 婦女子와 老弱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적 규탄의 대상이 되고 개선하려는 市民의 告發과 市民運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민운동의 대상이 될 사회적 不合理가 우리 생활 주변에 허다한데도 우리의 反應은 지나치게 無關心과 無氣力으로 일관되어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건전한 市民精神의 함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국민 개개인이 내는 세금으로 유지되는 政府의 行政과 投融資에 대하여 좀 더 主人意識을 발휘하여야 하겠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잡한 골목의 보도블럭과 아스팔트 大路나, 美觀은커녕 機能面에서도 무리한 교차로와 진입로, 우리 후손이 여유가 있으면 보존하기를 꺼릴 교량 등 부끄러운 工事를 맡기고 監守하는 국민의 代理人인 公務員은 국민의 질책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일상 消費生活에 있어서도 기능적이며 멋있는 좋은 財貨를 선호하며 외면보다 내면에 담긴 價値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受容能力이 또한 培養되어야 하겠다. 「센」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식빵 하나라 하더라도 여러가지 바람직한 屬性을 갖추도록 소비자의 선호에 멋과 품위를 더하며 전시적 충동구매는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하겠다. 「러스킨」의 有效價値는 가급적 有用性에 소비자의 고상한 수용능력을 더함으로써 더 커지므로 個性과 多樣性이 소비행위에 반영되어야 한다.

끝으로, 한가지 지적해 둘 것은 개개인의 福祉水準뿐만 아니라 國民經濟의 경제사회발전도 국민 개개인과 국민전체가 지니고 있는 受容能力의 限界를 벗어날 수 없다는 事實이다. 우리가 지난날 압축된 高度成長을 이루었던 것은 높은 敎育水準으로 대표되는 우리 국민의 受容能力이 우리의 경제사회발전의 수준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압축된 高度成長 3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受容能力의 增大는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그 限界에 도달하였다. 지난날에 아무리 高度成長을 이룬 나라라 하더라도 우리와 같이 높은 交通事故率이 상징하는 엄청난 社會的 費用을 부담하며 대중교통수단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不合理性을 안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경제성장과 아울러 경제사회발전을 이룰 수 없다. 한 자(尺)의 道路나 하나의 道路施設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 만들어져 法定耐用年數 이상 사용되고 잘 보수되어 歷史와 더불어 남는 가운데 減價償却이 다 끝난 耐久投資로부터 使用價値와 아울러 역사적, 심미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이 先進國이며 우리와 같이 잘못되어 補修費가 간단없이 所要되고 때로는 耐用年數가 다하기 전에 헐어버려야 한다면 엄청난 浪費를 초래하는 經濟的 負擔을 안게 된다. 물질적인 면에서의 발전이란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 富의 蓄積을 의미한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國富란 벌어둔 時間의 總量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를 不實하게 만든다면 쓰레기를 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富라기보다는 삶이란 「러스킨」의 말은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가 크다.

4. 道義文化의 涵養

「러스킨」은 秩序와 行爲의 體系로 본 政治經濟學이 성립하려면 經濟主體 하나하나가 최소한 어떤 수준의 道義文化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바와 같이 法과 制度 그 자체가 완전하기보다는 그

運營의 妙를 더함으로써 法의 정신에 맞는 行爲와 結果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아무리 완벽한 法과 制度라 하더라도 이를 逆利用하면 얼마든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行爲를 초래할 수 있다. 대다수의 國民이 낮은 道義文化에 젖어 있을 때 어떤 政府나 강력한 統治者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行爲를 막을 수가 없으며 대다수 國民의 良識을 최후 방어선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정한 수준의 道義文化는 經濟社會의 漏水現象을 막을 수 있는 安全裝置가 된다.

우리 社會에서 道義文化가 미흡한 것은 알면서도 實踐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바른 秩序와 게임의 규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報償體系가 일그러져 있으며 특히 不法과 不條理에 뿌리박힌 地下經濟가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하나의 惡循環을 벗어나는 길은 政府의 主導로 法秩序와 게임의 규칙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에 따라 政府의 構成員을 포함하여 모든 일의 당사자가 되는 國民 個個人이 최소한 公益과 私益을 조화시키는 道義心을 스스로가 발휘함으로써 이에 상응한 經濟的, 社會的 報償을 받게 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道義心의 발휘는 눈에 보이는 일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誠實함으로써 그 實效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을 발굴하여 높여 주는 社會風土가 아울러 造成되어야 할 것이다.

V. 結　　語

우리 經濟社會는 지난 수십년간 압축된 經濟一邊倒의 急成長을 지속하여 오늘의 社會的 難局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미미하였던 지난날에는 經濟를 기계론적인 投入·產出關係로 보는 좁은 視角의 經濟運用과 管理가 무리는 있었으나 어느 정도 實效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經濟規模가 커지고 政治·經濟·社會의 有機的 關係가 복잡하며 사회의 각계각층이 독자적인 利益集團과 個體로서 제 목소리를 높이는 이즈음에는 經濟現象을 넓은 視角에서 보고 政策代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植民地統治手段의 延長線上에서 規制的이었던 行政은 물갈이를 하지 못한 채 지난날 부당하게 연장하려는 政權의 維持와 政府主導型 經濟成長을 독려하기 위한 手段으로 활용되어 왔고 根本的인 改善이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經濟社會의 法秩序가 확립되지 않고 좁은 시각의 理論으로 설명할 수 없는 行爲와 전통적 道義文化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道義文化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昏迷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時點에서 「러스킨」의 政治經濟學과 「센」의 福祉經濟學이 示唆하는 바를 여기에 紹介하였다.

여기에서는 道義文化와 行態라는 側面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文化經濟學이라 하였다. 이러한 側面을 강조한 「러스킨」의 政治經濟學은 그 目的을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두고 그 對象을 科學 위에 서고 技術과 藝術로 관리하되 어떤 수준의 道義文化를 갖춘 것을 必須要件으로 한 法秩序와 行爲의 體系라고 하였다. 또한 國民全體나 個個人의 受容能力을 전제로 한 「러스킨」의 有效價値論과 「센」의 效用理論은 삶의 質을 증진시키고 經濟社會發展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國民이 지

니는 受容能力의 잠재력이 이를 규정하는 것을 示唆하고 있다.

이러한 넓은 視角과 추상적 理論이 지니는 큰 制約은 現實에 대한 適用性이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文化經濟學의 틀을 우리의 大都市 交通生活과 그 文化라는 事例에 적용하여 보았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대도시의 大衆交通體系는 科學的으로나 技術的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交通秩序가 서지 않고 交通行爲는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道義文化로서 수용할 수 없는 혼탁한 狀態이다. 이러한 바람직스럽지 못한 現象의 원인은 크게는 治安當局이 交通秩序를 잡으려는 努力의 미흡과 專門職技士의 亂暴運轉과 서비스業體의 營利追求와 交通罰則의 非合理性과 車種別 保險料負擔의 不公平 등을 들 수 있으며 어느 하나 專門性은커녕 常識에 걸맞지 않은 不合理한 여러 要因으로 뒤엉켜져 있다. 우리의 大衆交通體系에는 점진적으로나마 국민의 便益을 신장시키려는 交通公務員의 책임감 있는 努力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서비스業의 본질을 살려 安全하고 親切하게 乘客을 태우려는 버스와 택시業者의 努力도 엿보이지 않으며 짐짝보다 못하게 실어 마구 달려도 이를 항의하는 乘客도 찾아볼 수 없고 이러한 부끄럽고 어려운 庶民의 交通現實에 관심을 갖고 이를 대변하는 政治家와 指導階層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부끄럽고 어려운 交通現實로 우리가 부담하는 社會的·經濟的 費用은 실로 엄청나게 크다. 世界에서 가장 높은 交通事故率에 따른 人命과 經濟的 損失을 위시하여 이러한 교통지옥을 벗어나려는 個人의 自家用乘用車의 購入費와 維持費, 營業用버스의 7.3倍에 달하는 自家用버스의 購入費와 維持費, 이에 따른 교통체증의 시간적·금전적 浪費, 이를 限界的으로나마 수용하려는 道路의 擴大와 補修에 따르는 經費支出 등 대단한 費用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觀光資源을 개발하고 觀光客의 유치에 힘쓰고 있으나 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國際的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交通費를 부담하더라도 安全하고 불편없이 다닐 수 있는 交通便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觀光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낮은 外國觀光客 利用率에 따른 觀光호텔 및 부대시설의 收入減少도 부분적으로 交通現實의 間接費用으로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어지러운 交通現實에 가장 큰 責任은 交通秩序를 확립하여야 할 治安當局이 져야 할 것이다. 法 앞에 平等하고 法이 公平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극히 原論的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심하게 法規를 어기는 營業用버스와 택시에 대하여는 一般國民이 보기에도 지나치게 관대한 반면 自家用乘用車에 대해서는 지키기 힘든 違反事例까지 적발하는 傾向이 있다. 交通團束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事故로 인한 人命과 財産被害를 예방하는 데 注力하기보다는 違反하기 쉬운 곳에서 違反車輛을 적발함으로써 罰課金收入의 極大化를 기하는 結果가 되며 늘어나는 罰課金이 財政收入으로 잡히지 않는 便法으로 집행되는 실정이다. 不法駐車를 적발하는 것은 官이 하고 그 牽引은 個人企業에 위임하니 이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雜音이 있어 法執行의 信賴性을 해치고 있다.

이러한 交通生活과 文化가 하나의 假說이기는 하나 우리의 國民性과 敎育의 實效性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날 것으로 豫想된다. 우리가 거칠고 無秩序하며 不親切하다고 하는

데 大都市生活에서 아침에 집을 나와 돌아올 때까지 매일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을 체험하면서 살고 자라니 道理가 없다. 특히 婦女子와 老人은 交叉路에서마저 빨리 뛰어야 하고 그나마 그 交叉路도 迂回하도록 멀리 떨어져 있다. 家庭에서 學校에서 좋은 德目을 교육시켜도 배운 대로 줄서거나 양보하면 끝없이 손해를 보는 交通現實이니 그런 餘裕는 別天地의 것이다. 누구와 부딪치거나 밀려도 男女老少를 불문하고 無感覺한 우리이다. 이러니 젊은 계층이 운전을 배우면 專門技士가 하는 대로 亂暴運轉에 많은 交通事故를 유발하며 다른 業種에 종사하는 사람도 택시와 버스技士와 같이 行先地를 손님이 외쳐도 맞지 않으면 질주하는 것과 같은 不親切에 젖어 버리고 만다. 따라서 物質的 풍요와 많아진 車로서 얻는 便益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복을 누리는 삶과는 별개 것이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우리 現實에 대한 文化經濟學的 診斷은 하나의 事例로 든 交通生活과 文化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政治, 行政, 經濟, 社會, 言論, 文化 등 어느 分野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같은 問題點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論據는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나 한정된 紙面과 時間에 알려지는 言論媒體의 報道만 보더라도 不快感과 失望을 안겨주는 것이 기쁨과 希望을 주는 것보다 너무나 많고 우리의 日常生活에서 겪는 것 가운데 바로잡혀야 할 事例가 허다하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不合理와 不條理가 대폭 除去되지 않은 가운데 先進國으로의 進入, 福祉國家의 建設, 國際競爭力强化 등의 目標는 현재 우리의 受容能力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實現될 수 없는 꿈에 불과하다.

앞으로의 對應方向으로서 제시된 經濟社會秩序나 規則의 확립, 사회적 報償體系의 合理化, 受容能力의 淳化와 培養, 道義文化의 涵養 등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 社會科學分野에서 이미 강조되고 있는 바를 다시 强調하였을 따름이다. 다만 여기서 留意할 것은 이러한 對應이 經濟學의 하나의 視角에서 도출된 것이며 좁은 의미의 科學 위에 선 經濟學을 전제하고 그 下部構造까지 확대한 사람의 行態를 중심으로 한 넓은 의미의 經濟學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는 點이다. 또한 이러한 對應方向으로의 努力은 모든 經濟主體가 힘써야 할 바이나, 특히 政府는 經濟成長, 物價安定, 住宅建設, 國際收支改善 등 지엽적인 計量目標에 몰두하기보다는 이러한 모든 目標의 量과 質을 달성하는 데 바탕이 되는 經濟社會秩序와 規則의 확립이란 政府의 固有한 責務에 힘을 다하고 사회적 報償體系의 合理化, 受容能力의 培養, 道義文化의 涵養 등에 誘引政策을 펴야 할 것이다. 再三 강조해 둘 것은 수십년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앞으로 지속적인 國家發展을 이루어야 할 오늘날 우리의 發展段階에서 가장 시급한 課題는 사회전반에 있어서의 經濟的, 社會的 正義를 확립하고 公共機關의 公信力을 回復하는 일이다.

▷ 參 考 文 獻 ◁

國土開發硏究院, 『서울의 交通問題 討論會』, 1984.

_____, 『交通施設의 改善과 地域開發의 關聯分析』, 1984.

朱鶴中, 「近代經濟學의 行態論的 小考」, 『朴基赫敎授 停年紀念論文集』, 1988.

治安本部, 『道路交通安全白書』, 1990.

韓國開發硏究院, 「2000年을 향한 國家長期發展構想」, 서울, 1985.

池上 惇, 『經濟學』, 青木書店, 東京, 1991a.

_____, 『文化經濟學のすすめ』,, 東京, 九善, 1991b.

_____(編), 『文化經濟學の可能性－文化政策と舞臺藝術の現場と未來』, 藝團協 出版部, 1991.

五鳥 茂(編), 『ラスキン/ モリス』, 東京, 中央公論社, 1979.

總合硏究開發機構(編), 『文化經濟學事始め－文化施設の經濟效果と自治體の施設づくり』, 學陽書房, 1983.

Boumol, W.J. and W.G., Bowen, *Performing Arts: The Economics of Dilemma,* Cambridge: MIT Press, 1966.

Hendon, W.S., H. Hillman-Chartrand, and H. Horowitz(eds.), *Paying for the Arts,* The University of Akron Press, 1987.

Roethlisberger, F.J. and W.J. Dickson, *Management and the Work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9.

Ruskin, John, *Munera Pulveris: Six Essays on the Elements of Political Economy(1871),* Brantwood Edition, N.Y.: Greenwood Press, 1969.

_____, *Political Economy of Arts*, 1857.

_____, *Stones of Venice*, Vol. I (1851), Vol. II & III(1853).

_____, *Unto this last: Four Essays on the First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1862)*,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67.

Sen, A., *Choice, Welfare and Measurement*, Oxford: Blackwell, 1982.

_____, *Commodities and Capabilities*, North-Holland, Amsterdam, 1985.

_____, *Resources, Values and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_____, "The Standard of Living: Lecture I, Concepts and Critiques", G. Hawthorn (ed.), *The Standard of Liv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_____, "The Standard of Living: Lecture II, Lives and Capabilities", G. Hawthorn (ed.), *The Standard of Liv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87.

Smith, Adam,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London: Everyman, 1910 [1776].

Wiener, N., *The Human Use of Human Beings: Cybernetics and Society,* N.Y.: Avon Books, 1967.

〈附表 1〉 自動車 登錄現況(1980, 1990년)

		1980년		1990년		증가율 (倍)
		등록대수	구성비	등록대수	구성비	
승용차	관용및자가용	186,286	35.3	1,915,591	56.4	10.3
	영 업 용	62,816	11.9	159,331	4.7	2.5
버 스	관용및자가용	14,249	2.7	338,418	10.0	23.8
	영 업 용	28,214	5.3	45,320	1.3	1.6
화물차	관용및자가용	174,269	33.0	814,739	24.0	4.7
	영 업 용	52,671	10.0	109,909	3.2	2.1
특수차	관용및자가용	3,215	0.6	4,018	0.1	1.3
	영 업 용	6,009	1.1	7,478	0.2	1.2
합 계		527,729	100.0	3,394,803	100.0	6.4
	관용및자가용	378,019	71.6	3,072,766	90.5	8.1
	영 업 용	149,710	28.4	322,038	9.5	2.2

資料 : 交通部, 『交通統計年報』, 各年號.

〈附表 2〉 市道別 乘用車 및 버스 登錄現況

	1980년			1990년			1980~90년 增加 倍數		
	관용및 자가용	영업용	계	관용및 자가용	영업용	계	관용및 자가용	영업용	계
서 울	106,408	36,230	142,638	921,545	65,703	987,248	8.7	1.8	6.9
부 산	24,319	8,350	32,669	178,816	21,967	200,783	7.4	2.6	6.1
경 기(인천포함)	16,533	9,246	25,779	387,913	29,248	417,161	23.5	3.2	16.2
강 원	3,159	3,590	6,749	50,678	7,568	58,246	16.0	2.1	8.6
충 북	2,483	2,331	4,814	44,878	5,965	50,843	18.1	2.6	10.6
충 남(대전포함)	6,720	4,707	11,427	109,697	12,113	121,810	16.3	2.6	10.7
전 북	3,159	3,332	7,228	57,233	7,584	64,817	14.7	2.3	9.0
전 남(광주포함)	6,720	5,834	12,125	98,732	13,687	112,419	15.7	2.3	9.3
경 북(대구포함)	19,604	9,834	29,438	236,832	21,400	258,232	12.1	2.2	8.8
경 남	9,788	6,368	16,156	146,177	15,275	161,452	14.9	2.4	10.0
제 주	1,334	1,208	2,542	21,508	4,141	25,649	16.1	3.4	10.1
합 계	200,535	91,030	291,565	2,254,009	204,651	2,458,660	11.2	2.2	8.4

資料 : 交通部, 『交通統計年報』, 各年號.

〈附表 3〉 用途別 自動車 交通事故 發生件數, 人命 및 財産損失(1990년)

		발생건수	구성비	사망건수	구성비	부상자수	구성비	재산피해 (백만원)	구성비
사업용	버스	22,434	9.9	984	9.2	33,671	11.5	12,282	6.1
	택시	26,316	11.6	714	6.9	32,601	11.1	13,432	6.6
	화물	10,872	4.8	850	8.2	15,232	5.2	22,388	11.1
	기타	6,636	2.8	602	5.8	9,728	3.3	12,783	6.3
	소계	66,260	29.3	3,144	30.4	91,232	31.1	60,885	30.1
비사업용	승용차	83,539	40.0	2,983	28.9	104,243	35.6	69,241	34.2
	버스	23,178	10.3	1,226	11.9	30,936	10.6	17,570	8.7
	화물	48,865	21.6	2,726	26.4	61,262	20.9	49,705	24.6
	기타	4,176	1.8	301	2.9	5,376	1.8	4,474	2.2
	소계	159,758	70.7	7,191	69.6	201,817	68.9	141,290	69.9
총계		226,018	100.0	10,335	100.0	293,049	100.0	202,175	100.0

資料 : 治安本部, 『交通事故統計』, 1991.

〈附表 4〉 用途別 自動車 綜合保險의 收入과 支給

(단위 : 千원)

	수입보험료	구성비	지급보험금	구성비	수지차액
영업용	268,501	15.5	276,995	21.6	-8,494
자가용	1,464,596	84.4	997,632	77.8	466,964
보장사업비	-	-	6,416	0.5	-6,416
기타	2,240	0.1	658	0.1	1,581
계	1,735,337	100.0	1,281,701	100.0	453,635

資料 : 保險開發院.

〈附表 5〉 自動車 用途別 團束實績

	총단속 (件)	관용	구성비	자가용	구성비	영업용	구성비	기타	구성비
1980	1,779,530	927	0.1	765,914	43.0	1,004,762	56.5	7,927	0.4
1981	1,745,097	734	0.1	717,543	41.1	958,145	54.9	68,645	3.9
1982	2,355,530	577	0.0	1,047,413	44.5	1,201,632	51.0	105,908	4.5
1983	2,734,732	471	0.0	1,308,156	47.8	1,276,452	46.7	149,653	5.5
1984	2,010,111	861	0.0	1,020,331	50.8	888,062	44.2	100,857	5.0
1985	1,840,249	393	0.0	1,054,210	57.3	747,180	40.6	38,466	2.1
1986	1,742,907	848	0.1	1,090,006	62.5	611,230	35.1	40,823	2.3
1987	1,316,658	1,240	0.1	859,144	65.2	429,255	32.6	27,019	2.1
1988	3,438,148	1,166	0.0	2,365,256	68.8	1,031,280	30.0	40,446	1.2
1989	6,066,617	1,348	0.0	4,293,276	70.8	1,681,407	27.7	90,586	1.5
1990	7,341,842	6,621	0.1	5,177,493	70.5	2,053,390	28.0	104,338	1.4

資料 : 治安本部, 『交通事故總計』, 1991.

構造的 財政收支分析에 의한 財政運用의 評價

文 亨 杓

本稿에서는 構造的 財政收支 分析을 통하여 1972년 이후의 中央政府 財政運用을 景氣調節的 側面에서 評價하고 向後 政策方向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構造的 財政收支는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 赤字를 보여 왔으나, 1970년대 후반 이후의 財政赤字縮小努力으로 인해 1980년대에는 實際財政收支의 赤字에도 불구하고 構造的으로는 黑字基調로 반전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8년 이후 中央政府 歲出規模의 빠른 증대로 인하여 構造的 財政收支는 다시 赤字基調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財政의 景氣調節的 役割을 평가해 볼 경우, 歲入의 自動調節的 變化分은 景氣變動에 의해 발생되는 名目GNP갭의 15~18%를 흡수함으로써 總需要安定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構造的 財政基調의 變化는 198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景氣同行的 趨勢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財政部門의 景氣調節的 役割遂行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向後 財政赤字問題의 대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豫算運用의 效率化 推進 및 擔稅率提高 등의 收支改善努力이 요구되며, 아울러 과다한 追更編成의 止揚 등으로 財政의 景氣調節的 役割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 序 論

우리나라 中央政府 歲出規模는 1990년의 경우 GNP의 19.8%에 달하고 있어, 財政規模의 變化는 國民總需要 및 經濟活動水準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巨視經濟的 側面에서의 財政의 景氣調節機能은 所得再分配機能 및 市場失敗의 緩和機能 등과 더불어 財政의 중요한 기능으로 간주된다. 즉 短期的으로 景氣不振時에는 擴張基調를, 景氣過熱時에는 緊縮基調를 유지함으로써 總需要를 安定시키고 나아가 物價調節에 기여하는 財政의 役割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財政의 收入 및 支出規模

筆者: 本院 硏究委員

※ 本稿에 대해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本院의 朴佑奎 박사, 柳潤河 박사 및 黃晟鉉 박사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計量作業과 原稿整理를 도와준 文爀 연구원, 韓珍淑 연구조원께도 감사드린다. 아울러 本稿의 내용 및 오류는 전적으로 筆者의 책임임을 밝혀 둔다.

의 변화에 따른 財政收支의 變動은 과거 財政運用의 評價, 向後 財政收支의 豫測 및 올바른 財政運用基調의 방향제시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政策的 指標가 된다. 실제로, 政府發表 및 紙上을 통해서, 각 회계연도에 발생한 실제 재정수지를 기준으로 財政基調를 擴張的, 또는 緊縮的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자주 눈에 띈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실제 재정수지는 재정정책기조의 변화만이 아니라, 經濟活動水準에 따른 短期的 收支變動도 함께 반영하므로 이를 政策評價의 기준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政府가 支出擴大 및 租稅減免 등으로 擴張的 財政運用을 하더라도, 당해연도의 경기가 활황일 경우 세수호조로 인해 財政收支는 오히려 개선될 수도 있다. 이 경우 財政收支의 改善을 근거로 자칫 財政運用을 緊縮的이라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올바른 財政政策의 評價를 위해서는 이러한 경기변동에 따른 短期的 收支變動을 제거하고 재정의 구조적 변화에 의한 수지변동만을 반영하는 政策的 指標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指標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은 構造的 財政收支(Structural Budget Deficit) 또는 完全雇傭 財政收支(Full-Employment or High-Employment Budget Deficit)의 개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本稿에서는 1972~90년 사이의 우리나라 中央政府의 構造的 財政收支의 變化推移를 推定해 봄으로써, 過去 財政의 景氣調節的 役割遂行을 評價하고 巨視的 側面에서의 向後 財政運用의 方向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본고의 分析結果에 의하면 최근의 財政運用基調는 景氣同行的 趨勢를 보이며 構造的 財政赤字의 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財政의 景氣調節機能을 강화하고 財政收支改善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II章에서는 構造的 財政收支의 槪念 및 必要性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III章 및 IV章에서는 中央政府의 構造的 財政收支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分析 및 評價를 시도하였다. 마지막으로 V章에서는 要約과 함께 향후 財政運用方向을 제시해 보았다.

II. 構造的 財政收支의 槪念 및 必要性

매 회계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財政赤字 또는 黑字의 規模를 간단한 數式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D = T(Y, \tau) - G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1)$$

위 式에서 D는 財政收支(陰일 경우에는 赤字)를 나타내며 T와 G는 각각 財政收入 및 支出額을 나타낸다. 財政收入은 일반적으로 經常國民所得(Y)과 稅率構造(τ)에 의해 결정되며, 財政支出은 편의상 外生的 政策變數로 보기로 하자. 위 式에서 볼 수 있듯이 財政收入은 Y에 의해 결정되는 內生變數的 성격을 가지므로, 실제재정수지의 변화를 財政政策의 經濟的 效果測定을 위한 尺度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즉, 租稅收入은 각 會計年度의 經濟活動水準에 따라 변동하게 되므로, 실제재정수지는 歲入·歲出의 外生的

變化뿐만 아니라 경기변동에 의한 內生的 變化分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實際財政收支로는 財政이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과, 반대로 經濟活動水準의 變化가 財政에 미치는 영향을 구별하기 곤란하다. 즉 政府가 歲入 및 歲出構造를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景氣變動에 따라 변화하는 收支의 自動變動分(automatic component)은 經濟가 豫算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고, 歲入·歲出의 構造的 變化에 따른 財政收支의 裁量的 變化分(discretionary component)은 財政政策이 經濟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구분해야 될 것이다.

실제로 財政政策의 評價 및 向後 財政運用의 방향설정을 위해서는 經濟活動水準에 대응한 財政의 裁量的 變化가 중요한 지표가 된다. 왜냐하면 財政收支의 自動的 變化는 景氣水準에 따른 短期的 變動에 그치게 되는 반면, 裁量的 變化는 財政政策의 巨視經濟的 效果 및 長期的 財政收支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實際財政收支에서 自動的 變化分과 裁量的 變化分을 분리시켜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방법으로 構造的 또는 完全雇傭 財政收支의 개념이 사용된다. 構造的 財政收支(D^*)란 각 會計年度마다 일정한 經濟活動水準을 설정하고 經濟가 이러한 기준수준에 있을 경우 기대되는 歲入 및 歲出規模를 추정함으로써 경기변동에 의한 歲入 및 歲出水準의 自動的 變化를 제거한 收支規模를 의미한다. 이를 式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D^* = T(Y^*, \tau) - G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2)$$

위 式에서 볼 수 있듯이 構造的 歲入水準이 景氣變動에 관계없이 일정한 國民所得水準(Y^*)의 函數로 정의되어, D^*는 景氣水準과 독립적으로 일정한 값을 갖게 된다. 式 (1)과 (2)로부터, $D=(D-D^*)+D^*=[T(Y,\tau)-T(Y^*,\tau)]+D^*$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여기서 $(D-D^*)$는 景氣變動에 따른 收支의 自動變動分을 의미하며, D^*는 財政政策基調의 변화에 의한 재량적 변동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構造的 財政收支의 변동을 파악함으로써 財政運用이 擴張的(expansionary)인지 또는 緊縮的(contractionary)인지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財政收支의 自動調節分에 의해, 실제재정수지와 구조적 재정수지의 차이는 景氣變動幅이 커질수록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경기부진이나 경기과열시 실제재정수지의 조절을 통해 景氣安定을 도모할 경우, 財政政策의 運用은 오히려 景氣同行的(pro-cyclical) 추세를 보이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를 圖를 이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圖 1]에서 $P(\tau, G)$의 線은 稅率構造 및 支出規模로 구성된 특정 財政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이 線이 陽의 기울기를 갖는 것은 Y의 증대에 따라 租稅收入(T)이 높아지는 自動調節機能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어진 財政프로그램하에서는 財政收支는 Y가 커짐에 따라 자연적으로 好轉되게 된다. 또한 Y^*는 構造的 財政收支를 측정하기 위한 基準所得水準으로서 完全雇傭所得水準이라 하자. 만일 특정연도에 경기부진으로 實際所得水準이 Y_1일 경우 實際財政收支는 $\overline{OD_1}$의 赤字를 보이게 될 것이나, 만일 所得水準이 Y^*에 있었다면 構造的 財政收支는 $\overline{OS}$의 黑字를 보일

[圖 1] 實際財政收支와 構造的 財政收支와의 關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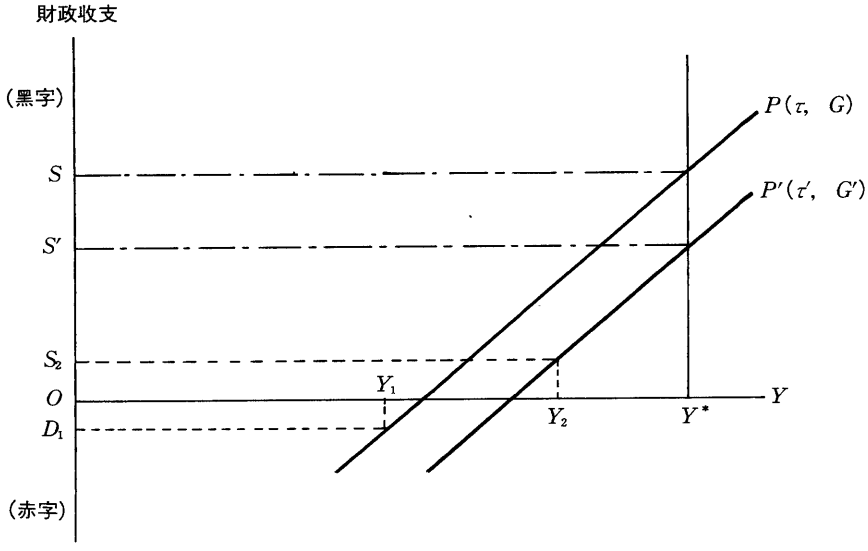

것이다. 즉, 이 경우 財政赤字의 發生은 擴張的 財政政策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경기부진에 의한 것이며, 또한 경기회복시 財政收支는 黑字로 반전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이 경우 정부는 경기안정을 위해서는 赤字財政에도 불구하고 財政을 擴張的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일 政府가 稅率引下 및 支出增大 등의 擴張的 財政政策을 실시한다면 財政프로그램의 線은 $P(\tau, G)$에서 $P'(\tau', G')$으로 떨어지게 된다. 또한 財政擴大와 더불어 通貨供給膨脹 등 總需要增大政策의 결과 경기회복으로 所得水準이 Y_2로 높아졌을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 構造的 財政收支는 $\overline{OS}$로부터 $\overline{OS'}$로 黑字幅이 감소하여 財政運用이 확장적임을 보여주는 반면, 實際財政收支는 $\overline{OD_1}$의 赤字로부터 $\overline{OS_2}$의 黑字로 반전하게 되어 財政運用이 緊縮的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 이처럼 실제재정수지를 기준으로 財政政策의 評價 및 向後 財政運用方向을 결정할 경우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向後 財政收支의 豫測 및 財政政策 基調의 方向設定, 과거 財政運用의 評價와 財政의 經濟的 效果分析 등에 있어서는 실제재정수지보다는 재정운용의 재량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적 재정수지의 개념이 보다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I章에서는 1972~90년의 年間資料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中央政府의 構造的 財政收支를 추정하여 보았다.

III. 構造的 財政收支의 推定

1. 潛在GNP의 設定

각 會計年度의 構造的 財政收支의 規模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해연도의 경제활동수준의 변동에 의한 政府支出 및 收入의 短期的 變動分을 제외시키고 財政構造의 변화에 의한 歲入 및 歲出水準의 변화를 분리하여 財政赤字 또는 黑字水準을 계산하여야 한다. 즉, 각 연도마다 일정한 經濟活動水準을 설정한 후, 경제가 이러한 기준수준에 있을 경우 기대되는 歲入 및 歲出을 推定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經濟活動水準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完全雇傭產出量水準 또는 潛在的 產出量(potential output) 水準이 흔히 사용된다. 즉 각 연도의 잠재적 생산력을 勞動 및 資本 등의 生產要素를 完全雇傭水準까지 投入하였을 경우 생산 가능한 산출량으로 설정하고, 實質GNP가 잠재GNP를 초과할 경우 超過需要壓力이 존재하며 반대로 잠재GNP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景氣不振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潛在GNP의 推定値는 이에 대한 定義 및 推定方法에 따라 다소 差異를 보일 수 있다. 本稿에서 사용된 潛在GNP水準의 槪念은, 각 연도의 可用財源을 完全稼動한 最大生產能力을 의미한다기보다는, 超過需要壓力으로 物價上昇을 가속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景氣循環變動値를 제거한 實現可能產出量의 趨勢値(trend level)로 정의할 수 있다(de Leeuw, et al., 1975, 1982 ; Pechman, 1984 ; 朴佑奎, 1990 ; 韓國銀行, 1989 참조).

이러한 잠재GNP를 추정하는 방법은 Okun의 法則 등 여러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으나, 本稿에서는 朴佑奎(1989, 1990)의 內生的 자본스톡 推定方法에 의해 구해진 자료를 이용하기로 한다. 朴은 잠재GNP의 형성에 있어 雇傭뿐만 아니라 投資도 중요한 變數임을 강조하여, 資本量 및 生產函數를 分期別 資料를 이용하여 內生的으로 推定한 다음 이를 이용

[圖 2] 實質GNP와 潛在GNP의 推移(1985년 不變價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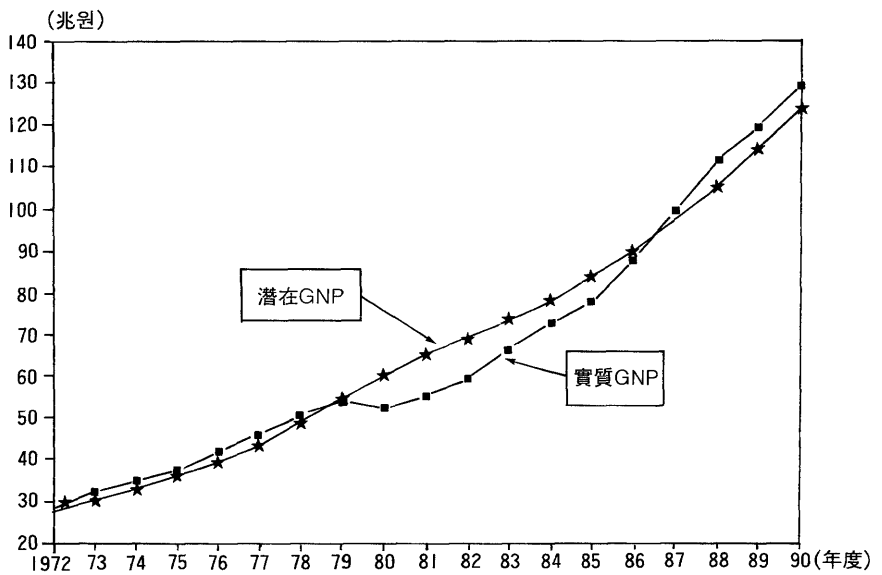

하여 각 연도의 잠재GNP 수준을 계산하였다[1].

이러한 방법에 의해 算出된 潛在GNP와 實質GNP의 비교는 [圖 2]에 나타나 있다. 推定된 1972~90년 기간중의 잠재GNP의 年平均成長率은 8.15% 정도로 나타났으며, 1970년대의 10.2%로부터 1980년대에는 7.5%로 平均成長率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圖에서 보듯이, 70년대 동안에는 實質GNP가 潛在GNP水準을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1979년 이후 이러한 현상이 반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86년 이후의 3低好況에 힘입어 1987년 이후 다시 實質GNP가 潛在GNP水準을 上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政府歲入 및 歲出은 名目價格基準으로 정의되므로 構造的 財政收支의 分析을 위해서는 추정된 實質潛在GNP를 名目價格基準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디플레이터의 선정이 필요하다. 각 연도의 實際GNP디플레이터 增加率은 당해연도의 經濟活動水準 또는 總需要變動에 의한 物價變動分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직접 名目潛在GNP算定에 이용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즉 潛在GNP水準에서는 超過需要壓力에 의한 物價變動이 발생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이를 제거한 새로운 디플레이터를 추정하여 名目潛在GNP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2].

本稿에서는 實質GNP에 대응한 디플레이터의 설정에 있어, 각 연도의 實際GNP디플레이터의 상승률에서 당해연도의 超過需要壓力에 의한 物價變動分을 제거한 상승률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디플레이터를 산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를 위해 1972~90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物價決定式을 설정하여 OLS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dot{P}_t = \underset{(1.56)}{0.018} + \underset{(3.01)}{0.258}\ RGAP_t + \underset{(9.91)}{0.767}\ \dot{P}_{t-1} + \underset{(5.32)}{0.140}\ D_1 + \underset{(3.42)}{0.100}\ D_2$$

$$R^2 = 0.93 (\bar{R}^2 = 0.91) \qquad D.W. = 2.47$$

여기서 $\dot{P}_t = (ln\ P_t - ln\ P_{t-1})$은 GNP디플레이터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RGAP_t = (ln\ y_t - ln\ y_t^*)$는 각 연도의 實際GNP와 潛在GNP간의 상대적 격차를 말한다. D_1과 D_2는 각각 1974년 및 1980년을 1로 하는 더미변수로 석유파동에 의한 코스트 푸쉬(cost-push)를 반영한다. 위 式은 각 연도의 物價上昇率은 前年度의 物價上昇率에 반영된 經濟與件 및 당해연도 超過需要壓力에 의해서 변동됨을 의미하며, $\dot{P}_t = (1-\lambda) \cdot \sum_{i=0}^{\infty} \lambda^i\ RGAP_{t-i}$을 Koyck 變換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식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연도의 超過需要는 당해연도의 물가를 상승시키는 有意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의 GNP水準이 潛在GNP水準과 일치하여 당해연도의 超過需要壓力이 없었을 경우에 기대되는 物價上昇率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 推定式에서 $\dot{P}_{t-1}$의 실제값과 $RGAP_t = 0$을 代入하여 새로운 디플레이터 $\{\dot{P}_t'\}$을 도출하였다[3]. 마

---

1) 구체적인 추정절차는 朴佑奎(1989) 참조.

2) de Leeuw, et al.(1980)은 潛在GNP下에서와 實際GNP下에서의 物價水準이 같다고 가정하여 實際GNP디플레이터를 經常潛在GNP계산에 대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지적하고 있다(p.21).

3) 즉, $\dot{P}_t' = (P_t^* - P_{t-1})/P_{t-1}$을 의미하며, 이는 潛在GNP에서의 物價上昇率 $\dot{P}_t^* = (P_t^* - P_{t-1}^*)/P_{t-1}^*$과는 다른 개념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圖 3] 디플레이터 上昇率의 推移(197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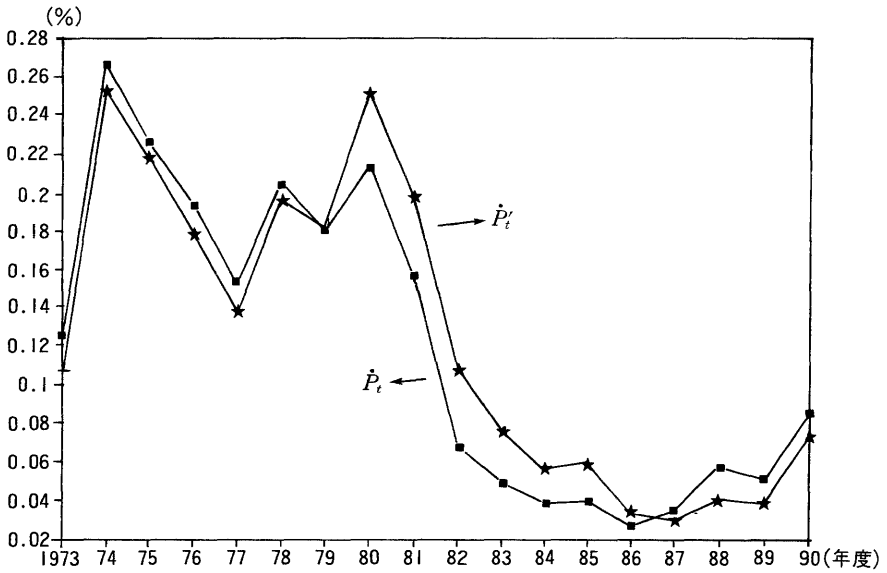

지막으로, 潛在GNP水準下에서의 디플레이터는 $P_t^* = P_{t-1} \cdot (1+\dot{P}_t')$에 의거해 계산하였으며, 이러한 절차를 통해 얻어진 名目潛在GNP와 物價上昇率의 추정결과는 〈附表 1〉 및 [圖 3]에 나타나 있다.

2. 歲入水準의 調整

각 연도의 財政歲入은 크게 租稅收入과 그 밖의 稅外收入으로 나눌 수 있으며, 租稅收入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구조적 세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實際GNP成長率과 潛在GNP成長率間의 차이에 따른 租稅收入의 調整이 가장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다. 가장 손쉬운 稅收調整方法으로는 각년도의 실제 GNP와 잠재GNP간의 차이에 따른 稅收의 比例調整方法을 채택할 수 있겠으나, 이는 暗默的으로 稅收의 對GNP彈力性이 1임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그 신뢰성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稅收調整을 위해서는 租稅의 GNP彈力性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잠재GNP수준에서의 期待稅收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稅收의 對GNP彈力性을 구하기 위해서는 稅法改正, 稅務行政能力의 變化, 稅務行政의 改善 등에 의한 稅收의 裁量的 變化를 제거하고 國民所得과 稅收와의 관계만을 분리하여 추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裁量的 變化를 제거하는 방법은 더미변수사용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本稿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는 Prest調整法을 사용하기로 한다. Prest調整法은 어떤 한 해의 재량적 세수변화가 그 이후 연도에도 比例的으로 持續된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재량적 변화를 제거한 稅收資料를 얻는 방법이다. 즉,

$$\hat{T}_t = \hat{T}_{t-1} \cdot \left(1+\frac{T_t - D_t - T_{t-1}}{T_{t-1}}\right)$$
$$= \frac{\hat{T}_{t-1}}{T_{t-1}} \cdot (T_t - D_t)$$

여기서 T_t : t期의 實稅收

$\hat{T}_t$: t期의 調整된 稅收

D_t : t期의 裁量的 稅收變化分

위의 式에서 (T_t-D_t)는 t년도에 稅法改正이 없었을 경우 기대되는 稅入水準을 의미한다. 따라서, t년도의 조정세수는 $(t-1)$년도와 t년도 사이에 稅法改正이 없었을 경우의 期待稅收增加分을 $(t-1)$년도의 조정세수에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즉, Prest調整法은 分析期間의 첫 會計年度를 기준연도로 설정하고($T_o=\hat{T}_o$), 次後年度의 租稅構造가 기준연도와 同一할 경우에 기대되는 租稅收入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구해진 調整租稅收入現況은 〈表 1〉에 나타나 있다.

調整稅收를 산출하는 데 있어 裁量的 變化分(D_t)으로는 政府發表資料를 수정한 稅法改正效果를 사용하였다. 각 연도의 稅法改正效果는 政府의 豫算編成時 추정발표된 자료가 있으나 이 자료는 政府稅收推定時의 成長率豫測 및 推定節次上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오차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稅法改正效果의 推定과 稅收入推定이 동일한 오차율을 갖는다는 가정하에 비례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많이 쓰인다. 즉,

$$D_t=D'_t\cdot(T_t/T'_t)$$

위에서 D'_t 및 T'_t은 政府에 의해 추정된 稅法改正效果 및 租稅收入豫算値를 나타낸다. 여기서 지적할 것은 〈表 1〉의 資料는 각 稅收別

〈表 1〉 調整稅收의 推移(1972~88)

(단위 : 10億원)

	稅收入 (T_t)	稅法改正效果 (D_t)	調整稅收(1)[1] ($\hat{T}_t(1)$)	調整稅收(2)[2] ($\hat{T}_t(2)$)
1972	482.1	—	482.1	
1973	586.3	-15.0	601.3	458.4
1974	923.9	-39.9	988.5	753.6
1975	1,406.2	-48.1	1,555.9	1,186.2
1976	2,116.6	-14.0	2,357.4	1,797.3
1977	2,656.9	-54.1	3,019.5	2,302.0
1978	3,702.1	-59.4	4,274.8	3,259.0
1979	4,837.4	-122.0	5,726.6	4,365.9
1980	5,896.8	-130.4	7,135.2	5,439.7
1981	7,364.4	-38.8	8,957.9	6,829.3
1982	8,529.9	-43.0	10,427.9	7,950.0
1983	10,207.4	-149.9	12,661.9	9,653.1
1984	11,077.3	-200.6	13,989.8	10,665.6
1985	12,105.1	-127.9	15,449.4	11,778.3
1986	13,882.2	-152.2	17,911.7	13,655.5
1987	16,689.4	-133.8	21,706.8	16,548.7
1988	20,389.4	-173.7	26,744.5	20,389.4

註 : 中央政府 租稅收入基準.

1) 1972년을 기준연도로 계산한 경우.

2) 1988년을 기준연도로 계산한 경우.

稅法改正效果 및 稅收入의 합계치라는 점이다. 보다 정확한 稅收의 對GNP彈力性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稅目別로 나누어 추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성이 높을 것이나 본고에서는 총체적 효과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表 1>의 자료를 이용하여 稅收의 彈性値를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장 단순한 형태의 推定式을 설정하였다.

$$log(\text{조정세수})_t = \underset{(-48.3)}{-3.47849} + \underset{(61.5)}{1.16875} \cdot log\ Y_t$$

$$R^2 = 0.996 \qquad D.W. = 0.426$$

단, ( ) 안은 t-통계량임.

위 식의 추정결과를 보면 R^2 및 t값은 높게 나타났으나, 「더빈-왓슨」계수가 매우 낮게 나타나 誤差項이 正의 自己相關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誤差項의 1次自己相關을 가정하여 수정한 결과는

$$log(\text{조정세수})_t = \underset{(-9.58)}{-2.36942} + \underset{(47.2)}{1.06896} \cdot log\ Y_t$$

$$R^2 = 0.999 \qquad D.W. = 1.94 \qquad \rho = \underset{(6.82)}{0.620}$$

로 나타나 잘 符合됨을 알 수 있다.

위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稅收의 GNP彈力性은 약 1.07로서 1을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usgrave-Thin(1948)은 租稅의 所得彈力性이 1보다 클 경우 累進的(liability progression)이라 정의하였으며, 이는 所得이 增大함에 따라 平均稅率이 높아지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입각할 경우 우리나라의 全般的 租稅體系는 약하나마 累進的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따라서 所得水準向上에 따른 自然的 稅收增大는 分配改善效果를 수반하리라 기대할 수 있다.

3. 構造的 財政收支의 推定

위에서 구한 租稅彈力性을 이용하면 각 연도의 잠재GNP수준에서 거대되는 構造的 租稅收入을 계산할 수 있다. 構造的 稅收는 名目潛在GNP下에서 예상되는 기대세수로서, 각 연도의 名目GNP갭의 크기에 따라 租稅彈性値로 조정하여 예상세수를 추정하였다. 즉 租稅彈力性($\hat{\beta}$)의 定義를 이용하면 構造的 稅收(T^*)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T_t^* = T_t\{1 + \hat{\beta} \cdot (Y_t^* / Y_t - 1)\}$$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構造的 稅收와 實稅收간의 차이는 <附表 2> 및 [圖 4]에 나타나 있다. 圖에서 $(T_t - T_t^*)$는 短期的 景氣變化에 따른 租稅收入의 變動分을 의미하며, 따라서 潛在GNP水準을 기준으로 경기활황의 경우에는 正의 값을, 경기부진의 경우에는 負의 값을 갖는다. [圖 4]에서 보듯이, 1980년대 중반까지는 實稅收가 構造的 稅收에 미달되었으나 1987년 이후 반전되었으며, 특히 1988년 이후 그 격차가 늘어나 최근의 稅收好調가 短期的 경기활황에 기인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構造的 歲入을 算出함에 있어서는 租稅收入을 위와 같이 잠재GNP의 수준을 기준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밖의 稅外收入 및 資本收入은 규모가 작고 所得水準의 變化와 상관관계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단순합계로 계산하였다.

構造的 財政收支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所得水準變化에 따른 歲入의 調整뿐만 아니라 歲出水準의 調整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圖 4] 實稅收와 構造的 稅收와의 隔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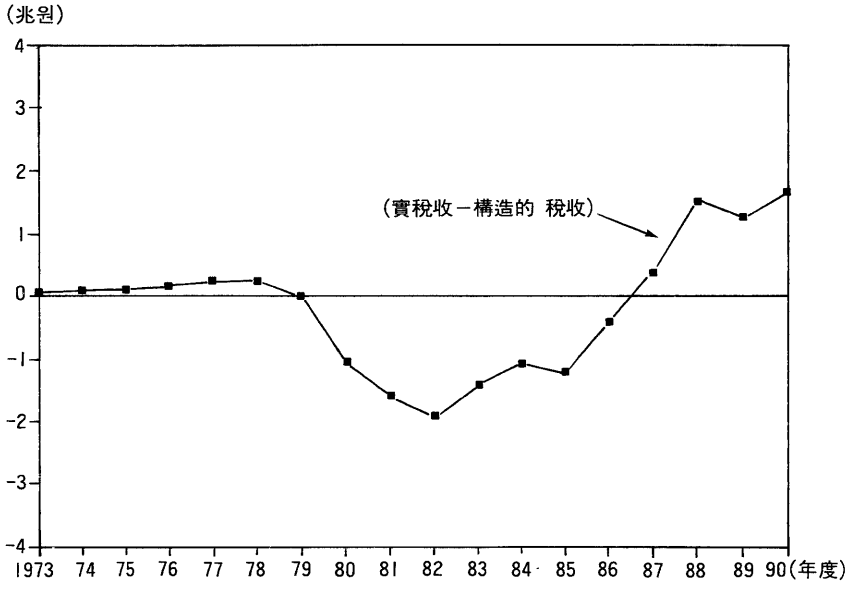

〈表 2〉 實際財政收支와 構造的 財政收支(1972～90)

(단위 : 10億원)

	歲 入		歲 出	財政收支[1]	
	R_t[2]	R_t^*	E_t[3]	D_t	D_t^*
1972	585.1		746.2	-161.1	
1973	694.5	639.9	721.2	-26.7	-81.3
1974	1,038.7	947.7	1,203.0	-164.3	-255.3
1975	1,563.6	1,476.9	1,765.3	-201.7	-288.4
1976	2,326.6	2,138.9	2,518.9	-192.3	-380.0
1977	2,958.4	2,732.0	3,274.4	-316.0	-542.4
1978	4,107.7	3,875.3	4,408.0	-300.3	-532.7
1979	5,445.4	5,450.9	5,990.0	-544.6	-539.1
1980	6,833.2	7,890.6	7,682.0	-848.8	208.6
1981	8,604.8	10,215.3	10,189.8	-1,585.0	25.6
1982	9,983.2	11,897.0	11,639.2	-1,656.0	257.8
1983	11,537.5	12,932.1	12,200.1	-662.6	732.0
1984	12,603.3	13,658.6	13,444.6	-841.3	214.0
1985	13,922.0	15,155.0	14,867.0	-945.0	288.0
1986	15,840.4	16,252.5	15,926.7	-86.3	325.8
1987	18,657.9	18,279.1	18,180.1	477.8	99.0
1988	22,890.0	21,322.6	20,881.4	2,008.6	441.2
1989	25,962.2	24,683.3	25,677.2	285.0	-993.9
1990	32,089.3	30,401.0	33,296.1	-1,206.9	-2,895.1

註 : 1) 中央政府 統合財政收支基準.
2) 1972～76년기간의 歲入은 무상원조를 포함.
3) 歲出 및 純融資 포함.

資料 : 財務部, 『豫算概要』, 各年度.

歲入과 마찬가지로 政府의 각 會計年度의 歲出의 변화는 歲出構造 및 政策基調의 변화에 의한 부분과 해당연도의 경제활동수준에 따른 自動的 變化分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醫療保險이나 國民年金制度의 導入, 國防費規模의 縮小, 行政制度의 改善 등에 따른 歲出規模의 變化는 구조적 변화로 볼 수 있는 반면, 경기부진에 따른 영세민보조 및 실업수당의 증가 등은 景氣變動에 따른 自動的 支出變化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景氣變動에 따른 失業率 變化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는 支出項目들은 失業保險의 支給額, 醫療保護費 및 社會保障費 중 빈곤층관련 지출항목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와 같이 雇傭保險(unemployment insurance) 등 失業對策 프로그램이 잘 발달된 상황에서는 실제의 失業率水準과 潛在GNP하에서의 期待失業率間의 차이에 따라 이러한 지출항목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4].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雇傭保險制度가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이 밖의 社會保障制度도 그 도입초기단계에 있어 調整效果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潛在GNP算定에 의한 歲出調整을 생략하고 實歲出과 構造的 歲出이 同一하다고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推定節次에 의해 구해진 構造的 歲入規模 및 財政收支는 <表 2>에 나타나 있다.

IV. 構造的 財政收支의 分析 및 評價

[圖 5] 및 [圖 6]에서는 앞에서 조정된 中央政府의 歲入 및 歲出에 의거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構造的 또는 完全雇傭豫算의 財政收支를 실제재정수지의 추이와 비교하였다. [圖 5]는 實際財政收支와 構造的 財政收支의 차이를 금액으로 비교하였으며, [圖 6]은 이를 각각 名目GNP 및 名目潛在GNP의 비율로써 나타내었다[5].

圖에서 보듯이 實際財政收支와 構造的 財政收支는 그 방향 및 규모면에서 서로 큰 차이를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歲入規模가 각 연도의 經濟活動水準에 따라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어느 한 해의 財政赤字 또는 黑字의 발생에 근거하여 재정의 현황 및 향후의 정책방향을 결정할 경우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政府가 中·長期的으로 均衡豫算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경우, 각 연도의 財政黑字 또는 赤字水準에 비추어 歲出·入水準을 조정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러한 기조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1. 構造的 財政收支의 推移

[圖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70년대 동안 財

4) 支出調整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de Leeuw (1980), Pechman(1984) 참조.

5) 實質成長 및 物價上昇으로 인해 經濟規模가 빠르게 확대될 경우 財政收支의 절대수준보다는 GNP에 대한 상대적 비율의 변화가 더욱 의미있는 財政政策基調의 評價基準이 될 수 있다(de Leeuw(1980), p.22 참조). 圖에서 보듯이 1970년대중 財政赤字의 절대수준은 작게 나타나나 GNP에 대한 比重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圖 5] 構造的 財政收支의 推移(197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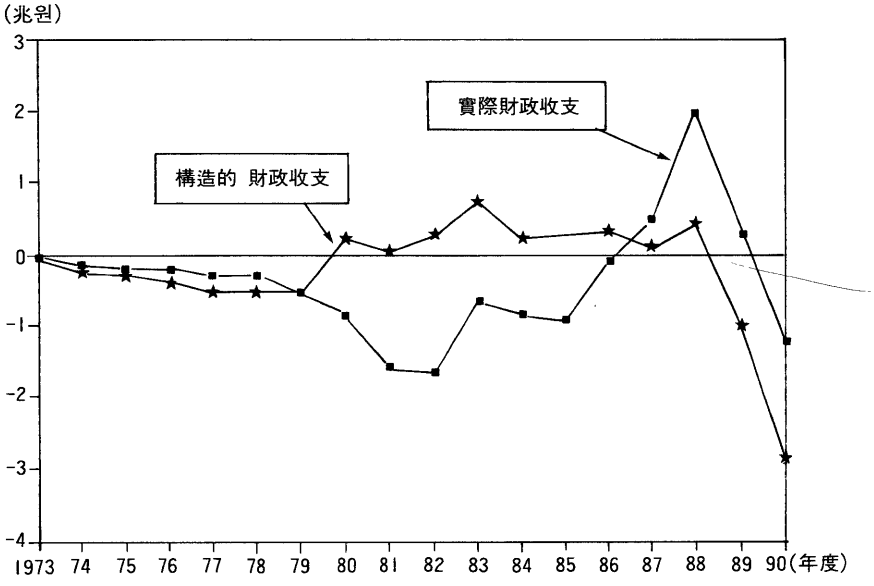

政은 꾸준한 赤字運用을 유지해 왔으며 構造的 赤字와 實際赤字間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각 연도마다 構造的 赤字幅이 實際赤字보다 조금씩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같은 기간중의 經濟成長速度가 潛在GNP成長率보다 다소 빨랐기 때문이다. 또한 財政收支의 對GNP比重으로 볼 경우, 70년대 동안의 構造的 赤字는 潛在GNP의 2~4%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 기간중 정부는 高度成長을 뒷받침하기 위

[圖 6] 構造的 財政收支의 對GNP比重의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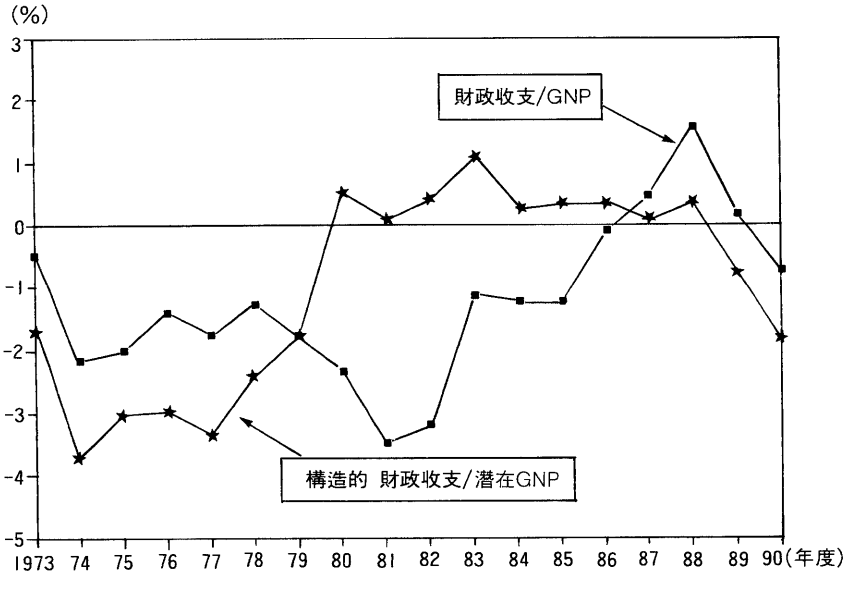

해 赤字財政基調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77년 이후 第4次 經濟開發5個年計劃을 추진하면서 財政赤字의 縮小 및 財政의 景氣調節機能 提高를 목표로 收支改善努力을 강화함에 따라 1970년대말부터는 構造的 赤字의 폭이 줄어들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構造的 財政收支와 實際財政收支 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특히 1980년부터 1986년까지의 기간동안 실제재정수지는 계속적인 赤字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기간중의 構造的 財政收支는 오히려 黑字水準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괴리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1980년대 초반의 2次 石油波動 및 政治·社會的 不安에 따른 경기부진으로 실질 GNP成長率이 1980년의 -3.7%, 1981년의 5.9% 및 1982년의 7.2%로 잠재GNP의 平均成長率을 크게 밑돌았던 데 있다. 따라서 이 기간중 경제가 잠재GNP의 추세를 따랐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歲入水準이 상당히 큰 폭으로 상향조정될 것이다. [圖 5]에 나타나 있듯이 同 期間中의 構造的 財政收支는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1983년 이후부터 經濟가 회복됨에 따라 실제 財政赤字幅도 줄어든 것이 이를 반증해 준다.

두번째로 1980년대 이후 構造的 財政收支가 黑字로 반전한 주요한 원인은 政府의 財政緊縮基調로의 전환이다. [圖 7]에서 보듯이 中央政府歲出의 名目潛在GNP에 대한 상대적 비중은 1980년부터 크게 하락하였으며, 1980~86년 사이에 계속 下向趨勢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980년대초의 社會·政治的 不安과 2次 石油波動으로 物價不安要素가 증대하였던바, 정부는 인플레이션억제를 위해 財政緊縮을 도모하였으며, 이에 따라 財政收支가 構造的으로는 黑字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圖 7] 構造的 歲入 및 歲出의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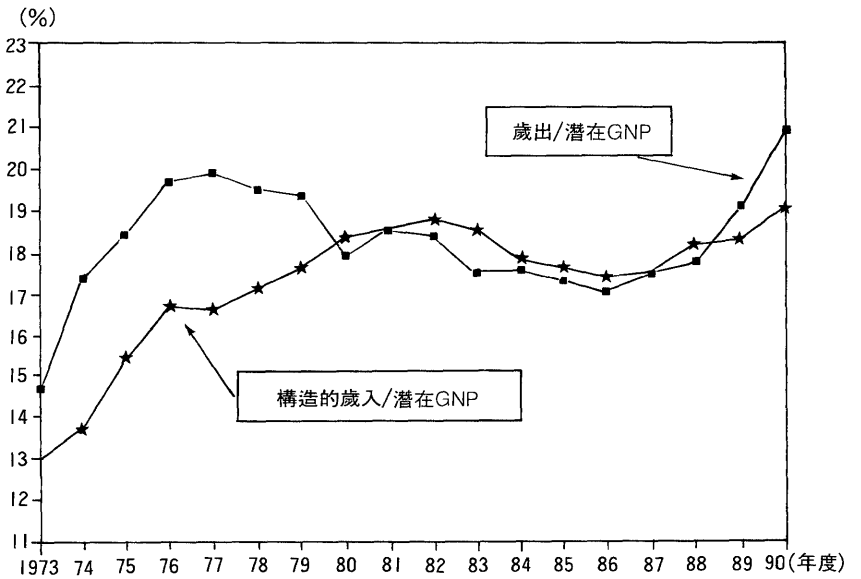

1986년 이후 1988년까지 실제재정수지는 다시 크게 호전되어 흑자로 반전하게 되었으며, 이는 3低好況에 힘입은 年間 實質GNP成長率 12% 이상의 급속한 성장세 지속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1987년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中央政府收支는 1988년에는 2兆원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열경기를 조정한 構造的 黑字水準은 오히려 1980년대 초반보다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위 圖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1989년 이후 실제재정수지 및 구조적 재정수지가 함께 큰 폭으로 下落한 현상이다. 1989년의 경우 構造的 財政收支는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0년에는 實際 中央政府收支도 1兆원 이상의 赤字가 발생하여 정부가 확장적 재정기조로 전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0년의 名目潛在GNP에 대한 構造的 財政赤字의 비중은 1.8%로 1970년대와 유사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재정수지가 크게 하락한 데에는 1989년의 환율인상 등 經濟與件惡化에 의한 6.7%의 低成長에도 기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要因은 구조적 적자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두 收支가 함께 하락한 것은 收支의 變化가 주로 歲入·歲出의 構造的 變化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景氣變動과 관계없는 歲入의 減少 및 歲出規模의 확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圖 7]에서 보듯이 실제로 中央政府歲出은 1989년의 23.0%, 1990년의 29.7%로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歲出增加의 요인은 1980년대의 긴축재정으로 억제되어 오던 社會·經濟開發機能을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기인하고 있다. 즉, 이러한 세출기조의 변화는 그동안의 國民所得과 經濟規模의 증가에 따른 福祉財政에 대한 國民的 需要 및 社會間接資本 등의 投資需要의 확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선진국에 비해 福祉財政機能이 매우 낙후된 우리나라의 경우 이는 어느 정도 자연적인 추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歲出要因 외에도 構造的 赤字發生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稅收減縮基調를 지적할 수 있다. 1988년의 2兆원 이상의 財政黑字發生은 정부가 過剩徵收로 필요 이상의 세부담을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부담완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1989년중 勤勞所得控除額引上, 法人稅負擔輕減措置 등 稅收減縮努力을 추진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1989~90년의 이러한 확장적 財政基調는 1991년에도 계속된 것으로 사료된다. 1991년도의 中央政府收支의 통계자료는 아직 구할 수 없으나, 中央政府의 歲出規模의 7할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는 一般會計의 경우, 1989년 및 1990년의 前年對比 20.1%, 26.8%의 증가에 이어 1991년에도 1, 2次 追更 및 地方讓與金을 포함할 경우 21.6% 증가할 것으로 보여, 構造的 赤字幅은 1991년에 와서 더욱 커졌으리라 예상된다. 實際GNP가 潛在GNP수준을 계속 웃돌고 있는 최근의 경기활황에서의 이러한 財政擴大基調는 景氣同行的 趨勢로 景氣過熱을 부추기고 物價上昇壓力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稅收好調가 경기활황국면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向後 경제가 잠재GNP의 추세로 안정될 경우 심각한 財政赤字問題가 대두할 우려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향후 財政支出은 經濟·社會開發機能 정상화에 의한 확대기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적 재원확보노력이 강화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수년내에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豫算運用의 效率化 및 추가적 재원확보 등의 構造的 赤字要因의 축소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2. 構造的 收支와 財政效果

II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構造的 財政收支의 推定을 통하여 財政收支의 變化를 景氣變動에 따른 自動的 變化分과 財政의 裁量的 또는 構造的 變化分을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추이는 [圖 8]에 나타나 있다. 圖에서 收支의 自動的 變化分은 實際收支와 構造的 收支間의 차이를 나타내며 재량적 변화는 구조적 수지의 對潛在GNP比率로 표시된다.

圖에서 보듯이 自動的 收支變化分은 GNP갭의 변화와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동적 수지변동은 財政의 景氣安定效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이 변동분은 경기활황시에는 稅收入의 增大를, 景氣不振의 경우에는 稅收入의 減少로 경제내의 총수요를 안정시키는 自動安定裝置(automatic stabilizer)의 역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稅收調整만을 통해 構造的 收支를 추정하였기에 潛在GNP對比 自動的 收支變動(D_A)은 租稅彈力性($\hat{\beta}$)의 정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D_A = \frac{(D-D^*)}{Y^*} = \hat{\beta} \cdot \frac{T^*}{Y^*} \cdot \frac{(Y-Y^*)}{Y^*}$$

즉, 自動調節的 收支變動은 租稅彈力性, 名目GNP갭의 比重 및 潛在GNP水準에서 推定된 租稅負擔率水準에 의해 결정된다.

[圖 8] 財政收支의 自動的 變化 및 構造的 變化의 推移(對潛在GNP比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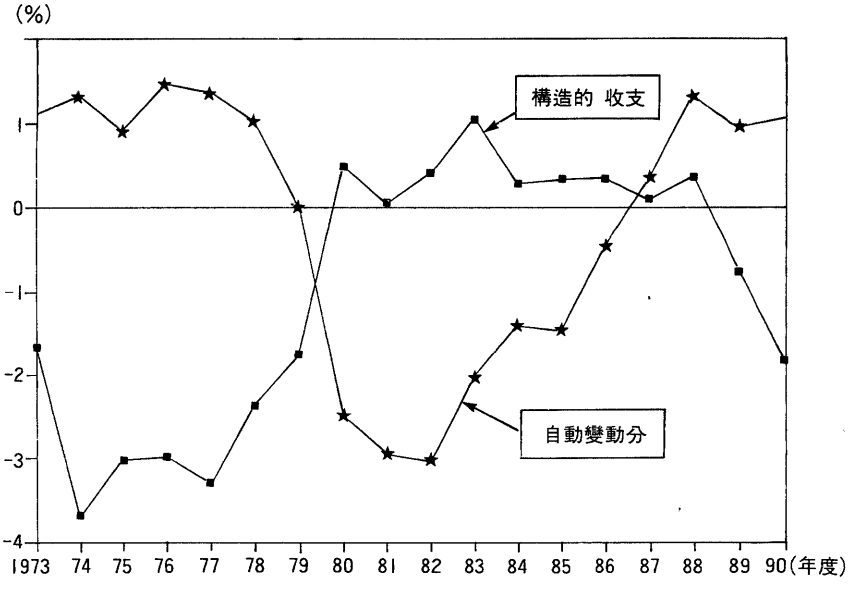

위 式을 이용하여 경기변동시 財政이 經濟安定에 주는 역할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90년을 기준연도로 볼 경우, 경기활황에 의한 經常GNP의 上昇으로 名目GNP갭이 1兆원만큼 증가할 경우 自動的 財政收支는 약 1,790億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는 財政이 稅收의 自動調節機能으로 말미암아 景氣變動에 의해 발생되는 GNP갭의 약 18% 정도를 흡수해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 수치는 財政의 自動的 景氣調節效果의 크기를 나타내며, 이로부터 財政의 自動安定裝置가 경제안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3~90년의 분석기간에 걸쳐 이러한 財政의 自動的 景氣調節效果는 70년대 평균 15.2%로부터 80년대의 17.2%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圖 8]에서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財政의 裁量的 變化를 나타내는 構造的 收支의 推移는 대부분의 分析期間中 自動變化分과 거의 대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77~80년기간중 名目GNP갭은 正에서 負로 떨어져 景氣惡化局面임을 시사하는 반면, 構造的 收支는 赤字로부터 黑字로 빠르게 증대되어 財政이 緊縮的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88년 이후에는 이미 경기활황국면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構造的 收支는 급격히 감소하여 財政이 擴張的 基調를 추진하여 景氣同行的 推移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1980~84년 기간중에는 財政의 景氣逆行的(counter-cyclical) 基調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의 경우 2次 石油波動으로 인한 불황에 대해서 財政은 構造的 收支의 黑字幅을 낮추어 需要增大政策을 택하였으며 그 이후 1981~84년까지 景氣가 회복되면서 構造的 收支도 함께 개선되고 있어 財政이 同期間中 긴축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198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財政基調의 構造的 變化가 景氣變動에 대해 대체적으로 同行的인 趨勢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財政運用이 景氣循環에 악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財政運用과 景氣變動間의 因果關係 및 效果分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병행되어야 하겠으나, 構造的 收支變動을 통해서 볼 경우 우리나라 財政이 70년대 이후 최근까지 景氣調節的 역할수행에 있어 미흡하였다고 판단된다. 특히 1989년 이후 中央政府 一般會計의 歲出增加는 景氣好況에 따른 超過稅收를 재원으로 한 追更編成에 기인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財政運用이 경기동행적 추세를 갖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表 3 참조). 따라서 향후 재정운용에 있어 사전계획수립에 의한 보다 效率的 財政運用 및 財政의 景氣調節機能을 강화하기 위해

〈表 3〉 中央政府 一般會計 追更 및 歲計剩餘金의 推移

(단위 : 10億원)

	1987	1988	1989	1990	1991展望
追更規模 追更/總豫算	500 (3.1)	965 (5.2)	2,189 (9.9)	4,767 (17.4)	4,403 (14.0)
歲計剩餘金 歲計剩餘/本豫算	1,365 (8.8)	3,305 (18.9)	3,123 (16.2)	3,168 (14.0)	1兆원以上

서는 과다한 追更編成의 慣行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3. 構造的 財政收支分析의 限界性 檢討

앞에서 추정한 構造的 財政收支의 推定方法 및 理論上의 몇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構造的 財政收支의 推定結果는 潛在GNP水準의 설정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이 지적된다(Pechman(1983), de Leeuw(1980), etc.). 따라서 잠재GNP추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朴佑奎(1989)의 生産函數 推定에 의한 潛在GNP 算定結果를 바탕으로 하였으나, 이 밖에도 최근의 潛在GNP推定에 관한 연구로는 韓國銀行(1989)을 들 수 있다. 한국은행의 연구는 失業率調整을 통한 항등식 접근법을 사용하여 潛在GNP를 추정하였으며 朴의 추정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의 잠재GNP추세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토대로 構造的 財政收支를 파악할 경우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本稿에서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失業率調整方法을 사용하여 잠재GNP를 추정하여 위의 결과들과 비교해 보았다. 즉 線型回歸方法을 통하여 失業率(u_t)과 實質GNP間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log y_t = \underset{(214.4)}{10.65} + \underset{(56.8)}{0.0725} \cdot trend - \underset{(-9.24)}{0.0996}\, u_t$$
$$\underset{(-0.41)}{-0.01}\, D_1 + \underset{(2.87)}{0.08}\, D_2$$
$$R_2 = 0.998 (\bar{R}^2 = 0.9976), \qquad D.W. = 1.71$$

여기서 D_1과 D_2는 1974년 및 1980년의 석유파동더미를 나타낸다. 潛在GNP는 위 推定式에 自然失業率(u_t^*)을 代入한 추세치로 정의하였다. 자연실업률의 수준은 1973년의 경우

[圖 9] 失業率調整에 의한 潛在GNP 推定(1985년 不變價格基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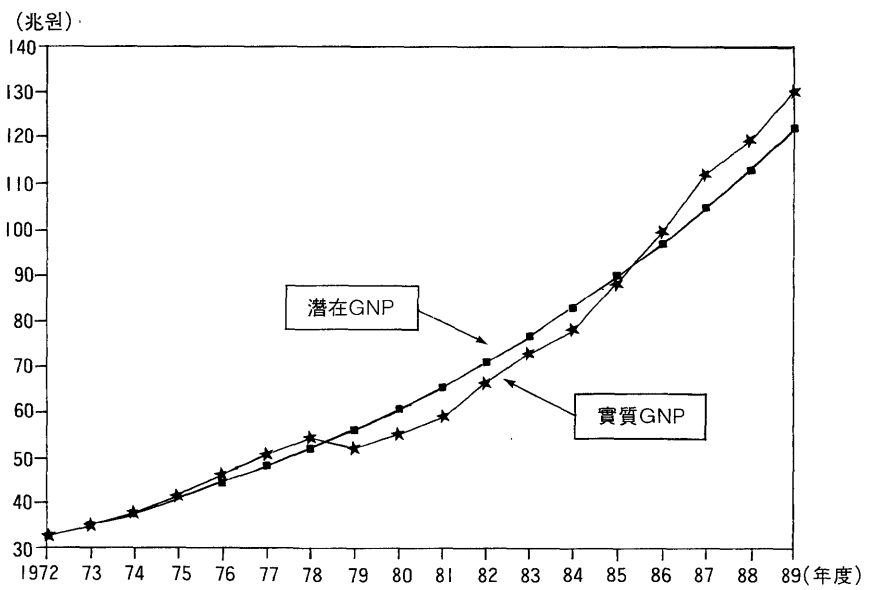

[圖 10] 名目GNP갭의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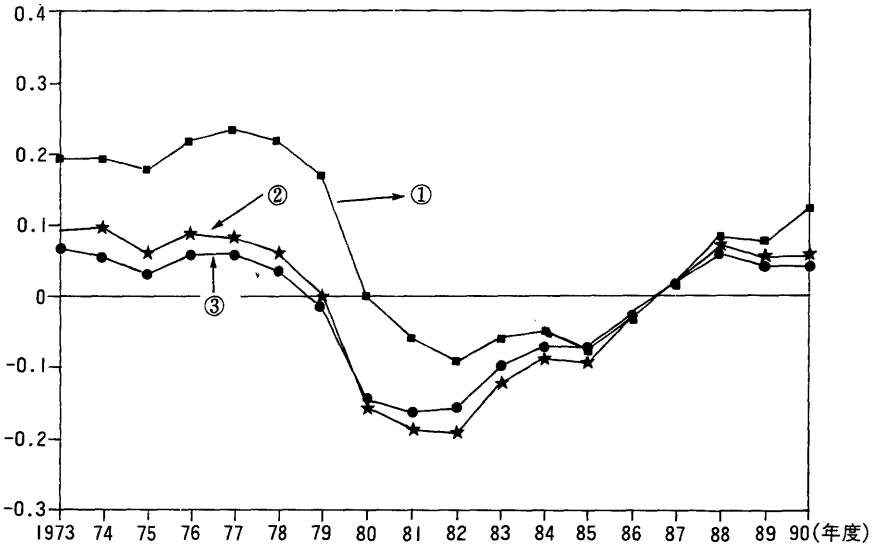

註 : $(log\ Y_t - log\ Y_t^*)$의 推定値임.
① 1987년을 基準年度로 算定한 디플레이터를 사용한 推定値.
② 本稿의 推定値.
③ 實際디플레이터를 사용한 推定値.

4.0%로 보고 그 이후 매년 0.05%씩 감소하여 1990년에는 3.15%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6]. 이러한 방법에 의한 潛在GNP 推定結果는 [圖 9]에 나타나 있으며, 이를 朴의 결과(圖 2 참조)와 비교해 보면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어, 본고의 潛在GNP설정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고려할 점은 名目潛在GNP 推定을 위한 디플레이터 선정의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GNP갭에 의한 超過需要壓力을 조정한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였으나, de Leeuw et al. (1980, 1982)에서와 같이 실제디플레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실제디플레이터를 사용할 경우 名目價格基準 GNP갭은 다소 줄어들게 되어 構造的 財政收支와 實際財政收支의 격차도 감소하게 되나, 추정결과에 의하면 그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圖 10 참조).

또한 潛在GNP에 대한 디플레이터의 選定에 있어 본고에서 사용한 방법과 같이 각 연도의 實際디플레이터 上昇率에서 당해연도의 超過需要壓力에 의한 상승분을 제거시키는 방법 대신, 전체 분석기간동안 潛在GNP 水準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이에 따른 디플레이터의 추세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7].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名目GNP갭을(圖의 ①의 경우) 본고에서 사용된 디플

6) 韓國銀行(1989)의 硏究에서는 自然失業率을 1970년 1/4분기~1974년 4/4분기중에는 4.1%, 1975년 1/4분기~1988년 4/4분기중에는 3.3%로 추정하였다. (p. 9, 각주)

7) 이러한 디플레이터를 계산하는 데 있어, 實質GNP갭이 零에 가까웠던 1987년을 기준연도로 $(P_{87}=P_{87}^*)$ 설정하고 (3)式에서 $RGAP_t=0$를 대입하여 추세치를 구하였다.

레이터 및 實際디플레이터를 적용한 경우와 비교해 볼 경우 그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기준연도의 설정에 있어 자의성을 배제하기 힘들며, 또한 향후 財政收支의 豫測 등에 있어 본고의 방법이 보다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점은 構造的 財政收支가 財政의 經濟的 效果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갖는 한계점이다. 즉 構造的 財政收支는 收支의 變化가 歲入側面 또는 歲出側面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으므로 財政의 經濟的 影響力 測定에 있어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稅率引上 및 支出增大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構造的 財政收支는 변하지 않을 것이나, 「케인즈」的 視角에 의하면 均衡財政乘數效果를 통하여 總需要 增大를 발생시킬 수 있다. Gramlich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수정된 財政收支의 槪念(Weighted Full Employment Surplus)을 도입하였다[8].

$$W = c \cdot T(Y^*, \tau) - G$$

즉, 「케인즈」乘數效果를 감안하여 租稅收入을 限界消費性向(c)의 가중치로 조정한 收支槪念이다. 이 收支는 構造的 歲出變化가 동일규모의 歲入變化보다 경제활동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수정된 構造的 財政收支(W)는 본고에서 추정된 것(D^*)보다 $(1-c)T^*$만큼 하향조정될 것이다. 이러한 財政收支 개념은 財政의 經濟的 效果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본고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았다.

8) 構造的 財政收支의 問題點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Blinder and Solow(1974) 참조.

V. 要約 및 結論

본고에서는 構造的 財政收支分析을 통하여 1972년 이후의 中央政府 財政規模의 변화 및 財政의 景氣調節的 機能을 巨視經濟的 側面에서 評價하고 向後의 政策方向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1972~90년 사이의 構造的 收支의 推定에 의해 도출된 결과 및 정책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構造的 財政收支의 時系列 變動을 살펴볼 경우, 1970년대 중반까지는 經濟開發支援을 위한 擴張的 財政運用으로 인해 構造的 財政收支는 계속 赤字를 보여 왔으나, 1970년대 후반 이후의 財政赤字 縮小努力으로 인해 1980년대에는 實際財政收支의 赤字에도 불구하고 構造的으로는 黑字基調로 반전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8년 이후 빠른 中央政府 歲出規模의 증대로 인하여 構造的 財政收支는 다시 赤字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경제가 潛在GNP의 趨勢로 안정될 경우, 1970년대와 같은 財政赤字 문제가 대두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財政의 景氣調節的 役割을 평가해 볼 경우, 歲入의 自動調節的 變化分은 景氣變動에 의해 발생되는 名目GNP갭의 15~18%를 흡수함으로써 총수요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構造的 財政基調의 變化는 198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景氣同行的 趨勢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財政部門의 景氣調節的 역할수행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989년 이후 경기활황 하에서도 構造的 財政收支의 赤字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財政이 需要安定에 기여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中央政府 一般會計의 경우 稅收超過分을 활용한 큰 규모의 追更編成은 財政運用이 필연적으로 景氣同行的 趨勢를 갖게 되는 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向後의 豫算編成時에는 이러한 과다한 追更編成의 관행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黑字基調 및 歲計剩餘金의 累積은 1986년 이후의 경기활황에 따른 短期的 效果가 主因이며 構造的으로는 赤字財政基調가 深化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財政의 福祉 및 公共投資機能의 정상화는 歲出豫算의 확대압력을 가중시키게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재정적자의 문제가 심각히 대두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中·長期的으로 均衡豫算基調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財政支出의 우선순위조정 및 효율화 추진 등으로 불필요한 財政規模擴大 壓力을 완화하는 동시에 租稅負擔率의 提高, 受益者負擔制度 확대 등의 財政財源確保를 위한 노력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향후의 財政運用方向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中·長期的 지침으로서의 福祉財政機能의 강화 및 成長潛在力의 培養과, 短期的 지침으로서의 財政의 物價安定 및 完全雇傭維持의 景氣調節的 機能을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즉 中·長期的으로는 균형예산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保健, 社會保障, 住宅 등의 福祉財政支出과 社會間接資本擴充을 위한 公共投資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편, 短期的으로는 이러한 基調를 유지하면서 경기조절을 위한 財政의 彈力的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財政이 지니는 諸機能間의 상충을 最少化하여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盧基星 外, 『稅收推計 模型開發에 관한 硏究』, 韓國開發硏究院, 1990.

文亨杓, 「財政規模 및 構造의 效率化 方向」, 政策硏究資料 91-07, 韓國開發硏究院, 1991.

朴佑奎, 「潛在GNP 및 通貨에 의한 物價上昇壓力의 推定」, 『韓國開發硏究』, 第11卷 第2號, 1989.

_____, 「現景氣局面의 診斷과 政策對應」, 『KDI 分期別 經濟展望』, 1990 봄호.

朴泰圭·文亨杓, 「수츠指數와 租稅負擔의 累進性 測定에 대한 硏究」, 『財政論集』, 創刊號, 韓國財政學會, 1987.

韓國銀行, 「우리나라의 潛在的 GNP 推定」, 『調査統計月報』, 1989. 7.

_____, 「韓國經濟의 年間 巨視計量模型－BOKAM 90」, 『調査統計月報』, 1990 봄호.

韓國開發硏究院, 『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韓國財政40年史編纂委員會, 1991.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主要經濟指標』, 1990.

財務部, 『決算槪要』, 各年度.

_____, 『韓國의 財政統計』, 各年度.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各年度.
_____, 『韓國의 財政統計』, 各年度.
Blinder, A.S. and R.M. Solow, "Analytical Foundations of Fiscal Policy," *The Economics of Public Finance*,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4.
Cagan, P., "Changes in the Recession Behavior of Wholesale Prices in the 1920's and Post-World War II," *Explorations in Economic Research*, 2, 1975, pp.54~105.
de Leeuw, F., T.M. Holloway, D.G. Johnson, D.S. McClain, and C.A. Waite, "The High-Employment Budget: New Estimates, 1955-80," *Survey of Current Business*, Vol.60, November 1980, pp.13~43.
de Leeuw, F. and T.M. Holloway, "The High-Employment Budget: Revised Estimates and Automatic Inflation Effects," *Survey of Current Business*, Vol.62, April 1982, pp.21~33.
Dornbusch, R. and S. Fischer, *Macro-Economics*, McGraw-Hill, 1981.
Gordon, R., "The Demand for and Supply of Inflat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8, 1975, pp.807~836.
_____, "Postwar Macroeconomics: The Evolution of Events and Ideas," in M. Feldstein(ed.), *The American Economy in Transitio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1980.
Harcourt, G.C., P.H. Karmel, and R.H. Wallace, *Economic Ac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7.
Okun, A., "Potential GNP: Its Measurement and Significance," in *Proceedings of the Business and Economic Statistics Section*,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962, pp.98~104.
Pechman, J. (ed.), *Setting National Priorities: The 1984 Budget*,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4.
Pindyck, R. and D. Rubinfeld, *Econometric Models and Forecasts*, McGraw-Hill, New York, 1976.
Sachs, J., "The Changing Cyclical Behavior of Wages and Prices, 1890-1976," *American Economic Review*, 70, 1980, pp. 78~90.

〈附表 1〉 潛在GNP의 推定結果

(단위 : 10億원)

	實質GNP		디플레이터		名目GNP	
	y_t	y_t^*	P_t	P_t^*	Y_t	Y_t^*
1972	28,504.7	27,275.2	14.70		4,191.2	
1973	32,273.8	30,145.5	16.66	16.28	5,376.3	4,907.7
1974	34,903.6	33,037.9	21.77	20.88	7,537.4	6,897.6
1975	37,143.3	36,021.9	27.29	26.52	10,135.8	9,551.4
1976	42,001.6	39,656.7	33.12	32.17	13,912.7	12,758.4
1977	46,135.4	43,486.3	38.60	37.68	17,806.6	16,386.9
1978	50,645.6	48,926.7	47.39	46.18	24,001.6	22,592.1
1979	54,289.5	54,986.1	56.74	56.08	30,801.8	30,834.3
1980	52,260.8	60,411.0	70.32	71.04	36,749.7	42,914.2
1981	55,354.3	65,074.8	82.25	84.28	45,528.1	54,842.2
1982	59,322.2	69,317.5	87.96	91.08	52,181.3	63,135.1
1983	66,803.0	73,658.4	92.39	94.51	61,722.3	69,611.0
1984	73,004.0	78,223.8	96.00	97.58	70,083.9	76,330.0
1985	78,088.4	84,061.5	100.00	101.75	78,088.4	85,529.1
1986	88,173.5	90,152.1	102.75	103.29	90,598.7	93,114.8
1987	99,611.6	97,963.5	106.44	105.93	106,024.4	103,773.8
1988	111,979.9	105,603.7	112.73	110.94	126,230.5	117,151.7
1989	119,576.7	114,540.0	118.58	117.18	141,794.4	134,218.9
1990	130,373.5	124,831.8	129.20	127.42	168,437.8	159,058.0

〈附表 2〉 構造的 租稅收入의 推移

(단위 : 10億원)

	實稅收 (T_t)	構造的稅收 (T_t^*)	(T_t-T_t^*)	
			金 額	%
1972	482.1			
1973	586.3	531.7	54.6	9.3
1974	923.9	832.9	91.0	9.8
1975	1,406.2	1,319.5	86.7	6.2
1976	2,116.6	1,928.9	187.7	8.9
1977	2,656.9	2,430.5	226.4	8.5
1978	3,702.1	3,469.7	232.4	6.3
1979	4,837.4	4,842.9	-5.5	-0.1
1980	5,896.8	6.954.2	-1,057.4	-17.9
1981	7,364.4	8,975.0	-1,610.5	-21.9
1982	8,529.9	10,443.7	-1,913.8	-22.4
1983	10,207.4	11,602.0	-1,394.6	-13.7
1984	11,077.3	12,132.6	-1,055.3	-9.5
1985	12,105.1	13,338.1	-1,233.0	-10.2
1986	13,882.2	14,294.3	-412.1	-3.0
1987	16,689.7	16,310.9	378.8	2.3
1988	20,389.4	18,822.0	1,567.4	7.7
1989	22,393.6	21,114.7	1,278.9	5.7
1990	28,362.6	26,674.3	1,688.3	6.0

地價와 巨視經濟變數間의 因果關係에 관한 實證分析

孫 在 英

土地問題의 심각성에 대한 社會的 合意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입으로 시정되어야 할 구체적인 政策目標가 무엇인가에 대한 檢討는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地價上昇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實證分析을 시도한 예도 찾아보기 힘들다. 본고는 地價上昇率과 일단의 巨視經濟變數 變化率 사이에 Granger 개념의 因果關係가 존재하는가를 검증하고 그 현실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地價上昇趨勢를 변화시킬 수 있는 巨視變數는 通貨量, 民間建設生産, 株價指數의 변화 등이며, 지가상승이 영향을 미치는 變數들은 物價指數, 實質生産 및 民間建設生産의 變化, 私債利子率로 나타났다. 여기서 포착된 경험적 증거들은 因果關係의 작동경로를 설명하는 이론과 결합되어 발전되어야 할 것이나 우리의 분석결과로부터도 몇가지 政策的 示唆點을 끌어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地價上昇을 巨視經濟現象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거시경제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土地租稅와 같은 微視的 政策手段이 지가안정 등의 政策目標를 달성하는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地價上昇이 物價上昇을 가속화한다는 것도 중요한 점인데 通貨緊縮과 같은 정책수단이 物價와 地價를 모두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은 다행한 일이다. 또한, 建設生産額 변화와 地價上昇간의 관계는 적극적인 開發投資가 장기적인 地價安定에도 도움을 준다는 쪽이므로 社會間接資本의 擴充, 民間建設의 擴大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I. 序 論

土地問題가 심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原論的인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나, 土地問題란 단어는 民主化니 經濟正義니 하는 용어와 마찬가지로 매우 추상적인 것이어서 土地를 둘러싼 어떤 현상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 政府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土地公槪念 硏究委員會가 우리나라의 토지소유분포 실태를 조사 발표한 이후, 토지소유의 편중 때문에 (또, 租稅의 資本利得 還收機能이 미약한 여

筆者 : 本院 硏究委員

* 본고의 작성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沈相達, 全聖寅, 柳潤河 박사께 감사드리며 實證分析作業을 맡았던 安弘基 硏究員과 원고정리에 수고하신 徐京姬 硏究助員께도 謝意를 표한다.

건하에서는) 地價上昇이 所得 및 富의 分配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다. 만약, 토지문제의 내용이 分配問題에 국한된다면 이론적인 수준에서의 대책은 간단한 것이다. 즉, 토지에서 발생하는 資本利得을 국민적으로 합의되는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稅制를 정비, 강화하면 될 것이다. 이때 주된 政策手段이 될 讓渡所得稅와 같은 稅金이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것이 우려된다면, 문제의 내용에 따른 적절한 보완조치를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1]. 이때 중요한 점은 政府가 價格統制, 去來制限, 利用促進 등을 위한 조치를 동원하여 土地市場의 기능을 제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土地問題의 내용으로 보다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政府의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주장도 흔히 볼 수 있다. 혹자는 土地投機가 가져오는 사회적, 심리적 해악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地價上昇이 住宅價格 및 賃貸料를 上昇시키는 것을 우려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地價上昇이 企業의 原價上昇壓力으로 작용하여 인플레이션, 輸出競爭力 弱化, 經濟恐慌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을 논의하는 한편, 대기업의 탐욕으로 인해 金融資源이 투기재원으로 유출되며 이는 이자율의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위축을 초래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기도 한다[2]. 이런 주장들은 地價上昇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개진이지만 물론 地價가 왜 上昇하는가에 대해서도 많은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

土地問題, 土地政策에 대한 論議들은 결국 地價上昇의 原因과 結果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전개된다. 地價上昇의 원인과 결과 중의 어떤 측면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며, 이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그 핵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이 지가상승의 원인이며, 무엇이 지가상승의 결과인지를 가려내는 작업이 토지정책의 수립에 선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간의 土地政策은 地價上昇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보다는 정책담당자나 여론의 주관적 믿음에 기초하여 수립되고 집행되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地價上昇을 억제한다거나 투기를 억제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 중의 일부는 문제의 핵심에 대한 정밀한 외과수술과 같은 성격을 지닌 것이라기보다 목표물의 근방에 지향사격을 하는 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 성공하고 때로 실패하는 가운데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3].

이 글은 우리나라의 地價上昇이 어떠한 인과관계의 맥락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를 가려내려는 시도로서, 토지문제에 관한 여러 논의에서 보여지는 地價上昇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다양한 주관적인 믿음들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검증하여 과연 그러한 믿음들이 정책

1) 예를 들어, 讓渡所得稅의 重課稅로 기존 土地所有者들이 매각을 꺼린다면 이에 따른 供給不足이 오히려 地價上昇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讓渡所得稅의 稅率을 다소 낮추고 保有課稅를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讓渡所得稅의 공급동결효과에 대해서는 金明淑(1989) 참조.

2) 土地問題에 관한 거의 모든 논의들이 이러한 주장들을 적어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되나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는 예로서 黃明燦(1985), Lee(1990) 참조.

3) 投機抑制를 표방하는 政策들이 가진 문제점들은, 拙稿(1991) 참조.

수립의 근거로서 이용될 가치가 있는가를 밝히려 하고 있다. 즉, 通貨量, 物價指數, 實質生産, 建設活動, 利子率, 株價指數 등의 변화와 地價指數의 변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그 정책적 의미를 검토함으로써 향후의 토지정책이 보다 확실한 논리적·경험적 근거위에 수립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러나 地價上昇의 원인 또는 결과로서 고려되는 각 변수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 얼마만한 강도로 지가상승과 영향을 주고 받는가에 대한 보편타당한 법칙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논리적인 명제를 정립하고 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며 경험적 자료에 부합하도록 이론을 세련시켜가는 순환과정이 반복되어야 할 것인데[4], 이 연구는 그런 작업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자료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因果關係의 개연성을 검토하여 土地問題의 論議에서 거론되는 여러 가능성의 범위를 좁히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理論定立의 努力이 집중되어야 할 과제를 도출하려는 것이다. 다만, 경험적 分析過程에 포착되는 因果關係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 경로에 관한 說明을 시도할 것이다.

第II章에서는 방법론을 설명하고 그 한계를 논의한 후 실증분석에서 사용되는 변수들을 소개하며, III章에서는 각 변수와 지가상승간의 인과관계 검증결과를 검토한다. IV章은 결론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政策方向을 요약하고 向後의 심층연구가 필요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II. 方法論 및 資料

1. Granger Causality

어떤 사건이나 자료들간의 因果關係는 哲學的·科學的 탐구의 핵심을 이루는 영역이지만 누구에게나 합당하게 여겨지는 인과관계의 정의는 아직도 정립되어 있지 않은데, 보편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조작가능한 인과관계의 檢證方法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因果關係의 검증을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라 함은 이러이러한 의미라는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고 이 정의가 함의하는 통계적인 의미를 찾아내어 이를 검증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인과관계의 개념은 經濟學者들이 흔히 쓰는 Granger Causality의 개념이다[5]. 이는 쉽게 표현하면 어떤 변수 Y를 다른 변수 X를 제외한 모든 정보로써 예측을 하는 경우보다 추가적으로 변수 X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때 예측력이 향상되는 경우, X가 Y의 원인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4) 本文에서 '세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理論의 복잡성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세련된 단순화(sophisticatedly simple)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Zellner(1988)는 자료와 경험의 축적, 이론의 개발, 통계적 검증이 상호보완관계를 맺으며 因果關係의 法則을 정립해 가는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다.

5) Granger의 因果關係概念을 實證分析에 적용한 최근 문헌의 예로는 國民所得과 政府支出間의 관계(Ahsan, Kwan and Sahni(1989), Singh and Sahni(1984)), 國防費와 經濟成長間의 관계(LaCivita and Frederiksen, 1991), 通貨, 利子率 및 價格水準 사이의 관계(Yang, 1990), 經常收支와 資本收支의 관계(Faroque and Veloce, 1990) 등이 있다.

다[6]. 이 정의에서 출발하여 수학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갖는 인과관계의 검증방법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실제 적용상 통계학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하다[7].

본 연구는 각 변수의 증가율에 대해 일반적으로 Granger의 제안으로 지칭되는 검증방법을 적용하였다. 즉, Y를 地價指數라 하고 X를 그 원인 또는 결과로 생각되는 다른 변수라 할 때 다음과 같은 두 식을 추정하여 계수값에 대해 검증을 하는 것이다.

$$G(Y_t) = b_o + \sum_{j=1}^{k} a_j\ G(X_{t-j}) + \sum_{j=1}^{l} b_j\ G(Y_{t-j}) + U_t \cdots\cdots\cdots (1)$$

$$G(X_t) = c_o + \sum_{j=1}^{m} c_j\ G(X_{t-j}) + \sum_{j=1}^{n} d_j\ G(Y_{t-j}) + V_t \cdots\cdots\cdots (2)$$

(여기서, $G(X_t) = X_t/X_{t-1} - 1$: X의 t期 變動率, $G(Y_t) = Y_t/Y_{t-1} - 1$: Y의 t期 變動率이며, U_t, V_t는 상호간에 또 시계열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잔차항임. 이후의 論議에서는 보다 간략하게 地價上昇率을 y로 地價變動과의 관계가 검토되는 다른 변수(通貨量, 物價指數 등)의 增加率을 x로 표기함).

만약 (1)식에서 모든 a_j값이 0라는 가설이 기각되지 않으면 x가 y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2)식에서 모든 d_j값이 0라는 가설이 기각되지 않으면 y가 x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설이 모두 기각되지 않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 x, y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feedback)고 결론을 내린다.

因果關係를 위와 같이 정의하고 실증분석을 행한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Granger Causality의 의미로 변수 x가 y의 원인이라고 판정되더라도 이는 x가 y와 어떤 일정한 관계를 가지며 선행하므로 y의 예측에 있어 x의 자료가 도움이 된다는 의미일 뿐이며, x가 y의 충분조건이라거나 x를 조작함으로써 y에 관련된 일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거나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의 검증결과 어떤 인과관계가 포착되더라도 구체적인 인과관계의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서는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그 반면, Granger Causality의 의미에서 인과관계가 포착되지 않으며 또 설득력 있는 이론적 관계도 찾기 힘들 때, x가 y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작다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을 것이다.

2. 檢證方法

가. 資 料

建設部에서 발표되는 地價指數는 1974년 10

---

6) 이러한 정의는 Zellner의 前揭論文의 관점에서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X의 資料로서 Y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양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측은 인과관계의 법칙성에 의한 안정적인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Granger Causality의 개념에 입각한 검증결과가 새로운 자료나 경험 또는 理論的 發展이 결합되면서 經濟的 因果法則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유용하리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7) Granger(1980)는 n期에 알려진 모든 情報의 집합을 Ωn으로, 그 중에서 X의 시계열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것을 Ωn-Xn으로 定義하고 어떤 집합 A에 대해 $\mathrm{Prob}(Y_{n+1} \epsilon\ A \mid \Omega_n) \neq \mathrm{Prob}(Y_{n+1} \epsilon\ A \mid \Omega_n - X_n)$일 때 X_n이 Y_{n+1}의 원인이 된다는 일반정의에서 출발하여 실제 조작 가능한 다양한 因果關係의 定義를 도출하고 있다. 또, 선형연립방정식체계를 예로 들어 수학적으로 동일한 통계적 검증방법을 일곱가지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그 중 한 方法은 Sims(1972)의 제안과 같은 것이다.

월을 100으로 한 것으로 1987년 이후에는 분기별 자료가 발표되고 있으나, 그 이전에는 연도별(10월부터 다음해 10월) 또는 반기별(10월~다음해 3월, 4월~9월) 자료만이 발표되었다. 年度別 자료를 쓰기에는 시계열의 길이가 너무 짧고, 전기간에 걸쳐 분기별 자료를 구성하기도 어려웠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연도의 10월과 4월을 기준으로 한 반기별 자료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때,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기간과 4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사이의 地價變動에서 특별한 패턴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연도 자료밖에 없는 경우에는 연간 地價指數變動幅이 균일하다는 가정하에 반기자료를 산출하였다. 全國地價指數가 우리나라의 지가상승 추세를 올바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수산정 과정에서의 가중치가 적정한가의 문제, 標本의 대표성 및 가격조사의 정확성 문제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일한 정부공식통계로서 이를 받아들였다[8].

通貨量(M1, M2), 實質生産(GNP, GDP), 物價指數(CPI, WPI, 輸出物價指數 즉, EPI), 私債市場利子率(RUM), 株價指數(SPI), 建設業 實質生産額(總生産額(CON), 民間建設(PC), 政府建設(GC)) 등의 자료는 특별한 설명을 요하지 않을 것인데 이자율을 제외하고는 지가상승률 자료의 기간, 즉 10월부터 다음해 3월, 4월부터 9월에 해당되는 기간중의 증가율을 계산하여 검증에 이용하였다. GNP, GDP, 建設生産額 등의 資料는 계절성을 교정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첫째로, 3~9월, 10~4월 사이에 특별한 계절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힘들고, 둘째로 각 검증식에 계절성을 포착하기 위한 더미變數를 넣었다는 이유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계절성을 교정하는 기법이 과거, 현재, 미래의 자료를 모두 이용하는 것이므로 엄밀한 시점의 구분을 요하는 因果關係檢證의 기법과 상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모든 자료를 지수화한 것은 <附表 1>에, 실제 검증에 이용된 증가율의 자료는 <附表 2>에 수록되어 있다.

檢證過程에서 각 變數의 수준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增加率을 이용한 이유는 시계열자료가 내포할 가능성이 있는 統計的 問題들, 예컨대 잔차항간의 시계열상관 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增加率을 이용한 推定式 및 檢證結果의 의미는 "變數 X가 地價上昇을 유발한다"라기보다는 "變數 X의 增加가 地價上昇率의 增加를 유발한다" 또는 "變數 X의 增加가 地價上昇을 가속화한다"는 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 檢證過程

(1)식과 (2)식이 인과관계의 검증식이지만 각식에 10월부터 다음해 3월의 기간을 표시하는 더미변수를 추가하였다. 이는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계절성의 효과를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각 변수의 lag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흔히 $k=l=$

8) 다만, 1980년의 地價上昇率이 이후 연도의 발표자료와 다른 점과 1986년 4/4분기의 地價上昇率이 발표되지 않은 문제는 각각 1980년 발표자료를 사용하고, 1986년 3/4분기와 1987년 1/4분기의 평균치를 써서 공식발표지수를 수정하였다. 建設部 地價指數 외에도 1963년부터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地價上昇率 資料가 있지만 資料의 신뢰성이나, 建設部資料와의 일관성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m=n$이라는 자의적인 가정하에 임의로 그 길이를 정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두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하나는 $k=l$, $m=n(<=4)$이라는 가정하에 각 lag의 최적 길이를 Schwartz의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다[9](이를 lag결정방법 I로 표시한다). 다른 방법은 Hsiao(1981)의 방법과 유사한 것으로 우선 종속변수를 자신의 lag에만 회귀분석할 때의 최적 lag길이를 Schwartz 기준에 의해 정하여 고정시키고, 이후에 다른 변수를 포함시켜 그 lag길이를 정하는 방법이다(이를 lag 결정방법II로 표시한다). 원래 Hsiao는 최적 lag결정기준으로 Akaike 기준을 썼는데 본고에서 Hsiao와 달리 Schwartz 기준을 사용한 이유는 우리 자료의 시계열이 짧아서 될 수 있는 대로 작은 lag를 선택하고 싶었던 때문이다. lag가 길어질수록 추정에 이용되는 자료의 수가 줄어드는 반면 추정되는 계수의 수가 많아져서 자유도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이는 추정의 效率性(efficiency)을 떨어뜨리며 검증통계량의 기각영역을 좁히기 때문에 잘못된 검증결과를 얻을 가능성(즉, 假說을 잘못 채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Hsiao의 방법이 과연 Granger 인과관계의 취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因果關係槪念은 어떤 變數 Y의 모든 과거자료 및 餘他情報를 사용하여 그 미래값을 예측하는 것보다 추가로 變數 X를 이용할 때 예측력이 向上되는가를 문제삼고 있는데 Hsiao의 方法은 인위적으로 Y 자신의 lag를 줄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本稿에서는 이런 비판을 염두에 두고 두가지 lag결정방법의 결과를 모두 보고하였다.

각 식에서 사용될 lag의 길이가 결정되면 OLS로 (1), (2) 식을 따로 추정하였으며 원인으로 설정된 변수의 계수값이 모두 0라는 가설을 F-test로 검증하였다. 두 식을 따로 추정하고 계수를 검증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각 식의 잔차항이 상호간의 상관관계나 자체적인 계열상관이 없다는 가정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두 식의 추정오차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두 식의 잔차항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두 推定式을 연립방정식으로 구성하여 推定 및 檢證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우리가 이용하는 짧은 시계열에 복잡한 계량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꺼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잔차항간에 상관관계가 있을지라도 양식의 우항변수들이 동일하다면(즉 $k=m$, $l=n$), 각 식의 OLS추정결과는 연립방정식의 SURE 推定結果와 동일하다. 각 식의 추정오차가 보이고 있는 계열상관의 문제는 Durbin-Watson통계량이나 Box-Ljung Q-통계량[10]을 검토하여 검증결

9) Schwartz의 기준 또는 Akaike의 기준(Akaike Information Criterion) 등은 lag의 수를 늘려가는 데 대해 일정한 penalty를 줌으로써 설명되지 않는 오차가 줄어드는 효과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즉, 추정오차의 자승합을 RSS, k를 우항변수의 수, T를 자료의 수로 할 때 Schwartz 기준은 $log(RSS)+(k\ log\ T)/T$를, Akaike 기준은 $log(RSS)+(2k)/T$를 극소화하는 lag를 택하는 것인데, Schwartz 기준이 lag 수가 증가하는 데 대해 보다 큰 penalty를 부과하므로 Akaike 기준과 같거나 더 짧은 lag를 선택하게 된다(VAR Econometrics, 1988). 이렇게 일정기준에 맞추어 lag를 정하는 방법은 기계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많은 경우에 이와 다른 lag構造를 가진 推定式을 추가적으로 재검증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robust) 결론을 얻고자 하였다.

10) Box-Ljung Q-통계량은 추정식의 잔차항에 계열상관이 없다는 가설하에 χ^2-분포를 한다. 이

과의 신뢰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잔차항의 계열상관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본 연구의 추정에서 사용된 변수가 1차 차분(difference)을 거친 증가율 변수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III. 檢證結果 및 解析[11]

1. 地價와 通貨量의 變化

通貨量의 指標로 M1을 채택하든 M2를 채택하든간에 통화량의 增加가 地價上昇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으나 역의 관계는 기각되었다. 이렇게 통화량의 증가가 지가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의 지가상승이 국제수지 흑자 및 양대 선거에 기인한 유동성 과잉현상의 뒤를 이어 발생하였다는 경험에서도 쉽게 수긍할 수 있으며, 臺灣과 日本에서도 유동성의 과잉이 지난 몇년간의 지가상승을 유발하였다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것과도 일치한다[12].

이러한 경험적 자료는 쉽게 이론적 명제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즉, 토지가 중요한 자산의 형태이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자산의 크기와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토지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착안하여 가계가 實質資産 W를 株式과 債券(V), 貨幣(M), 土地(L)로 보유한다고 하자. 物價水準을 p, 土地價格을 p'이라 하면 實質資産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W=(V+M+p'L)/p$$

實質資産 각 요소에 대한 需要가 名目利子率(r), 物價上昇率의 期待値(π), 總生産(Y), 總實質資産(W)의 函數라 보고 實質貨幣의 需要式을 $m(,,,)$, 실질토지의 수요식을 $l(,,,)$으로 표시하면 Walras 법칙에 따라 자산시장의 균형은 다음의 두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M/p=m(r,\pi,Y,W)$$
$$p'L/p=l(r,\pi,Y,W)$$

이 식들을 일반적인 거시경제 모형에 포함시켜 거시경제 각 변수들과 지가수준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나, 가장 간단한 예로 통화량이 이자율과 총생산 그리고 物價上昇率의 기대치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실질자산의 증가가 주식 및 채권으로만 흡수되는 경제에서 다른 조건은 모두 같고 통화량만 변화한다고 가정하면, 통화량의 한 단위 증가는 물가수준을 (p/M)만큼, 名目土地資産($p'L$)을 $(p'L/M)$만큼 증가시키게 되는데, 토지(L)가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通貨量의 增加는 地價를 上昇시킨다. 이는 通貨量

통계량은 특정 對立假說에 대한 검증력(power)은 낮지만 2계 이상의 계열상관을 포착하는 데 유효한 지표로 활용된다.

11) 모든 因果關係의 검증결과는 〈附表 3〉에 종합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본문에서 변수 X의 增加가 "地價上昇의 원인이 된다"라는 명제는 엄밀히 말할 때 "地價上昇을 가속화한다"라는 의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12) 日本과 臺灣의 예는 Matsunaga(1991), Hsueh(1991) 참조. 그러나 이들 論文은 自國의 狀況에 대한 개략적인 說明이며 實證分析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다. M1, M2 외의 다른 통화지표를 분석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인데 本源通貨의 경우 M1과 유사한 결과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增加할 때 物價가 上昇하며 經濟主體들은 과소한 實質 土地資產을 보유하게 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土地를 買入하고자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즉, 經濟의 각 구성원이 한정된 量의 土地를 買入하고자 경쟁함에 따라 土地의 價格이 上昇하게 되며 이에 따라 國民經濟 전체로는 같은 量의 土地를 더 높은 價格에 보유하는 결과가 빚어지는 것이다.

위의 논의는 강한 가정하에서의 간단한 예시이며 地價上昇率의 변화보다는 地價水準의 變化에 관한 논의로서 우리의 推定式과 정확히 일치하는 說明이 아니지만 地價의 변동이 巨視經濟的 要因에 의해 유발될 수 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巨視經濟的 不安要因이 土地市場에 반영되어 地價가 上昇하는 것이라면 微視經濟的 地價安定政策, 예를 들어 租稅나 去來規制 등은 실패하기 쉽다. 실제로 최근 2~3년간의 예외적으로 빠른 지가상승은 國際收支의 黑字와 選擧에 기인한 通貨量 또는 流通速度의 增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온갖 투기억제정책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通貨量의 增加→地價上昇의 식에서 M1 增加率의 계수값은 0.17이며 M2증가율의 계수값은 0.35이다. 이는 원론적으로 M1이 (또는 M2가) 1% 증가할 때 地價上昇率이 6개월의 시차를 두고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를 실제상황에서 예측의 근거로 사용하는 데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 식에서 사용된 lag의 길이가 資料의 제약하에 특정한 기준에 의해 설정된 것이므로 보다 긴 시계열자료가 보완될 경우 많은 lag가 사용되어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13], 같은 상황에서는 식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들을 실험해 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2. 地價와 物價의 變化

都賣物價指數, 消費者物價指數의 변화는 지가상승률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은 3기(WPI) 내지 4기(CPI) (즉, 1년 반 내지 2

〈表 1〉 通貨量變化 → 地價上昇 關係의 推定結果

M1(Ⅰ, Ⅱ) :[14]	$y = -.00533 + .00941\ Dum + .703y_{-1} + .165x_{-1} + e$
	(.0150) (.0139) (.117) (.0639)
	$\bar{R}^2 = .595,\ D\text{-}W = 1.954,\ Q(15) = 5.724$
M2(Ⅰ, Ⅱ) :	$y = -.0124 + .0126\ Dum + .640y_{-1} + .346x_{-1} + e$
	(.0197) (.0142) (.128) (.166)
	$\bar{R}^2 = .608,\ D\text{-}W = 1.796,\ Q(15) = 7.516$

13) 참고로, 通貨量變化의 2期以上 lag가 가진 追加的인 설명력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4)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y는 항상 地價上昇率을 나타내며, 모든 추정결과의 보고에서 x로 표기된 변수 뒤에 lag결정방법을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M1(Ⅰ, Ⅱ)는 x가 M1의 增加率이며 lag 決定方法 Ⅰ, Ⅱ가 동일한 lag수를 주는 推定式의 추정결과임을 표시한다. 추정결과식에서 e는 설명되지 않는 오차를 나타내며, 추정된 계수값 밑에 standard error를 괄호 속에 보고하였다.

년)의 시차를 두고 큰 正의 효과를 가지며, 그보다 짧은 시차에서는 영향이 작거나 負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의 추가적 地價上昇은 4期의 lag를 두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0.37~0.51% 증가시키는 반면 도매물가지수 상승률을 3期의 lag를 두고 0.64~0.68% 증가시킨다.

그러나 地價上昇이 物價上昇을 가속화한다는 명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검증식에는 통화량과 같이 지가와 물가에 동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변수가 빠져 있으므로 이런 변수의 영향이 地價上昇→物價上昇이라는 관계로 포착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대개의 검증식이 긴 lag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유도의 부족문제가 개재되었을 수도 있다.

첫번째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消費者物價指數의 변동률을 좌항변수로 하는 식에 1기 또는 2기 lag를 가진 M2의 변동률을 추가하여 다시 추정 및 검증을 행하였는데, 그 결과에서도 4기의 lag를 가진 地價變動率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동에 강한 正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왔다. 또, 通貨量의 변화율을 추가하든 아니하든간에 우항변수의 수를 줄여 추정해 본 결과에서도 4기의 lag를 가진 地價變動率이 消費者物價指數의 변동에 영향을 준다는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통해 地價變動이 物價上昇率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

〈表 2〉 地價上昇 → 物價指數變化 關係의 推定結果

CPI(I) :

$$x = -.0161 + .00958\ Dum + .179y_{-1} - .176y_{-2} - .0163y_{-3}$$
(.00994) (.00884) (.0996) (.122) (.135)

$$+ .505y_{-4} + .0887x_{-1} + .404x_{-2} + .144x_{-3} - .282x_{-4} + e$$
(.139) (.178) (.162) (.137) (.116)

$\bar{R}^2 = .773$, $D\text{-}W = 1.826$, $Q(14) = 13.155$

CPI(II) :

$$x = -.0160 + .0142\ Dum + .0860y_{-1} - .150y_{-2} + .117y_{-3}$$
(.0109) (.00981) (.111) (.141) (.150)

$$+ .373y_{-4} + .386\ x_{-1} + e$$
(.153) (.145)

$\bar{R}^2 = .692$, $D\text{-}W = 2.314$, $Q(14) = 11.952$

WPI(I) :

$$x = -.0310 + .024\ Dum - .0819y_{-1} - .175y_{-2} + .676y_{-3}$$
(.0152) (.0139) (.154) (.196) (.162)

$$+ .357x_{-1} + .246x_{-2} - .095x_{-3} + e$$
(.164) (.181) (.133)

$\bar{R}^2 = .690$, $D\text{-}W = 2.153$, $Q(14) = 15.491$

WPI(II) :

$$x = -.0323 + .0308\ Dum - .119y_{-1} - .119y_{-2} + .639y_{-3}$$
(.0142) (.0126) (.150) (.191) (.159)

$$+ .484x_{-1} + e$$
(.115)

$\bar{R}^2 = .692$, $D\text{-}W = 2.390$, $Q(14) = 17.084$

〈表 3〉 地價上昇 → 輸出物價指數變化 關係의 推定結果

EPI(I) : $x = -.00905 + .0153\ Dum + .295y_{-1} - .126y_{-2} + .884x_{-1} - .443x_{-2} + e$
(.00934) (.00856) (.109) (.115) (.173) (.161)

$\bar{R}^2 = .643,\ D\text{-}W = 1.840,\ Q(15) = 8.740$

EPI(II) : $x = -.00765 + .0135\ Dum + .299y_{-1} - .192y_{-2} + .634x_{-1} + e$
(.0105) (.00958) (.123) (.126) (.165)

$\bar{R}^2 = .550,\ D\text{-}W = 1.431,\ Q(15) = 10.071$

이 강하게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다[15].

地價上昇이 物價上昇을 가속화하는 경로는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地價上昇이 建物賃貸料 등을 上昇시킴으로써 個人서비스料金 등 賃貸料에 민감한 部門의 價格上昇을 유도한다거나, 企業의 원가계산에서 生産에 투입되는 土地의 機會費用이 높아진다거나 하는 供給側面의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로, 地價上昇이 消費者나 企業의 實質資産增加를 가져오고 이 때문에 消費와 投資가 增加하여(wealth effect) 경제가 과열될 수도 있다. 또 3~4期의 시차를 두고 이러한 效果가 가시화되는 이유를 賃貸契約의 갱신에 일정기간이 필요한 현실적 제약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론적 설명은 왜 地價上昇이 都賣物價에 반영되는 시차가 消費者物價에 반영되는 시차보다 짧으며, 또 그 영향력의 정도가 더 큰가, 그 시차가 각각 3期, 4期로 다소 긴가 하는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이 되지 못한다.

한편, 輸出物價指數의 변화도 地價上昇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推定式은 1%의 추가적 지가상승이 1기의 lag를 두고 輸出物價指數增加率을 0.3% 상승시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일단 지가상승에 의해 原價上昇이 일어나고 수출경쟁력의 하락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역시 추정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환율 등의 변수들이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한 연후에 확실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것과 반대되는 인과관계 방향에 대한 검증결과, 즉 物價上昇이 地價上昇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결과는 인플레이션이 있을 경우 자산의 실물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가가 상승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상반된다. 이 결과는 여러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土地로써 인플레이션의 피해를 줄이려는 행태(inflation hedging)가 실제로 존재한다 해도 장래 물가상승률의 기대형성이 과거 물가상승률 아닌 다른 자료에 의존하는 때문일 수도 있고[16], 土地를 買入하여 인플레이션

15) 다만 여기서 검토되지 않은 통계적 문제는 잔차항간의 계열상관 문제이다. $D\text{-}W$통계량은 뚜렷한 답을 주고 있지 못하지만 Box-Ljung Q-통계량은 계열상관이 없다는 가설이 잘못 기각될 확률(marginal confidence level)이 비교적 낮음(CPI의 경우 .51~.61, WPI의 경우 .25~.35)을 보여주고 있다.

16) 註 7에서와 같은 인과관계의 定義를 可能케 하는 핵심적인 公理 중의 하나는 "未來의 事件이 過去의 事件에 원인을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미래에 대한 기대가 과거 物價上昇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효과가 우리의 검증식에 포착될 가능성이 크다.

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정부의 규제, 資本市場의 不完全性 등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행해지지 못하는 때문일 수도 있다.

3. 地價와 實質生産의 變化

實質 國民總生産 및 國內總生産의 變化와 地價上昇率 사이의 인과관계는 양방향 모두 기각되었다. 實質生産의 변화→地價上昇의 관계가 기각된 결과는 다소 의외로 여겨진다. 實質生産의 增加는 生産要素의 增加 및 生産性의 增加에 의한 것이며, 資本의 축적이 그간 가장 두드러진 성장요인이었음을 감안하면 이에 의해 토지생산성 및 價格도 증가해 왔을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역의 관계, 즉 地價上昇→實質生産變化의 관계도 역시 기각되었지만 地價上昇率의 3期 lag계수가 유의함에 주목하여 추가적으로 1,2期 lag를 제외하여 다시 추정해 본 결과에서는 비교적 좁은 기각역에서 地價上昇이 實質生産增加率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表 4 참조).

즉, 우리의 推定結果는 地價上昇率의 1% 增加가 3期의 시차를 두고 GNP成長率을 0.17%, GDP成長率을 0.14% 減少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地價上昇이 실질생산을 감소시킨다는 데 대해서는 지가상승이 있을 경우 기업자금이 토지시장으로 몰리고 투자를 소홀히 하게 된다거나, 지가상승으로 工場建設, 社會間接資本建設 등이 위축된다거나 하는 주장을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地價變動이 政府建設 生産額增加率을 변화시키지 못하므로 地價上昇→實質成長鈍化의 효과는 建設投資의 위축이라는 직접적 결과라기보다 시설비상승에 의한 투자효과의 감소 및 그에 따른 산업지원기능의 위축이라는 간접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地價와 私債市場 利子率의 變化

우리나라의 公金利는 政府에 의해 규제되고 있어 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며 지가변화와 공금리간에는 양방향의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私債市場 利子率을 사용할 경우 이자율이 地價上昇率變化에 영향을 받는 반면 그 역의 관계는 기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地價上昇率의 增加는 2기의 lag를 두고 私債利子率을 감소시키지만 1기 혹은 3기, 4기의 lag는 이를 증가시키는데, 전체적으로 陽의 계수값들이 陰의 계수값보다 크므로 지가상승

〈表 4〉 地價上昇 → 實質生産變化 關係의 推定結果

GNP: $x = .0180 + .0457\ Dum - .174y_{-3} - .100x_{-1} + .546x_{-2} + e$
(.00892) (.0117) (.0978) (.150) (.146)

$\bar{R}^2 = .882,\ D\text{-}W = 1.881,\ Q(14) = 12.579$

GDP: $x = .0200 + .0415\ Dum - .140y_{-3} - .148x_{-1} + .522x_{-2}$
(.0205) (.0271) (.0928) (.155) (.152)

$\bar{R}^2 = .889,\ D\text{-}W = 1.926,\ Q(14) = 11.474$

〈表 5〉 地價上昇 → 私債利子率 關係의 推定結果

RUM(I) :

$$x = \underset{(.0183)}{.00435} - \underset{(.00891)}{.638}\ Dum + \underset{(.108)}{.209}y_{-1} - \underset{(.148)}{.261}y_{-2} + \underset{(.175)}{.180}y_{-3} + \underset{(.178)}{.188}y_{-4}$$

$$+ \underset{(.219)}{1.053}x_{-1} - \underset{(.290)}{.536}x_{-2} + \underset{(.287)}{.568}x_{-3} - \underset{(.200)}{.206}x_{-4} + e$$

$$\bar{R}^2 = .945,\ D\text{-}W = 1.540,\ Q(14) = 10.233$$

RUM(II) :

$$x = -\underset{(.0183)}{.000255} - \underset{(.00891)}{.00798}\ Dum + \underset{(.108)}{.208}y_{-1} - \underset{(.147)}{.283}y_{-2} + \underset{(.119)}{.313}y_{-3}$$

$$+ \underset{(.175)}{1.175}x_{-1} - \underset{(.242)}{.666}x_{-2} + \underset{(.230)}{.743}x_{-3} - \underset{(.166)}{.327}x_{-4} + e$$

$$\bar{R}^2 = .945,\ D\text{-}W = 1.847,\ Q(14) = 6.631$$

이 사채이자율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lag를 줄여 검증할 경우에도 같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추정식의 정합성도 매우 높아서 地價上昇率의 변화와 사채이자율 간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두 변수 사이에서 地價上昇→利子率上昇이라는 관계만이 성립하고 그 역의 관계가 기각되므로 토지와 사채라는 두 자산 사이에 명백한 대체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가지 가능한 설명은,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地價上昇이 物價上昇率을 증가시키고 이 때문에 名目利子率이 오른다는 가설이다. 그러나, 地價上昇이 物價上昇率을 높이는 효과는 3期 내지 4期의 lag를 두고 나타나는 데 반해 사채이자율에 주는 영향은 1期부터 4期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이 假說이 충분한 설명이 되기 힘들다. 실제로, 地價上昇→物價上昇→利子率上昇의 관계를 보기 위해 우선 物價上昇率이 높아지면 利子率이 상승하는가를 검증하고, 物價上昇과 독립적으로 地價上昇이 利子率에 영향을 주는가를 추가적으로 검증해 보았으나 CPI나 WPI의 증가율이 이자율에 正의 영향을 준다는 증거를 찾기 힘들었으며, 物價上昇率을 포함시키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地價上昇→利子率上昇의 결과가 확인되었다.

여기서 대기업에 대한 일부의 비난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地價가 오를수록 제도권 금융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대기업이 토지투기에 주력하며 이에 따라 시중의 자금사정이 나빠지므로, 사채시장의 이자율이 오르고 이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경험적 검증이 필요한 다수의 명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결과가 이를 명확하게 뒷받침할 수는 없다. 예컨대, 과연 大企業들이 제도금융권의 여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들이 地價上昇이 클수록 여신을 많이 받는지, 또 이를 이용하여 土地를 매입하고 있는지, 이에 따라 사채시장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는지, 중소기업은 사채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지 등에 대해 위 주장에서와 같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든 것이다.

5. 地價와 建設活動의 變化

GNP計定上의 建設業 總生產額은 民間建設과 政府 및 公企業建設로 분류되며, 民間建設은 다시 건물건설, 건물수선, 其他建設로, 政府 및 公企業建設은 政府建設, 公企業建設로 분류된다. 민간 건물건설은 다시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건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 총실질생산액(CON), 실질민간건설(PC)과 실질정부건설(GC)의 항목에 대해 검증을 하였다. 우선 건설업 총생산액의 변화는 地價上昇率의 변동과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정부건설보다는 民間建設部門의 움직임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이다. 즉, 政府建設은 양방향 모두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 없었으나, 민간건설은 양방향 모두 인과관계가 없다는 가설이 기각되고 있다.

우선, 建設生產額變化→地價上昇의 방향을 보면 1기의 lag를 두고 總建設生產額과 民間建設의 변화가 대체로 지가상승에 正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활발한 건설활동이 토지이용도의 제고, 開發利益의 창출 등을 통해 地價上昇을 가속화시킴을 보여준다. 다만, 1년 이상의 긴 lag를 두고는 建設活動의 增加가 地價上昇率에 負의 영향을 가지므로 건설활동이 활발해진 결과 賃貸料, 住宅價格 등이 안정되고 이 여파가 土地市場에 미쳐서 地價上昇이 진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역의 관계, 즉 地價上昇→建設生產額 變化의 관계에서는 地價上昇率의 變化가 1기의 lag를 가지고 건설생산증가를 가속화한다. 이처럼 地價上昇이 건설활동의 변화에 正의 영향을 주는 것은 지가상승이 건설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영향이 있다는 일부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우리의 결과를 지가상승이 민간건설활동을 촉진시키는 충분조건이라고 해석할 경우 이는 매우 설명하기 힘든 현상이다. 그러나 地價와 建物價格의 동반상승이 나

〈表 6〉 建設生產의 變化 → 地價上昇 關係의 推定結果

CON(I): $y = .0542 - .0660\ Dum + .600y_{-1} + .205x_{-1} + e$
(.0220) (.0368) (.130) (.0823)

$\bar{R}^2 = .594,\ D\text{-}W = 1.835,\ Q(15) = 7.343$

CON(II): $y = .0355 - .0218\ Dum + .681y_{-1} + .269x_{-1} - .0289x_{-2} - .200x_{-3} + e$
(.0256) (.0475) (.170) (.0865) (.0942) (.0814)

$\bar{R}^2 = .646,\ D\text{-}W = 2.109,\ Q(14) = 7.705$

PC(I): $y = .0462 - .0467\ Dum + .626y_{-1} + .130x_{-1} + e$
(.0193) (.0287) (.124) (.0500)

$\bar{R}^2 = .601,\ D\text{-}W = 1.832,\ Q(15) = 7.900$

PC(II): $y = .0303 - .0134\ Dum + .698y_{-1} + .174x_{-1} - .0192x_{-2} - .125x_{-3} + e$
(.0205) (.0345) (.174) (.0563) (.0654) (.0539)

$\bar{R}^2 = .647,\ D\text{-}W = 2.023,\ Q(14) = 6.862$

〈表 7〉 地價上昇 → 建設生產變化 關係의 推定結果

CON(I):	$x = .0185 - .321\ Dum + .717y_{-1} - .162x_{-1} + e$
	(.0548) (.0916) (.323) (.205)
	$\bar{R}^2 = .827,\ D\text{-}W = 1.798,\ Q(15) = 16.181$
CON(II):	$x = .102 - .133\ Dum + .814y_{-1} + .0167x_{-1} + .121x_{-2} - .514x_{-3} + e$
	(.0607) (.113) (.404) (.205) (.224) (.193)
	$\bar{R}^2 = .856,\ D\text{-}W = 2.103,\ Q(14) = 4.400$
PC(I)[17]:	$x = .162 - .301\ Dum + .1.179y_{-1} - .328x_{-1} + e$
	(.0719) (.107) (.462) (.186)
	$\bar{R}^2 = .766,\ D\text{-}W = 1.738,\ Q(15) = 16.038$

타난다거나, 建設業體가 地價上昇期에 보유토지의 資本利得을 실현하는 등의 이유로 地價上昇이 建設業의 수익성에 正의 영향을 주고 있다면 地價上昇이 가속화됨에 따라 建設活動이 활발해질 수 있다. 물론, 다른 설명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추정식이 포착하고 있는 바가 地價上昇이 民間建設活動의 변화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며 선행하고 있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므로, 건설투자에 앞서 토지의 확보가 필요하고 토지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인해 지가상승이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지가상승이 있을 경우 그 결과로서 건설경기가 활발해진다는 것이라기보다, 실제 建設投資增加에 선행하여 土地의 需要가 增加하고 이에 따라 價格의 上昇이 촉진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名目生產額을 實質로 바꾸는 物價指數(여기서는 都賣物價指數 및 輸入物價指數)와 土地費를 포함하는 建設單價間의 괴리 때문에 地價上昇率의 上昇이 建設生產額增加를 가속화하는 것일 수 있다. 즉 지가상승의 결과로 일반 物價指數보다 建設單價가 급속히 상승하지만 民間建設活動이 물량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일정한 물량건설을 위한 投資費가 增加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政府建設이 地價上昇과 양방향 모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도 의미있는 결과이다. 地價上昇→政府建設의 변화관계가 기각된다는 것은 政府의 社會間接資本 投資決定이 물량기준으로 행해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社會間接資本 隘路現象의 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역의 관계, 즉 政府建設의 變化→地價上昇의 관계도 기각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개발사업이 비록 사업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지가상승을 가속화할지 모르나, 전국적인 지가상승 추세를 촉진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6. 地價와 株價指數의 變化

地價上昇과 株價指數의 변동간의 관계에 대

17) lag 決定方法 II는 PC(I)式에 x_{-2}를 첨가하고 있는데, y_{-1}이 유의하지 못하다는 가설이 15% 수준에서 기각되지 않으나 20% 수준에서는 기각된다.

〈表 8〉 株價指數의 變化 → 地價上昇 關係의 推定結果

$$\text{SPI(II)}^{18)}: \quad y = \underset{(.0162)}{.00524} + \underset{(.0152)}{.0317}\ Dum + \underset{(.151)}{.816}y_{-1} + \underset{(.0195)}{.00801}x_{-1} - \underset{(.0192)}{.0409}x_{-2} + e$$

$$\bar{R}^2 = .556,\ D\text{-}W = 1.909,\ Q(15) = 16.007$$

해서 여러가지 가설을 세워 볼 수 있다. 우선, 두 자산형태의 대체적 성격에 주목하여 株價가 오르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따라서 지가상승을 둔화시키며, 반대로 土地投資의 수익률이 높아지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어 株價가 떨어진다는 가설이 가능하다. 반면에, 通貨量과 같은 제3의 변수가 각각의 자산가격과 正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또는 어느 한 시장에서의 수익이 다른 시장으로 환류되어 갈 경우 土地와 株式의 價格變動은 같은 방향으로 관찰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볼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관계들이 현실경제에서 혼재하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의 검증결과에서 주가지수의 변화가 2기의 lag를 가지고 지가상승률에 負의 영향을 주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地價上昇이 株價指數의 변동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들은 두 資産形態間의 代替關係를 포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나 한 방향의 인과관계만으로서 代替關係를 확립하기에 무리가 있다. 또, 그 강도가 작고 시차가 다소 길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본다.

18) 〈附表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lag決定方法 I 은 x, y에 각각 1期의 lag를 주고 있으며 이때 x_{-1}의 계수가 0이라는 가설이 기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보듯이 y에 영향을 주는 것은 x_{-2}이므로 그 결과는 株價指數의 變化→地價上昇의 관계를 부정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IV. 結　　論

이 글은 地價上昇과 일단의 巨視經濟變數의 變化 사이에 Granger Causality의 개념으로서의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있는가를 검증하고 그 현실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다. 地價上昇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通貨量과 民間建設活動, 그리고 株價指數의 變化에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物價上昇에 대응한 土地資産의 需要增加나 經濟成長에 따른 '자연적인' 地價上昇 등의 개념에 기반을 둔 논의가 實證分析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면, 地價上昇이 物價上昇을 초래한다는 것, 특히 通貨量이 物價에 주는 영향과 독립적으로 그러한 영향력이 확인된다는 것도 중요한 결과이다. 이외에 地價上昇이 實質生産과 私債利子率에 영향을 준다는 데 대해서는 그 작동경로에 대한 설명이 힘드므로 檢證過程에 개재되어 있을지도 모를 統計的인 문제와 理論的 배경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결과는 몇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地價上昇率이 土地政策의 성패에 대한 중요한 指標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租稅나 각종 規制들과 같은 微視的 政策手段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巨視經濟의 不安要因 특히 유동성의 과다에 의해 地價上昇이 가속화된다면 微視的 유인과 제재의 효과가 地價動向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微視的 土地政策手段이 가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政策目標가 잘못 설정되어 있음을 뜻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地價上昇率이 높아지는가 또는 낮아지는가를 척도로 하여 租稅나 각종 규제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이들 政策手段을 평가하는 척도는 市場의 失敗를 교정하는 데나 資本利得을 還收하는 데 있어 그 기능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地價上昇이 物價上昇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 또한 巨視經濟現象으로서 地價上昇을 파악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행히 긴축적인 通貨管理와 같은 정책이 地價와 物價를 모두 安定시킬 것이므로 정책방향의 상충은 없다고 하겠다.

셋째로, 民間建設活動의 增加는 장기적으로 地價上昇을 鈍化시키며, 또 政府建設이 지가상승을 촉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거시적 안정정책 외에도 적극적인 開發投資가 地價安定에 도움을 주거나 최소한 地價上昇을 가속화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社會間接資本의 확충이나 民間建設의 활성화가 인근토지의 質을 향상시킴으로써 국지적으로 地價를 올리는 것이 필연적일지라도 그 전국적 파급효과를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金明淑, 「讓渡所得稅의 供給凍結效果와 改善方向」, 『韓國開發硏究』, 第11卷 第4號, 1989년 가을.

孫在英, 「土地制度改革의 豫想效果와 政策方向」, KDI 政策硏究資料 91-01, 1991. 1.

黃明燦, 「土地投機抑制政策의 根源的 接近」, 黃明燦(編), 『土地政策論』, 1985.

Ahsan, S., A. Kwan, and B. Sahni, "Causality between Government Consumption Expenditure and National Income: OECD Countries", *Public Finance*, Vol. 44, No.2, 1989, pp. 204~224.

Faroque, A. and W. Veloce, "Causality and the Structure of Canada's Balance of Payments: Evidence from Time Series", *Empirical Economics*, Vol. 15, 1990, pp. 267~283.

Granger, C.W.J., "Testing for Causality",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2, 1980, pp.329~352.

Hsiao, C., "Autoregressive Modeling and Money-Income Causality Detectio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7, 1981, pp. 85~106.

Hsueh, L.M., "Land Policy Problems in Taiwan", *Asia Club Papers No.2*, Tokyo Club Foundation for Global Studies, 1991. 5.

LaCivita, C. and P. Frederiksen, "Defense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An

Alternative Approach to the Causality Issu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35, 1991, pp. 117~126.

Lee, Jin-Soon, "System of Land Ownership and Use", 韓國開發硏究院－東西文化센터 共同主催,「韓國－日本－中國의 發展政策에 관한 國際 워크숍」발표논문, 1990. 5.

Matsunaga, Y., "Japan's Land Policy and Its Implications", *Asia Club Papers No.2,* Tokyo Club Foundation for Global Studies, 1991. 5.

Sims, C., "Money, Income and Caus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62, 1972, pp. 540~552.

Singh, B. and B. Sahni, "Causality between Public Expenditure and National Incom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LXVI, 1984, pp. 630~644.

VAR Econometrics, *RATS* 3.0 *Manual*, 1988.

Yang, Y.H., "Causality between Money, Interest Rates and Prices in Taiwan: A Multivariate Time-series Analysis", *Applied Economics,* Vol. 22, 1990, pp. 1739~1749.

Zellner, A., "Causality and Causal Law in Economics", *Journal of Econometrics,* 39, 1988, pp. 7~21.

〈附表 1〉 指數 1974.10＝100

	LPN	M1	M2	CPI	WPI	EPI	GNP	GDP	RUM	CON	PC	GC	SPI
1974.1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0.8	100.0	100.0	100.0	100.0
1975. 4	113.5	103.6	109.6	113.9	119.4	100.2	116.2	116.7	40.9	84.8	74.3	132.6	115.5
1975.10	127.0	121.2	126.1	130.3	126.5	103.8	105.7	106.6	41.9	107.5	102.1	130.1	135.0
1976. 4	143.9	137.2	141.5	136.0	135.0	111.7	128.4	129.3	39.3	88.1	78.9	124.4	150.9
1976.10	160.8	150.0	159.6	141.9	139.6	119.6	121.1	121.8	41.2	119.5	116.1	132.3	149.5
1977. 4	187.7	182.7	187.9	149.1	147.0	120.7	140.8	141.3	41.8	97.6	75.6	195.2	149.9
1977.10	214.7	226.0	229.1	156.2	152.7	124.2	131.7	132.9	38.0	156.9	143.5	209.2	169.7
1978. 4	267.3	247.4	266.8	167.8	163.3	134.4	160.7	161.5	36.2	151.8	132.4	236.6	549.7
1978.10	319.8	265.0	301.8	182.4	172.8	149.3	147.3	148.3	41.8	214.7	197.1	288.3	598.1
1979. 4	346.4	300.9	347.3	200.4	187.3	163.8	174.0	175.5	43.6	164.6	148.4	210.6	514.9
1979.10	373.0	340.1	381.3	214.6	214.1	166.6	159.2	160.7	41.4	214.0	190.7	316.8	492.0
1980. 4	401.4	361.6	435.8	253.9	269.3	171.2	174.2	177.2	46.7	176.8	163.6	215.7	428.3
1980.10	414.4	394.0	485.0	284.3	291.2	173.2	156.6	160.7	45.6	208.9	180.0	315.2	402.6
1981. 4	429.9	432.2	551.8	310.9	324.7	178.3	166.7	171.8	37.1	168.9	138.5	272.2	439.9
1981.10	445.5	371.2	604.9	337.1	341.7	176.2	163.0	169.1	34.5	186.7	158.9	281.8	504.7
1982. 4	453.5	445.4	689.8	342.3	345.9	172.2	182.3	188.7	34.0	174.0	147.6	265.2	479.5
1982.10	469.3	627.3	806.2	349.8	348.4	168.1	174.5	180.8	30.3	222.7	195.2	331.5	447.3
1983. 4	512.8	635.6	855.7	356.9	349.1	165.0	200.2	207.1	26.6	213.0	186.2	315.9	471.2
1983.10	556.2	710.5	932.0	358.1	346.3	165.5	198.6	204.2	27.1	277.7	258.8	354.7	444.7
1984. 4	592.9	746.9	976.1	366.3	350.2	168.9	225.1	231.0	24.7	243.5	219.9	342.3	501.4
1984.10	629.6	749.1	1,007.4	368.2	352.7	168.8	217.3	224.2	24.6	288.3	264.3	401.1	497.5
1985. 4	651.6	737.4	1,055.6	371.5	253.4	166.1	238.5	245.5	25.1	255.0	223.5	392.4	512.3
1985.10	673.7	778.9	1,165.9	380.5	354.8	163.0	232.8	240.3	23.9	299.4	258.8	465.9	527.6
1986. 4	699.3	807.0	1,245.7	384.3	347.7	162.5	258.5	265.9	23.2	266.4	220.2	461.1	775.3
1986.10	723.0	856.0	1,352.2	384.3	345.2	164.8	266.3	273.0	23.2	319.9	273.1	515.9	916.9
1987. 4	741.5	871.3	1,416.6	391.0	350.2	172.9	294.7	300.0	23.0	280.6	243.2	428.1	1387.4
1987.10	803.8	1,088.3	1,612.8	404.1	351.6	184.0	303.1	307.7	23.4	352.1	314.0	514.8	1917.1
1988. 4	898.9	965.2	1,688.1	421.0	356.9	196.5	332.4	337.3	22.7	320.4	275.3	519.8	2421.5
1988.10	1,022.7	1,171.8	1,912.9	428.8	358.7	208.6	334.4	337.1	23.1	392.6	351.8	582.3	2684.7
1989. 4	1,230.4	1,133.1	2,024.2	443.1	364.0	214.5	364.8	366.4	19.1	340.4	308.4	485.0	3609.4
1989.10	1,358.1	1,342.4	2,224.2	457.7	367.1	216.4	356.8	357.6	20.2	440.1	410.4	589.9	3435.9
1990. 4	1,512.1	1,508.0	2,478.6	479.8	373.5	216.6	396.6	396.4	18.0	445.9	415.0	591.7	2956.1
1990.10	1,629.3	1,670.6	2,737.2	500.4	391.2	218.3	391.6	392.2	18.5				2569.5

註：RUM(私債利子率)은 이자율 그대로를 추정에 이용하였음.
M1, M2는 末殘, GNP, GDP는 實質임.

資料：建設部, 『地價動向』, 各年度.
韓國銀行, 『조사통계월보』, 각호 및 『국민계정』, 각년도.
韓國銀行, 내부자료.

〈附表 2〉 增 加 率

	LPN	M1	M2	CPI	WPI	EPI	GNP	GDP	RUM[1)]	CON	PC	GC
1974.10									40.8	-15.2	-25.7	32.6
1975. 4	13.5	3.5	9.6	13.9	19.4	0.2	16.2	16.7	40.9	26.8	37.4	-1.9
1975.10	11.9	17.1	15.1	14.5	5.9	3.6	-9.0	-8.6	41.9	-18.0	-22.8	-4.4
1976. 4	13.3	13.2	12.2	4.3	6.7	7.6	21.4	21.2	39.3	35.6	47.2	6.4
1976.10	11.7	9.3	12.8	4.4	3.4	7.1	-5.6	-5.7	41.2	-18.4	-34.9	47.5
1977. 4	16.8	21.8	17.7	5.0	5.3	1.0	16.2	16.0	41.8	60.8	89.9	7.2
1977.10	14.4	23.7	21.9	4.8	3.8	2.9	-6.5	-5.9	38.0	-3.3	-7.8	13.1
1978. 4	24.5	9.4	16.5	7.4	6.9	8.2	22.0	21.4	36.1	41.4	48.9	21.8
1978.10	19.7	7.1	13.1	8.7	5.8	11.1	-8.3	-8.1	41.8	-23.5	-24.7	-21.9
1979. 4	8.3	13.5	15.1	9.9	8.4	9.7	18.1	18.2	43.6	30.4	28.5	50.4
1979.10	7.7	13.0	9.8	7.1	14.3	1.7	-8.5	-8.4	41.4	-17.4	-14.2	-31.9
1980. 4	7.6	6.3	14.3	18.3	25.7	2.8	9.3	10.2	46.7	18.2	10.0	48.2
1980.10	3.2	9.0	11.3	11.9	8.1	1.2	-10.0	-9.3	45.6	-19.2	-23.0	-14.9
1981. 4	3.8	9.7	13.8	9.4	11.5	2.9	6.4	6.8	37.1	10.5	14.7	3.5
1981.10	3.6	-14.1	9.6	8.4	5.2	-1.2	-2.2	-1.5	34.5	-6.8	-7.2	-5.9
1982. 4	1.8	20.0	14.0	1.6	1.2	-2.2	11.8	11.5	34.0	28.0	32.3	25.0
1982.10	3.5	40.8	16.9	2.2	0.7	-2.4	-4.2	-4.2	30.3	-4.3	-4.6	-4.7
1983. 4	9.3	1.3	6.1	2.0	0.2	-1.9	14.7	14.5	26.6	30.4	38.9	12.3
1983.10	8.5	11.8	8.9	0.3	-0.8	0.3	-0.7	-1.3	27.1	-12.3	-15.0	-3.5
1984. 4	6.6	5.1	4.7	2.3	1.1	2.1	13.3	13.1	24.7	18.4	20.2	17.2
1984.10	6.2	0.3	3.2	0.5	0.7	-0.1	-3.4	-2.9	24.6	-11.6	-15.4	-2.2
1985. 4	3.5	-1.6	4.8	0.9	0.2	-1.6	9.7	9.4	25.1	17.4	15.8	18.7
1985.10	3.4	5.6	10.4	2.4	0.4	-1.9	-2.4	-2.1	23.9	-11.0	-14.9	-1.0
1986. 4	3.8	3.6	6.0	1.0	-2.0	-0.3	11.0	10.6	23.2	20.1	24.0	11.9
1986.10	3.4	6.1	9.4	0.0	-0.7	1.4	3.0	2.6	23.2	-12.3	-10.9	-17.0
1987. 4	2.6	1.8	4.8	1.8	1.4	4.9	10.6	9.9	23.0	25.5	29.1	20.3
1987.10	8.4	24.9	13.9	3.4	0.4	6.5	2.8	2.5	23.4	-9.0	-12.3	1.0
1988. 4	11.8	-11.3	4.7	4.2	1.5	6.8	9.6	9.6	22.7	22.5	27.8	12.0
1988.10	13.8	21.4	13.3	1.9	0.5	6.1	0.6	-0.6	23.1	-13.3	-12.3	16.7
1989. 4	20.3	-3.3	5.8	3.3	1.5	2.8	9.1	8.6	19.1	29.3	33.1	21.6
1989.10	10.4	18.5	9.9	3.3	0.9	0.9	-2.2	-2.4	20.2	1.3	1.1	0.3
1990. 4	11.3	12.3	11.4	4.8	1.7	0.1	11.1	10.8	18.0			
1990.10	7.7	10.8	10.4	4.3	4.7	0.8	-1.2	-1.0	18.5			

註 : 1) RUM(私債利子率)은 이자율 그대로를 추정에 이용하였음.

〈附表 3〉 檢證結果의 要約[1)]

X	M1		M2		
	$x \to y$	$y \to x$	$x \to y$	$y \to x$	
lag 決定方法	I, II	I, II	I, II	I	II
lag의 數(y, x)	(1, 1)	(1, 1)	(1, 1)	(2, 2)	(1, 2)
因果關係의 檢證					
F-統計量	6.621	0.364	4.308	0.836	0.00624
自由度	(1,27)	(1,27)	(1,27)	(2,24)	(1,25)
檢證結果	B	X	C	X	X

X	CPI			WPI			EPI		
	$x \to y$	$y \to x$		$x \to y$	$y \to x$		$x \to y$	$y \to x$	
lag 決定方法	I, II	I	II	I, II	I	II	I, II	I	II
lag의 數(y, x)	(1,1)	(4,4)	(4,1)	(1,1)	(3,3)	(3,1)	(1,1)	(2,2)	(1,2)
因果關係의 檢證									
F-統計量	.837	7.745	4.731	0.667	7.829	7.523	0.456	3 .807	2.983
自由度	(1,27)	(4,18)	(4,21)	(1,27)	(3,21)	(3,23)	(1,27)	(2,24)	(2,25)
檢證結果	X	A	A	X	A	A	X	B	C

X	GNP			GDP			RUM		
	$x \to y$	$y \to x$		$x \to y$	$y \to x$		$x \to y$	$y \to x$	
lag 決定方法	I, II	I	II	I, II	I	II	I, II	I	II
lag의 數(y, x)	(1,1)	(3,3)	(2,1)	(1,1)	(2,2)	(1,2)	(1,1)	(4,4)	(3,4)
因果關係의 檢證									
F-統計量	0.362	1.426	0.0537	0.252	0.0115	0.0060	0.0159	3.348	4.135
自由度	(1,27)	(3,21)	(3,23)	(1,27)	(1,27)	(3,23)	(1,27)	(4,18)	(3,20)
檢證結果	X	X	X	X	X	X	X	B	B

	CON				PC			
	$x \to y$		$y \to x$		$x \to y$		$y \to x$	
lag 決定方法	I	II	I	II	I	II	I	II
lag의 數(y, x)	(1,1)	(1,3)	(1,1)	(1,3)	(1,1)	(1,3)	(1,1)	(1,2)
因果關係의 檢證								
F-統計量	6.203	4.394	4.912	4.060	6.780	4.427	6.507	1.739
自由度	(1,26)	(3,22)	(1.26)	(1.22)	(1,26)	(3,22)	(1,26)	(1,24)
檢證結果	B	B	B	B	B	B	B	X

	GC		SPI		
	$x \to y$	$y \to x$	$x \to y$		$y \to x$
lag 決定方法	I, II	I, II	I	II	I, II
lag의 數(y, x)	(1, 1)	(1, 1)	(1, 1)	(1, 2)	(1, 1)
因果關係의 檢證					
F-統計量	0.0228	0.261	0.280	2.443	0.125
自由度	(1,26)	(1,26)	(1,27)	(2,25)	(1,27)
檢證結果	X	X	X	D	X

註 : 1) 검증결과 A, B, C, D는 각각 1%, 5%, 10%, 15% 유의수준에서 因果關係가 없다는 假說이 기각됨을 의미함. X는 15% 유의수준에서도 假說이 기각되지 않음을 의미함.

成果給制度의 巨視經濟的 含意 : 利潤共有制度를 중심으로

全 聖 寅

成果給制度란 個人 혹은 集團의 經濟的 成果指標를 賃金報償의 추가적인 근거로 사용하는 制度를 말한다. 本稿에서는 成果給制度의 한 종류인 利潤共有制度의 經濟的 意味를 검토하였다.

利潤共有制度는 企業立場에서 보면 利潤에 대해 일정률의 租稅를 납부한 후, 勤勞者를 雇傭할 때마다 일정액의 補助金을 받는 제도이다. 한편 勤勞者의 입장에서 보면 최초에 固定給을 낮게 유지해서 얻은 經營成果의 일부를 다른 勤勞者들과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제도이다. 이런 본질적인 특성은 經濟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미친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업입장에서 勞動의 限界費用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므로 經濟의 物價水準은 하락하고 生産量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과소평가할 수만은 없다. 우선 저렴한 限界勞動費用 때문에 利潤共有經濟에서는 본질적으로 超過雇傭傾向이 내재하여 있으며, 또한 어느 한 개인의 노력에 의한 成果의 向上이 모두에게 분배되어 희석되므로 원래 의도되었던 動機誘發效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賃金所得이 變動하므로 危險忌避的인 勤勞者의 效用이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成果給의 원래 긍정적인 측면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勤勞者의 經營參加가 보장되고, 利潤共有制의 채택에 대해 稅制上의 誘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政府의 經濟安定化政策이 더욱 주의깊게 추구되어야 한다.

I. 問題의 提起

최근 들어 賃金支給體系의 改善을 통한 勞動生産性의 向上과 관련하여 成果給制度의 도입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成果給制度는 개별근로자의 勞動成果에 근거한 成果配分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企業의 전반적인 經營成果에 근거한 成果配分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1]. 그 이유는 개별근로자의 勞動成果가 정확히 관찰되지 않으며, 또한 개별적인 成果配分이 勤勞者간에 오히려 비생산적인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듯하다. 따라서 이런

筆者 : 弘益大 敎授(本稿執筆時 本院 硏究委員)

* 本稿의 집필과정에서 격려를 아끼지 않은 本院의 朴佑奎 博士와 좋은 논평 및 의견제시를 해주신 朴烜求, 白雄基 그리고 文亨杓 博士께 감사드린다. 특히 白雄基 博士께서는 전편을 꼼꼼히 읽고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다. 아울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集團的 成果에 근거한 成果配分制度가 代案으로 등장하고 있다. 本稿에서는 集團的 成果配分制度의 대표적 例인 利潤共有制度(profit sharing system)를 중심으로 하여 成果給制度가 갖는 巨視經濟的 意味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2].

利潤共有制度란 企業에 事後的으로 실현된 利潤의 일정부분을 事前에 합의된 분배공식에 의해 勤勞者들이 골고루 나누어 갖는 제도이다. 기존의 賃金支給이 勤勞時間에 근거하는 것임에 비해 利潤共有制度下에서는 利潤이라는 成果指標가 基本給에 더하여 추가적인 支給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利潤共有制度가 통상적인 賃金支給方式에 대한 代案으로 떠오르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통상적인 賃金支給方式에서는 勤勞時間(hours worked)이 중요한 支給根據이므로 만일 勤勞者의 努力이 잘 관찰되지 않을 경우 勤勞者는 使用者가 기대하는 만큼의 勞動을 供給하지 않고 시간때우기(shirking)에만 급급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利潤共有制度와 같은 成果給制度下에서는 成果가 중요한 支給根據 중의 하나이므로, 간접적으로나마 勤勞者의 動機誘發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직관적 이해가 성립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勞動生產性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成果給制度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3].

그러나 위와 같은 直觀이 실제에서 효력을 발휘하기까지에는 많은 전제조건과 가정이 필요하다. 또한 利潤共有制度라는 새로운 賃金支給體系로의 전환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매우 새로운 巨視經濟的 效果를 갖는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두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면서 利潤共有制의 經濟的 意味를 살펴보고, 이 制度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강조한 후, 적절한 政策的 補完을 제시하고자 한다.

本稿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第II章에서는 Weitzman의 利潤共有經濟模型을 이용하여 賃金經濟와 利潤共有經濟의 均衡을 알아보고 그 기본적 특징을 소개한다[4]. 第III章에서는 第II章에 소개된 모형을 이용하여 利潤共有經濟의 여러 측면을 살펴본다. 第IV章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要約한 후 政策方向을 제시하고 미래의 연구과제를 검토한다.

원고정리와 타자에 정성을 쏟은 李庠在 硏究員 및 韓英美 硏究助員께도 감사드린다. 本稿에 남아 있는 誤謬는 전적으로 筆者의 책임임을 밝혀 둔다.

1) 경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勤勞成果에 근거한 成果配分制度를 인센티브제도(incentive system), 企業의 집단적인 經營成果에 근거한 成果配分을 협의의 成果配分制度로 구별하기도 한다. 鄭寅樹(1991), p.3 참조.

2) 利潤共有制度 외에 논의되고 있는 集團的 成果給制度로는 賣出額共有制度(revenue sharing system)가 있다. 이의 巨視經濟的 意味는 利潤共有制度와 大同小異하다.

3) 이런 맥락에서 成果給制度의 功過를 조명한 좋은 해설서로는 Blinder가 편집한 *Paying for Productivity*를 들 수 있다. 구체적인 索引에 대해서는 이 책의 序文에 해당하는 Blinder(1990) 참조.

4) 「와이츠만」模型은 獨占的 競爭下의 確實性模型(certainty model under monopolistic competition)이다. 이 模型은 두가지 賃金體系下에서 巨視經濟의 均衡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는 데에는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이 모형은 기본적으로 確實性模型이므로 不確實性의 效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적인 유용성밖에 갖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本稿에서는 巨視經濟의 均衡比較의 유용성을 더 높이 평가하여 이를 이용하였다.

II. 「와이츠만」方式의 利潤共有制度

成果給制度를 도입할 경우 적절한 成果指標로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심사일 수 있다. 보편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成果指標에는 賣出額, 利益(經常 혹은 純利益), 그리고 生產費用 등이 있다. 그 중 선진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으며 理論的으로도 가장 적절한 指標는 利益指標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利益에 근거하여 成果를 배분하는 利潤共有制度를 중심으로 成果給制度의 여러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5]. 第1節에서는 利潤共有制度의 대표적 모형인 「와이츠만」의 모형을 간단히 소개한 후, 第2節에서는 賃金經濟下의 均衡을, 그리고 第3節에서는 利潤共有經濟下에서의 均衡을 살펴보기로 한다[6].

1. 模型의 設定

우선 n개의 기업이 n개의 서로 약간씩 이질적인 財貨를 생산·판매하는 獨占的 競爭經濟를 가정해 보자. 경제전체의 총수요곡선은 실질통화(M/P)와 실질재정지출(A)의 함수로 주어진다.

$$Y=\alpha A+\beta(M/P)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1)$$

그리고 개별기업 i가 생산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곡선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Y_i=(P_i/P)^{-E}\ Y/n \qquad (E>1) \quad \cdots (2)$$

한편 Y_i는 유일한 생산요소인 동질적 노동의 투입에 의해 다음과 같은 생산함수관계를 이용해서 생산된다.

$$Y_i=\gamma(L_i-f)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3)$$

(3)式에서 γ는 한계노동생산성을, 그리고 f는 기업 i의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노동력(예를 들어 순수관리직 혹은 유휴인력)을 나타낸다.

경제전체의 노동공급은 L^*로 고정되어 있으며 (3)式을 모든 기업에 대해 합산할 경우 총량생산함수는 (4)式과 같이 주어진다.

$$Y=\gamma(L-F)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4)$$

여기서 $L=\sum_{i=1}^{n} L_i$ 그리고 $F=nf$를 나타낸다.

이제 개별기업은 주어진 임금체계 $W(L_i)$ 하에서 개별수요곡선을 감안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P_i, Y_i, L_i를 정하려고 한다. 물론 이러한 극대화 문제의 해는 경제전체적으로는 $L\leqq L^*$의 제약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 賃金經濟下의 均衡

賃金經濟(wage economy)란 단기적으로 名目賃金이 개별기업의 雇傭에 관계없이 일정하

5) 엄밀한 의미에서 利益은 회계학적인 개념이고, 利潤은 경제학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이하에서는 이의 구별을 무시하고 모두 利潤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6) 第II章의 논의는 Weitzman(1985)의 요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다 상세한 논의는 Weitzman (1985)를 참조하기 바라며, 이하에서는 第III章의 논의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특징만을 요약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한다.

게 시장에서 주어지는 경제이다. 따라서

$$W(L_i)=W \quad \cdots\cdots(5)$$

의 관계식이 성립한다. 결국 개별기업의 이윤극대화문제는 노동시장에서 주어진 임금((5)式)과 상품시장에서 주어지는 수요곡선((2)式) 하에서 주어진 생산함수((3)式)를 이용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제 마크업비율을 μ라 하면

$$\mu=E/(E-1) \quad \cdots\cdots(6)$$

의 관계가 성립한다. 勞動生産性이 γ이고 명목임금이 W이므로 單位勞動費用이 W/γ임에 유의하면 獨占的 競爭下의 가격은

$$P_i=\mu W/\gamma \quad \cdots\cdots(7)$$

로 주어진다. 균형하에서 개별기업의 가격은 모두 동일하므로 $P_i=P$가 성립하고 따라서 총산출은 (1)式에 의해

$$Y=\alpha A+\beta M\gamma/\mu W \quad \cdots\cdots(8)$$

로 주어진다[7].

賃金經濟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需要曲線과 生産函數가 주어져 있을 때 균형가격은 오직 명목임금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通貨 및 財政政策은 적어도 단기에는 物價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둘째로 産出量은 通貨 및 財政政策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總需要의 변동은 결국 價格調整이 아닌 數量調整을 통해 새로운 균형을 낳게 된다. 이는 전형적인 「케인즈」式의 均衡이다.

3. 利潤共有經濟下의 均衡

利潤共有經濟(profit-sharing economy)란 總賣出額 중에서 費用을 공제한 利潤 중의 일부를 勤勞者에게 지급하는 임금제도를 채택한 경제이다[8]. 이제 賣出額을 R_i, 그리고 基本給을 ω라 하고, 勤勞者에게 배당되는 利潤의 比率을 λ라 하면 勞動만이 유일한 생산요소인 경우 다음의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9].

$$W(L_i)=\omega+\lambda\cdot\frac{R_i(L_i)-\omega L_i}{L_i} \quad \cdots\cdots(9)$$

利潤은 賣出額에서 人件費 등 각종 費用을 공제한 것이므로 (9)式을 이용하면

$$\begin{aligned}\pi_i(L_i)&=R_i(L_i)-W(L_i)\cdot L_i \quad \cdots(10)\\&=(1-\lambda)(R_i(L_i)-\omega L_i)\end{aligned}$$

의 관계가 성립한다. (10)式은 利潤共有經濟에서의 企業의 행동을 잘 요약하고 있는 관계식이다. (10)式에 의하면 利潤共有制度下에서의 기업의 이윤극대화는 마치 명목임금이 ω로 주어진 賃金經濟下에서의 이윤극대화와 흡사하다. 따라서 第2節의 결론을 원용할 경우 利潤共有經濟의 균형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

7) 물론 (8)式은 완전고용산출량을 Y^*라 할 때 $Y\leq Y^*$일 경우에만 성립한다. 의도된 총산출 Y가 Y^*보다 클 경우에는 오직 Y^*만이 생산 가능함은 자명하다. 이 경우에는 Y가 Y^*로 결정되고 P는 (1)式에 의해 $\beta M/(Y^*-\alpha A)$로 결정된다.

8) 賣出額을 성과의 지표로 사용할 경우에는 (9)式은 약간 다른 형태를 보인다. 그러나 基本給이 없을 경우에는 양자는 동일하게 된다.

9) 만일 資本이 추가적인 생산요소일 경우에는 總賣出額에서 資本費用도 공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本文의 (9)式은 第III章 5節의 (24)式으로 변형됨에 유의해야 한다.

다[10].

$$P=\mu\omega/\gamma \quad \cdots\cdots (11)$$

$$Y=\alpha A+\beta M\gamma/\mu\omega \quad \cdots\cdots (12)$$

이제 利潤共有經濟에서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경우 基本給(ω)은 賃金經濟의 名目賃金總額(W)보다는 낮다. 따라서 利潤共有經濟下에서의 物價는 다른 변수들이 동일할 경우 賃金經濟의 物價보다 낮게 된다. 한편 반대로 産出量은 낮은 物價水準에 힘입어 利潤共有經濟에서 더 크게 된다[11]. 즉 利潤共有經濟에서는 完全雇傭을 달성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둘째로 完全雇傭이 달성된 경우에는 産出量은 通貨 및 財政政策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다만 物價만이 이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전형적인 古典派的인 均衡에 해당한다.

10) 앞의 脚註 7)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Y \geq Y^*$일 경우에는 産出量은 Y^*로 결정되고 物價는 $\beta M/(Y^*-\alpha A)$로 결정된다. 다만 利潤共有制度下에서는 第III章에서 논의되듯이 균형고용량이 더 클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처럼 산출량이 잠재적 산출량을 초과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11)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Weitzman은 利潤共有制度가 스태그플레이션하에 있는 경제에 유용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Weitzman(1984) 참조.

12) 論議의 편의상 하첨자 i는 앞으로 생략하기로 한다.

13) Weitzman은 바로 이 특징이 利潤共有經濟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Weitzman (1983), p.768 참조.

III. 利潤共有經濟의 諸側面

1. 利潤共有制度의 本質과 超過雇傭傾向

利潤共有制度의 本質은 우선 賃金體制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특징은 雇傭量이 增加할수록 支給되는 平均賃金은 감소한다는 점이다. 第II章의 (9)式을 다시 정리하면

$$W(L)=(1-\lambda)\omega+\lambda R(L)/L \cdots\cdots (9a)$$

을 얻는다[12]. 이제 $R'(L)=\omega$라는 이윤극대화의 필요조건에 유의하면서 W를 L에 관해 미분해 보면 (13)式을 얻게 된다.

$$\begin{aligned} W'(L) &= \lambda(R'(L)\cdot L-R(L))/L^2 \\ &= -\lambda(R(L)-\omega L)/L^2 \quad (<0) \end{aligned} \quad \cdots\cdots (13)$$

(13)式의 괄호 안은 이윤분배 전의 총이윤에 해당하며, 따라서 市場進入이 제한되는 단기에 있어서는 양수가 된다. 따라서 $W'(L)<0$이 성립한다. 즉 (13)式에 의하면 雇傭을 늘림에 따라 平均賃金은 하락하게 된다. 利潤共有經濟는 바로 이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賃金經濟에 비해 초과고용으로의 경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13].

利潤共有經濟에서의 超過雇傭傾向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10)式과 (9)式을 다시 상기해 보면, 우선 (10)式은 마치 정부가 기업의 利潤에 대해 λ의 비율만큼 조세

를 부과한 경우로 이해해 볼 수 있다. 한편 (9)式은 勞動者들이 ω라는 基本給 외에 정부로부터 $\lambda \cdot (R-\omega L)$만큼의 추가보조금을 받아서 이를 나누어 가지는 경우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利潤共有經濟란 정부가 企業利潤에 比例稅를 부과한 후 이를 勤勞者에게 다시 補助金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와 완전히 동일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基本給(ω)은 통상적인 賃金總額(W)보다는 낮기 때문에 勤勞者에게는 동일한 額數를 지급하면서도 企業의 勞動力購入에 따르는 限界費用을 W에서 ω로 낮출 수 있게 된다. 기업은 바로 이 낮은 限界費用 때문에 價格을 낮추고, 雇傭增加를 통해 生產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같은 超過雇傭現象은 賃金總額이 주어져 있을 경우 基本給(ω) 및 共有率(λ)에 의존한다. 基本給의 비중이 낮을수록(즉 共有率의 비중이 높을수록) 超過雇傭現象은 강화된다. 극단적인 경우 $\omega \rightarrow 0$으로 접근하면 기업의 勞動需要는 무한대가 된다. 이때 경제의 勞動供給이 L^*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균형은 L^*가 모두 고용되는 完全雇傭에서 결정될 것이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각 기업은 가능하기만 하면 언제나 추가노동력을 흡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利潤共有制度의 導入은 經濟의 物價水準을 낮추며 雇傭을 촉진시킨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雇傭의 촉진이 언제나 經濟에 이롭게 작용하는 것만은 아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와 같이 經濟의 일부 부문에서 극심한 人力難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2. 內部者와 局外者間의 葛藤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재 가장 널리 시행되고 있는 賃金體系는 名目賃金을 고정시킨 지급체계이다. 따라서 利潤共有經濟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과연 통상적인 賃金經濟에서 利潤共有經濟로 자연스럽게 移行해 갈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관심사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Weitzman은 企業間의 내쉬균형(Nash Equilibrium)의 이론을 이용하여 다른 企業들이 모두 利潤共有經濟를 채택하고 있을 경우 어느 기업도 利潤共有制度 이외의 다른 제도를 채택하려는 誘引이 없음을 보이고 있다[14]. 그러나 勤勞者의 행동이 함께 고려될 경우, 위의 결론이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게 된다. 오히려 좀더 강하게 이야기하자면 勤勞者들의 행동을 고려할 경우 오히려 賃金經濟가 그대로 존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의 두가지 경우를 검토하여야 한다. 첫째는 과연 다른 企業들이 모두 賃金經濟의 논리하에 있을 때, 어느 한 企業이 利潤共有制度를 도입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이고, 둘째는 만일 다른 모든 기업이 利潤共有制度下에 있을 때 어느 한 기업이 利潤共有制度를 그대로 유지할 誘引이 있겠는가의 문제이다.

우선 첫번째의 문제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만일 $n-1$의 기업이 모두 賃金經濟의 논리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면, 經濟의 物價는 n이 충분히 클 경우 나머지 한 기업의 행동과 거의 무관하게 (7)式으로 주어지게 된다. 이제

14) Weitzman(1985), pp. 946~947 참조.

나머지 한 기업이 만일 현재의 경영상태하에서 동일한 賃金總額이 보장되도록 ω와 λ를 결정하여 利潤共有制度를 채택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때 앞에서 살펴본 바 대로 필연적으로 雇傭을 증가하고, 이에 따라 平均賃金은 하락하게 된다. 그리고 그때까지 失業의 상태에 있던 일부 勤勞者들이 이 기업에 신규로 참여하게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의 勤勞者들은 과거보다 더 낮은 名目 및 實質賃金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즉 內部者의 희생하에서 外部者의 雇傭이 촉진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內部者들이 중심이 된 勞動組合은 이에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은 勞動組合의 반발은 후술하게 될 生產性增加와 관련하여 해당기업이 利潤共有制를 도입하는 데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15].

다음으로는 두번째의 경우, 즉 $n-1$개의 기업이 利潤共有制度下에 있을 때 n번째 기업이 과연 계속 利潤共有制度를 선택할 것인지 살펴보자. 현재 $n-1$개의 기업이 利潤共有制度를 택하고 있으므로 만일 n번째 기업이 전통적인 名目賃金制度를 택할 경우에 그 임금수준은 현재 利潤共有經濟에서 일반화된 平均賃金이 될 것이다. 이제 이 임금수준에서 n번째 기업의 이윤극대화문제를 생각해 보자. 분명히 이 기업은 이 임금수준에서 과거와 동일한 고용을 통해 경제내에 공통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과거의 임금하에서도 종전의 생산활동을 되풀이하는 것이 가능(feasible)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적화된 이윤은 종전의 생산활동에서 얻어지는 이윤보다 적어도 같거나 커야 한다. 따라서 n번째 기업은 利潤共有制度에서 탈피하여 賃金經濟로 되돌아 가려는 誘引을 갖게 된다. 특히 이때 勞動力의 限界費用은 과거보다 증가하였으므로($\omega \rightarrow W$), 雇傭은 감소하게 된다.

두번째 경우 한가지 의문점은 雇傭이 축소되는 변화를 과연 內部者들이 찬성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경우 기존의 內部者들은 특이하게도 賃金制度의 변화에 거의 무차별하게 된다. 왜냐하면 $n-1$개의 기업이 이미 利潤共有制度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설사 n번째 기업에서 소량의 실업이 발생하더라도 失業者들은 곧 동일한 賃金을 받고 $n-1$개의 기업에 재고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賃金經濟에서 利潤共有經濟로의 이행이나, 利潤共有經濟의 유지에는 불안정한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16].

3. 動機誘發과 勤勞意慾

Weitzman에 의해 주장되었던 利潤共有制度는 원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처방으로서 제기되었던 측면이 강하다[17]. 그러나 利潤共有制度를 포함하는 보다 광의의 成果給制度는 勤勞者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정의된 成果指標와 연결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勞動生產

15) 內部者(insider)와 局外者(outsider)간의 갈등에 관해서는 Blanchard and Summers(1986)에 잘 나타나 있다. Weitzman 역시 기존 內部者들의 반발에 유의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책으로 추가적인 租稅政策誘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Weitzman(1984), pp. 132~134 참조.

16) Weitzman도 이런 잠재적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Weitzman(1984), pp. 125~126 참조.

17) 이는 Weitzman(1984)의 副題가 "스태그플레이션의 퇴치를 위하여(conquering stagflation)"임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性을 증대시키려는 것을 더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 왔다[18]. 즉 단순히 勤勞時間에 대해 보상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보상을 成果指標와 연계시킬 경우 근로자들도 단순한 '시간때우기'에서 탈피하여 成果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관적 주장이 經濟理論의 전폭적인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勤勞者의 努力과 成果 그리고 報償간의 연계가 불확실하거나 취약할 경우, 그리고 勤勞者가 이같은 불확실성이나 취약성을 감지할 경우, 원래 의도하였던 動機誘發效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第II章의 모형에 근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19].

第II章의 모형에서 특정기업 勤勞者의 勞動意慾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변수는 (3)式에서 유휴인력을 나타내는 f이다. 어떤 勤勞者가 고용은 되었으나(즉 L_i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직접 生産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따라서 동일한 L_i하에서 f의 증가로 정식화해 볼 수 있다. 편의상 勤勞者의 勤勞意慾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우선 전통적인 賃金經濟下에서 勤勞者의 '시간때우기(shirking)' 가능성을 살펴보자. (5)式과 (7)式에 유의하면서 시간때우기에 따른 實質賃金의 변화를 살펴보면

$$\left.\frac{\partial(W/P)}{\partial f}\right|_{wage}=0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14)$$

임을 알 수 있다. 즉 단순히 주어진 근로시간만 충족시키면 미리 확정된 賃金을 받을 수 있는 賃金經濟에서는 시간때우기의 비용은 0이 된다. 바로 이 점이 成果給制度가 등장하게 된 이유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利潤共有制度下에서 시간때우기의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가? (9a)式을 이용하여 利潤共有制度의 實質賃金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W/P=(1-\lambda)\cdot\gamma/\mu+\lambda\cdot Y_i/L_i \quad (9b)$$

이제 주어진 L_i하에서 어느 한 勤勞者가 시간때우기를 결정해서 f가 증가한 경우를 살펴보자. Y_i가 f의 함수라는 (3)式에 유의하면

$$\left.\frac{\partial(W/P)}{\partial f}\right|_{ps}=-\lambda\gamma/L_i \quad (<0)\cdots(15)$$

을 얻는다[20]. 따라서 과연 利潤共有制度下에서는 시간때우기가 實質賃金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利潤共有制는 언뜻 보아 근로자의 動機誘發을 촉진하고 勤勞意慾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과연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의 (15)式의 결과는 매우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우선 과연 (15)式에서 나타난 實質賃金의 감소폭이 얼마나 큰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어느 한 근로자가 시간때우기를 결정할 경우 그로 인한 실

18) 일반적인 成果給制度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좋은 소개서로는 Blinder(1990) 및 같은 책의 다른 논문 참조.

19) 經濟學에서 이 문제는 '主人과 代理人의 問題(principal-agent problem)'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에 관해서는 Hart and Holmstrom(1987) 참조. 第II章의 모형은 이런 主人과 代理人의 問題를 올바로 다루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第II章의 모형을 소개한 까닭은 이 모형이 利潤共有制度 혹은 광의의 成果給制度의 여러 다양한 측면을 골고루 보여 주는 데에 가장 유용하기 때문이다.

20) 여기서 ps는 利潤共有(profit-sharing)의 경우를 지칭한다.

질생산의 손실은 γ이다. 그 중 λ의 비율만큼이 성과배분과 관계하므로 새로 감소하는 成果配分의 크기는 $\lambda\gamma$가 된다. 이제 이를 그 기업내의 모든 勤勞者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므로 개별근로자에게 해당하는 實質賃金의 감소분이 (15)式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γ는 勞動의 限界生産力이다. 따라서 이는 市場構造가 完全競爭이었을 경우에 勞動者 1人의 실질임금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그런데 (15)式은 그 1人의 실질임금에 1보다 작은 λ를 곱한 후 이를 기업내의 전체근로자 수로 나눈 액수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개별근로자의 實質賃金減少는 매우 미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실질적인 의미에서 (14)式과 (15)式의 차이는 아주 사소한 것이다[21].

어째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가? 그 이유는 利潤共有制度에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外部效果(externality effect) 때문이다. 위의 논의에 이미 나타났듯이 어느 한 勤勞者의 시간때우기에 의해 발생하는 費用은 반드시 해당근로자에 의해서 지불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비용은 기업내의 모든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바로 이 점이 어느 개별근로자로 하여금 시간때우기를 고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22]. 이상의 논의는 비단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근무태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불행히도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勤勞意慾과 創意性의 장려라는 측면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어느 한 근로자가 이제까지의 근무태만에서 탈피하여 열심히 작업을 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 경우 증가하는 성과는 모든 근로자에게 골고루 분배되기 때문에 원래의 근로자에게는 (15)式에 나타나는 매우 사소한 액수만이 추가적인 보상으로 돌아오게 된다[23].

或者는 설사 利潤共有制度下에서 시간때우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미미한 것은 사실이라고 해도, 시간때우기를 전혀 방지하지 못하는 賃金經濟보다는 우월하지 않는가 하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 역시 사실과는 다를 수 있다. 실제로 어느 勤勞者가 과연 시간때우기를 채택할 것인가의 여부는 시간때우기에서 발생하는 實質賃金의 하락뿐 아니라, 시간때우기가 발각되어 해고될 가능성 그리고 해고된 후 다시 다른 기업에 재고용될 가능성에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앞의 第1節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賃金經濟에서보다 利潤共有經濟에서 失

21) 이상의 논의는 利潤共有經濟下에서 시간때우기의 誘引이 특별히 더 감소하지 않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는 약간 달리 그렇다면 과연 利潤共有制下에서 勤勞者가 시간때우기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勤勞者의 餘暇(leisure)에 대한 한계효용과 시간때우기가 발각될 가능성, 그리고 해고되었을 경우 다시 다른 기업에 입사할 가능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22) 이는 1回게임(one-period game)에서 흔히 나타나는 罪人들의 고민(prisoner's dilemma)이다. 만일 반복게임(repeated game)이 무한히 시행된다면 모든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는 協同均衡으로 이행할 수도 있다.

23) 이런 外部效果가 나타나는 핵심원인은 利潤共有制下에서는 개별근로자의 근무태만, 혹은 창의성이 직접 관찰되고 평가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勤勞者의 행동을 관찰하는 감시비용(monitoring cost)이 크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無賃乘車(free riding)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Blinder는 이를 '$1/n$ 問題'라고 명명하였다. Blinder (1990), pp. 5~6 참조. 만일 근로자의 개별적인 成果가 측정되고 보상받는다면 위의 문제는 사라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를테면 보험회사 외판원에게 成果給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業率이 더 낮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만일 勤勞者들이 설사 발각되어 해고당하더라도 금방 다시 다른 기업에 고용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경우, 利潤共有經濟에서 오히려 시간때우기가 더욱 성행할 수도 있다[24].

4. 景氣變動과 危險忌避

이제까지의 논의는 不確實性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주된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만일 경제에 外生的인 충격이 확률적으로 주어져 景氣變動이 야기되는 경우, 이제까지의 논의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측면들이 利潤共有經濟에 나타나게 된다. 이 節에서는 기업의 限界生產性(γ)이 변동하는 경우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어느 한 개별기업의 生產性(γ)이 변동하는 경우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賃金經濟下에서는 (5)式에 의해 名目賃金은 γ의 변동과 무관하게 불변이다. 한편 物價水準은 n이 클 경우 다른 $n-1$개 기업의 영향이 압도적이므로 거의 변화가 없다. 따라서 賃金經濟에서는 어느 개별기업의 生產性이 변동하더라도 勤勞者의 實質賃金은 거의 불변인 셈이다. 반면에 利潤共有經濟下에서는 名目賃金과 實質賃金이 모두 변동하게 된다. 왜냐하면 固定給(ω)을 초과하는 부분은 직접 개별기업의 成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勤勞者가 企業보다 더 危險忌避的이라고 가정할 경우, 利潤共有經濟下에서 勤勞者의 效用을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25].

이제 γ가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확률변수일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제는 γ의 변화에 따라 (7)式에 의해 物價水準이 변동하므로 賃金經濟에서의 實質賃金 역시 변동하게 된다.

$$\left.\frac{\partial(W/P)}{\partial\gamma}\right|_{wage}=\frac{1}{\mu} \quad \cdots\cdots(16)$$

이제 平均實質賃金이 $\frac{\gamma}{\mu}$인 利潤共有經濟에서의 實質賃金變動에 관하여 살펴보자. 우선 平均賃金이 $\frac{\gamma}{\mu}$이므로 (9b)式에 의해

$$(1-\lambda)\frac{\gamma}{\mu}+\lambda\frac{Y}{L}=\frac{\gamma}{\mu} \quad \cdots\cdots(17)$$

혹은

$$\frac{Y}{L}=\frac{\gamma}{\mu} \quad \cdots\cdots(17a)$$

이 성립한다. 그런데 Y/L은 (3)式에 의해 $\gamma\cdot(1-F/L)$이므로
결국

$$1-F/L=1/\mu \quad \cdots\cdots(17b)$$

가 성립한다. 이제 γ가 변할 때 W/P의 변화를 살펴보면

$$\left.\frac{\partial(W/P)}{\partial\gamma}\right|_{ps}=(1-\lambda)/\mu+\lambda\frac{\partial(Y/L)}{\partial\gamma} \quad \cdots\cdots(18)$$

가 성립한다. 여기서

24) 이 경우 失業은 勤勞者를 통제하는 장치(unemployment as a discipline device)로 작용한다. 失業을 이런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은 주로 效率性賃金(efficiency wages)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시각인데 이에 대해서는 Shapiro and Stiglitz (1984) 참조.

25) 이는 기본적으로 賃金經濟에서는 企業이 勤勞者에게 保險을 제공하는 데 비해, 利潤共有經濟에서는 企業과 勤勞者가 危險을 共有하기 때문이다.

$$\frac{\partial(Y/L)}{\partial\gamma}=\frac{\partial}{\partial\gamma}\left[\gamma(1-\frac{F}{L})\right]$$
$$=1-\frac{F}{L}+(\gamma\cdot F/L^2)\cdot\frac{\partial L}{\partial\gamma}$$
$$\simeq 1-F/L=\frac{1}{\mu}\cdots\cdots\cdots\cdots\cdots(19)$$

가 성립한다[26]. 따라서

$$\frac{\partial(W/P)}{\partial\gamma}\Big|_{wage}\simeq\frac{\partial(W/P)}{\partial\gamma}\Big|_{ps}\cdots(20)$$

가 성립한다. 즉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勤勞者의 賃金變動은 양체제에서 공히 같은 폭으로 변동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몇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우선 γ가 변화할 경우 實質生産量은 利潤共有經濟下에서 더욱 큰 폭으로 변동하게 된다는 점이다. 우선 賃金經濟에서는 (8)式에 의하여

$$\frac{\partial Y}{\partial\gamma}\Big|_{wage}=\beta M/\mu W\quad\cdots\cdots\cdots\cdots\cdots(21)$$

임에 비해, 利潤共有經濟에서는 (12)式에 의하여

$$\frac{\partial Y}{\partial\gamma}\Big|_{ps}=\beta M/\mu\omega\quad\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22)$$

이다. 그런데 $\omega<W$이므로

$$\frac{\partial Y}{\partial\gamma}\Big|_{wage}<\frac{\partial Y}{\partial\gamma}\Big|_{ps}\quad\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23)$$

가 성립하게 된다. 폐쇄경제하에서 生産量은 결국 家計所得으로 分配됨을 생각해 볼 때 利潤共有經濟下에서 家計所得은 더 큰 진폭으로 變動하게 되고, 따라서 역시 勤勞者가 危險忌避的인 경우 근로자의 效用은 감소하게 된다[27].

두번째로 유의할 점은 勤勞者의 미래에 대한 期待(expectation)와 勤勞意慾간의 관계이다. 賃金經濟에서는 (14)식에서 보듯이 시간때우기에 대한 誘引은 γ와 무관하다. 그러나 利潤共有經濟에서는 (15)式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미미하나마 시간때우기에 대한 誘引은 γ와 관련되어 있다. γ가 높은 好景氣에는 적당히 시간을 보내는 데 드는 費用은 증가하고, 반대로 γ가 낮은 不景氣에는 거의 費用이 들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利潤共有制度下에서 勤勞者는 γ가 높을 경우 더욱 열심히 일하고, γ가 낮은 경우 시간만 보내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짙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진폭이 큰 總産出量의 變動幅을 더욱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勤勞者들이 사전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γ에 대해 期待를 형성할 경우, 만일 모든 勤勞者가 好景氣를 예상한다면 실제로 유휴노동력이 감소하여 産出量이 증가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28]. 이는 근거 없이

---

26) 계산 중 (19)式의 둘째 줄 두번째 항은 $(\gamma/L)\cdot(F/L)$로 분리해 볼 수 있는데 F/L은 1보다 작은 양수이고, γ/L은 완전경쟁시의 1人當 實質賃金(γ)을 다시 경제내의 총취업자 L로 나눈 것이므로 거의 0에 가깝다. 따라서 $\gamma F/L^2\simeq 0$이다. $\frac{\partial L}{\partial\gamma}$의 부호는 (12)式과 (4)式에 의해 $\alpha A\geq 0$인 경우 非陽(nonpositive)이다.

27) 이같은 이유는 物價가 利潤共有經濟下에서 γ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非彈力的이기 때문이다. (11)式 참조. 한편 勞動의 限界生産인 γ가 확률변수일 경우, $\omega<W$이므로 간단한 계산을 통해 $Var(Y)\,|_{wage}<Var(Y)\,|_{ps}$ 임을 보일 수 있다. 만일 勤勞者의 期待效用이 平均-分散(mean-variance) 형태로 되어 있으면 위험기피자의 기대효용은 감소하게 된다. 이를 명확하게 지적해 주신 白雄基 博士께 감사드린다.

28) 이를 自己充足인 期待(self-fulfilling expectation)라 한다. 이런 期待가 존재할 경우 經濟의 不安定性은 증가한다.

형성되는 期待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經濟의 不安定性은 利潤共有制下에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5. 資本蓄積과 勞動生產性

이제까지의 模型은 資本이 없는(즉 資本스톡이 고정되어 있는) 經濟에 관한 것이었다. 이 모형에 資本스톡을 추가하여 投資와 이에 따른 勞動生產性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資本의 기회비용이 γ로 주어진 경제를 가정하고 γ의 비용으로 資本(K)을 무한히 임대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우선 賃金經濟에서는 資本과 勞動의 相對價格이 통상적인 경우처럼 W/γ로 주어진다. 한편 資本이 존재하는 경우 利潤共有經濟에서의 賃金支給은 다음과 같이 약간 변형된다.

$$W(L_i)=\omega+\lambda\cdot\left[\frac{R_i(L_i)-\omega L_i-\gamma K_i}{L_i}\right] \quad \cdots\cdots(24)$$

(24)式을 이용하여 i기업의 利潤式을 변형시키면

$$\begin{aligned}\pi_i(L_i)&=R_i(L_i)-W(L_i)\ L_i-\gamma K_i\\&=(1-\lambda)[R_i(L_i)-\omega L_i-\gamma K_i]\end{aligned} \quad \cdots\cdots(25)$$

를 얻게 된다. 따라서 利潤共有經濟에서는 資本과 勞動의 상대가격이 ω/γ로 변하게 된다. 만일 資本의 기회비용(r)이 단기에 고정되어 있다면 利潤共有經濟下에서는 勞動이 資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생산요소가 된다. 따라서 우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利潤共有經濟는 보다 작은 資本스톡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그러나 다른 조건이 동일하지 않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利潤共有經濟下에서는 產出量이 통상 賃金經濟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相對價格에 의한 대체효과뿐만 아니라 產出에 따른 所得效果까지 감안한다면 그 결과는 불확실해진다[29]. 뿐만 아니라 기업이 資本을 임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投資를 통해 점진적으로 資本을 건설해야 하는 動態的인 상황까지 고려할 경우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여기서는 다만 이것이 잠재적으로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하는 데 그치고 후일의 연구에 맡기고자 한다.

IV. 要約 및 政策的 含意

利潤共有制度의 본질은 企業의 입장에서는 利潤에서 租稅를 납부하고 勤勞者를 고용할 때마다 補助金을 받는 제도이며, 勤勞者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賃金을 낮게 유지한 결과로 나타난 成果를 다른 勤勞者와 나누어 가지는 제도이다. 이같은 특징의 경제적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租稅와 補助金政策이 의미하는 점은 利潤共有經濟下에서는 超過雇傭이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勞動의

29)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3)式의 생산함수에 資本이 어떤 형식으로 관여하게 되는지를 명시적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이 문제의 중요성만을 지적하는 데 그치고자 한다.

限界費用을 낮게 유지시킨 결과이다.

둘째, 企業의 1人當收入(per capita revenue)은 雇傭의 감소함수이므로, 雇傭이 증가함에 따라 既存勤勞者의 平均賃金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신규고용은 기존근로자의 희생위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內部者와 局外者간의 갈등을 유발시킨다.

셋째, 成果는 모든 근로자에게 골고루 분배되므로 개인적인 利益과 전체의 共同善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한 개인의 행동이 적절히 보상받지 못하는 外部效果가 발생하여 無賃乘車의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利潤共有經濟下에서 景氣變動의 진폭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의적인 變動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다.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利潤共有制로 대표되는 成果給制度가 운위되고 있는 이유는, 첫째 利潤共有制下에서는 낮은 物價水準과 높은 產出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며, 둘째로 만일 勤勞者들이 小我에서 벗어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눈을 돌릴 경우, 勞動生產性의 향상을 통한 經濟全般의 成果向上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이 부정적 결과를 압도하고 올바르게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몇가지의 전제가 꼭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勤勞者의 經營參加가 보장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勤勞者들로 하여금 罪人들의 고민(prisoner's dilemma)에서 벗어나 協同均衡(cooperative equilibrium)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企業의 經營에 적극 참여하도록 통로를 열어 주어야 한다. 외국의 例에서 보더라도 成果給制度가 성공하는 데 있어 제1차적인 조건이 勞動組合의 지지였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30]. 또한 經營者의 勤勞者에 대한 인식도 雇傭人에서 同伴者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利潤共有制度로의 이행이나 이 제도의 유지는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는 측면이 많다. 따라서 만일 이 제도의 정착이 바람직할 경우, 政府는 이 제도의 채택에 대해 강력한 租稅誘引을 추가하여야 한다. 誘引의 例로는 法人稅의 減免, 成果配分所得에 대한 所得稅減免 등을 들 수 있다[31].

셋째, 利潤共有制에 내재하는 不安定性을 상쇄하기 위해서 政府는 經濟安定化政策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通貨 및 財政政策의 조절에 있어서는 이 변수들과 경제의 다른 교란요인과의 상관관계에 유의하여 경제전체의 변동을 축소하는 데 유의하여야 한다.

이 분야는 거시경제학의 모든 부문과 연관되어 다양한 미래의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本稿에는 그 중의 극히 일부만이 취급되어 있다. 本稿에서 언급된 항목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이 미래의 연구를 기다리고 있다.

우선 資本蓄積과 成果給制度와의 관련성이다. 특히 動態的 投資經路와 均齊狀態(steady state)下에서의 資本스톡에 관한 연구가 필요

30) 成果給制度下에서 勞動組合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 분석으로는 Mitchell, Lewin, and Lawler (1990), 특히 p.70 참조. 한편 勤勞者의 經營參加가 가져오는 成果向上에 대해서는 Levine and Tyson(1990) 참조.

31) 미국의 경우 從業員持株制(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 ESOP)의 경우 강한 租稅誘引策이 마련되어 있다.

하다.

둘째는 金融市場과의 관련성이다. 成果給制度下에서는 實質賃金은 물론이고 名目賃金도 기업의 成果에 의해 변동하는 危險資産이다. 만일 어느 특정기업의 成果와 경제전체의 成果가 공통적인 충격에 의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勤勞者가 이 위험을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게 된다.

이상에서 몇가지 향후 연구과제를 검토해 보았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연구를 기대한다.

▷ 參 考 文 獻 ◁

鄭寅樹, 『成果配分 : 成果給制度 導入과 檢討事項』, 韓國勞動硏究院, 1991. 3.

Blanchard, Olivier and Lawrence Summers, "Hysteresis and the European Unemployment Problems," *NBER Macroeconomics Annual*, 1986, pp.15~77.

Blinder, Alan S., "Introduction," in Alan S. Blinder(ed.), *Paying for Productivity: A Look at the Evidence*,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90, pp. 1~14.

Hart, Oliver and Bengt Holmstrom, "The Theory of Contracts," in T. Bewley(ed.), *Advances in Economic Theory: 5th World Congr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Levine, David I. and Laura D'Andrea Tyson, "Participation, Productivity and the Firm's Environment," in Alan S. Blinder (ed.), *Paying for Productivity: A Look at the Evidence*,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90, pp. 183~244.

Mitchell, Daniel J.B., David Lewin, and Edward E. Lawler, III, "Alternative Pay Systems, Firm Performance, and Productivity," in Alan S. Blinder(ed.), *Paying for Productivity: A Look at the Evidence*,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90, pp. 15~94.

Shapiro, Carl and Joseph Stiglitz, "Equilibrium Unemployment as a Discipline Device,"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84, pp.433~444.

Weitzman, Martin L., "Some Macroeconomic Implications of Alternative Compensation Systems," *Economic Journal*, Dec. 1983, pp.763~783.

_____, *The Share Economy: Conquering Stagfla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84.

_____, "The Simple Macroeconomics of Profit Sharing," *American Economic Review*, Dec. 1985, pp.937~953.

金融産業構造의 決定要因에 대한 實證分析

左 承 喜

本稿는 金融市場의 規模와 金融産業構造와의 관계에 대한 몇가지의 假說을 美國, 英國, 獨逸,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등 11개 OECD국가와 韓國의 時系列資料 및 同 資料의 크로스섹션結合資料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① 각국의 直·間接金融比重은 전체 금융시장규모에 의해 유의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② 直·間接金融은 市場規模의 擴大에 따라 어느 하나가 압도함이 없이 일정한 균형비율로 수렴해 나가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어 世界金融産業은 일반적으로 專業均衡보다는 專業 및 兼業의 混合均衡으로 이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③ 최근 진행되고 있는 金融의 世界化 및 開放化 趨勢는 궁극적으로 각국 金融産業組織의 同質化를 촉진시킬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④ 金融市場規模의 擴大에 따른 混合均衡으로의 이행과정에서는, 兼業主義 銀行制度는 금융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에서, 역으로 專業主義 銀行制度는 금융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제에서 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부수적으로는, 專業主義 金融制度에 비해 金融業務의 自由를 보다 더 허용하는 兼業主義 金融制度가 均衡金融構造로의 移行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이상의 검증결과는, 金融産業 및 制度는 이를 받치는 전체 金融의 規模成長에 따라 적절한 均衡構造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금융의 성장과정 및 속도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위적인 金融改編政策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시사를 주고 있다.

I. 序 論

최근 世界金融産業은 금융혁신과 금융자율화의 진전 속에서 두가지의 相反되는 새로운 업무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우선은, 전통적인 商業金融業務 중심의 商業銀行이 證券投資業務에 진출하거나 전통적인 證券投資機關인 投資銀行이 예금업무에 진출하는 등 금융업무의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들 금융기관들이 종합금융서비스회사 형태로 변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위 兼業主義 銀行制度가 확산되는 추세하에

筆者 : 本院 硏究委員

* 草稿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준 白雄基, 崔範樹, 金俊經 박사께 감사를 드리며 實證分析을 도와준 李濬熙 硏究員과 원고정리에 애를 쓴 林明姬 硏究助員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있다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업무의 分割現象도 관찰되고 있다. 은행대출이 證券化되어 매각되는 등 전통적인 은행고유업무가 분할됨으로써 금융업무들이 專門化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金融規制側面에서 볼 때에는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金融業務의 재편양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兼業主義로의 이행이 크게 진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金融自律化의 진전과 함께 金融産業의 改編方向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대체로 이러한 논의의 쟁점 역시 商業銀行業務와 證券業務의 통합(兼業)을 어느 정도로 허용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左承喜 外(1991)의 第III章 및 第V章 참조).

이와 같이 間接金融業務와 直接金融業務의 兼業 및 專業化現象은 금융산업의 자연스런 발전과정으로서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정책의 운용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선택의 대상이라는 점에서도 보다 깊이있게 분석되어야 할 연구대상이라 하겠다. 左承喜(1991a)는 이러한 금융업무의 재편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多品目 金融産業組織論의 모색과정에서 金融業務의 兼業과 專業現象을 포함한 금융구조의 변화에 대한 5가지의 가설을 제시하고 있는데, 本稿는 이 가설들을 중심으로 하여 금융구조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第II章에서는 本稿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이러한 가설들이 갖는 意義를 논하고자 한다. 第III章에서는 本稿에서 이용한 검증모형을 제시하고, 第IV章에서는 사용자료에 대한 설명과 실제검증결과를 논의하고자 하며, 第V章에서는 本稿를 요약하고 분석의 政策示唆點을 논함으로써 本稿를 마감하고자 한다.

II. 金融市場規模와 金融構造

1. 金融市場規模와 金融構造에 관한 假說

左承喜(1991a)는 一國의 金融産業組織, 나아가서는 金融構造는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의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는 시각에서 일국의 金融構造와 金融市場規模間에는 일정한 연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이 점을 몇개의 가설로 정리하고 있는데, 本稿의 목적이 바로 이 가설들을 검증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고자 한다.

그에 의해서 논의된 金融産業組織理論에 의하면 금융기업에 의한 금융업무의 專業 및 兼業與否에 대한 선택은 이들 업무 각각이 規模의 經濟性 및 서로간에 範圍의 經濟性을 갖는지 여부와 그 經濟性의 절대적 및 상대적 크기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점은 원 논문의 〈假說 2〉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구체화되고 있다.

〈假說 2〉 金融企業은 특별한 금융규제가 없다면 規模의 經濟가 상대적으로 크고 동시에 다른 업무들과 範圍의 非經濟下에 있거나 혹은 다른 업무들과의 範圍의 經濟가 상대적으로 약한 업무를 분할하고, 역으로 他業務와 範圍의 經濟가 높으면서 동시에

그 자체로서는 規模의 非經濟下에 있거나 혹은 規模의 經濟가 상대적으로 약한 업무를 추가하게 된다[1].

이에 따르면 일국의 金融產業組織, 나아가 金融構造는 規模 및 範圍의 經濟를 시현할 수 있는 금융시장여건, 즉 금융시장규모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金融業務 각각의 규모의 경제 및 서로간의 범위의 경제성의 존재가능성은 금융산업의 技術的 特性 및 金融革新 등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이러한 經濟性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업무의 규모가 이러한 經濟性을 실현시킬 수 있을 정도의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金融業務의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 금융시장의 전체규모가 가장 중요한 현실 금융구조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된 金融產業組織에 대한 나머지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2].

〈假說 1〉 (국가간 金融產業組織의 差異) : 국가간의 金融產業組織上의 차이는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주로 金融市場의 規模, 즉 금융에 대한 수요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假說 3〉 (金融產業組織의 均衡) : 구조의 재편과정에 있는 세계은행산업의 최종균형은 완전한 兼業銀行이거나 완전한 專業形態인 고유의 상업은행제도가 배타적으로 압도하는 형태보다는 기존의 정의에 의한 專業과 兼業이 공존할 뿐만 아니라, 기존 金融業務는 물론 새로운 혁신에 의한 金融業務들을 포함하는 집합 중에서 〈假說 2〉에 의해 새로이 취사선택되는 부분집합의 새로운 金融業務들을 수행하는 금융기관들도 공존하는 混合均衡이 될 것이다.

〈假說 4〉 (金融의 世界化와 金融產業組織의 同質化) : 최근 진행되고 있는 金融의 世界化(globalization) 및 開放化 추세는 궁극적으로 각국 金融產業組織의 同質化를 촉진시킬 것이다.

〈假說 5〉 (兼業主義와 專業主義 銀行制度) : 金融制度에 대한 인위적 규제가 없다면, 兼業主義 銀行制度는 금융시장 및 수요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에서, 역으로 專業主義 銀行制度는 금융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제에서 주로 형성되게 될 것이다.

여기서 〈假說 3〉과 〈假說 4〉, 그리고 〈假說 5〉는 서로간에 상반되는 시사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간의 관계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假說 3〉과 〈假說 4〉는 각각 金融產業組織의 장기적 混合均衡과 世界金融產業組織의 궁극적인 同質化를 상정함으로써 장기균형을 묘사하고 있는 반면, 〈假說 5〉는 각국 금융산업이 서로 상이한 金融需要下에서 장기균형을 모색해 나가는 短期 및 中期的 過程으로서의 金融產業組織의 형태를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假說 5〉에서 상정하는 兼業이나 專業銀行制度는 〈假說 3〉과 〈假說 4〉의 장기균형과 서로 배치되지는 않는다.

1) 이 假說은 Stigler(1951)와 Baumol, Panzar, and Willig(1982)에 기초하여 유도되고 있는데 본 인용은 원 논문의 내용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였음. 원 논문의 p. 188 참조.

2) 左承喜(1991a), pp. 188~189 참조. 假說의 순번은 원 논문을 따랐음.

2. 金融構造分析의 意義

經濟發展과 金融의 役割에 관한 문헌들은 대체로 전체금융의 심화정도와 經濟發展과의 正의 相關關係를 강조함으로써, 금융심화의 내용보다는 전체 金融規模의 확대심화에 보다 관심을 두고 있다. 예컨대, Shaw(1973), McKinnon(1973)과 World Bank(1989) 등은 金融抑壓(financial repression)下의 경제는 金利自由化를 포함하는 金融自律化를 통해 금융의 심화를 도모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문헌들은 개발도상국들의 金融自律化와 金融改革을 촉진시키고 나아가서는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국의 金融自律化와 金融改革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金融制度의 改編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금융업무의 領域規制를 통해 금융구조의 내용을 규정해 나가야 하는 微視的 構造調整政策도 같이 추진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微視金融産業構造調整政策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금융제도의 安全性과 금융산업의 效率性을 提高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금융업무의 내용 및 영역에 대한 規制政策은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도 금융산업내의 競爭과 效率을 極大化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금융구조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은 바로 微視金融産業構造調整政策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 할 것이다.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銀行業과 證券業의 兼業與否에 대한 정책도 兼業이 은행업무의 安全性 및 健全性에 미칠 효과와 金融業務의 效率性에 미칠 효과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석은 우선 業務領域에 대한 金融規制가 없는 경우 자연적으로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생성될,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 금융업무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외부적인 金融規制가 초래할 수 있는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체금융의 심화가 가져다 주는 經濟發展에의 기여측면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금융구조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本稿에서의 金融構造決定要因에 대한 실증분석은 〈假說 1〉, 〈假說 3〉, 〈假說 4〉 및 〈假說 5〉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假說 2〉가 시사하는 보다 미시적 측면에서의 金融業務의 兼業化與否를 결정하게 될 금융산업의 技術的 生産條件에 대한 분석은 시도되지 않고 있다[3]. 그리고 金融構造를 直接金融과 間接金融의 비중을 가지고 측정함으로써 실제로는 경제의 直間接金融比重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本稿에서의 분석은 주어진 금융산업의 技術的 生産條件, 즉 潛在的 規模 및 範圍의 經濟性下에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잠재적 경제성이 실현될 수 있는 여건, 즉 市場規模의 크기가 巨視的 金融構造인 直間接金

3) 微視的 側面에서의 금융산업의 規模 및 範圍의 經濟에 대한 분석은, 은행에 대해서는 左承喜外(1991)의 第VI章에서 일부 분석이 시도되었고, 현재 추가적인 분석이 진행중에 있으며, 相互信用金庫에 대한 분석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微視分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자와 접촉해 주기 바람.

融의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은 적어도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兼業主義制度의 도입, 즉 은행업무와 증권업무의 兼業問題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책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I. 假說檢證模型의 設定

〈假說 1〉의 검증을 위한 모형은 다음과 같다.

$$y=\alpha_1+\beta_1\ TF+\gamma_1\ MR+\delta_1\ DR\ \cdots(1)$$

여기서 변수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y : DF/IDF, DF/TF, IDF/TF 등 금융구조측정변수
DF : 직접금융규모
IDF : 간접금융규모
TF : 총금융시장규모
MR : 공개시장금리
DR : 예금금리

式 (1)에서 y는 直·間接金融比率, 直接金融의 比重, 間接金融의 比重 등 금융구조를 측정하며, TF는 전체금융시장(및 需要)의 규모를 측정하는 변수이다. 그리고 MR과 DR은 각각 直接金融市場과 間接金融市場의 실질수익률 수준을 측정하는 변수이다. α_1, β_1, γ_1 그리고 δ_1은 추정대상이 되는 계수이다.

式 (1)은 金融市場의 規模와 金融構造間의 일정한 관계를 상정하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가설검증은 주로 TF의 영향유무에 의해서 판별하게 된다. 즉 〈假說 1〉의 妥當性與否는 부호에 관계없이 단지 β_1의 有意性與否에 의해서 검증된다. 경제여건에 따라 국가간에 y의 값이 다르고 금융시장의 확대에 따른 영향도 상이하겠지만, 어느 경우든 TF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 방향에 관계없이 이는 〈假說 1〉을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편 〈假說 1〉을 검증하기 위한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국별 시계열·크로스섹션결합자료를 이용하여 式 (1)을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합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간의 金融制度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기 때문에 式 (1)을 다소 변형한 다음의 式 (2)를 추정하였다.

$$y=\alpha_2+\beta_2 TF+\gamma_2 MR+\delta_2 DR+\eta_2 DUM \cdots\cdots(2)$$

여기서 DUM은 金融制度가 미치는 효과를 반영하기 위한 더미변수로서 兼業主義國家를 1로, 專業主義國家를 0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도 α_2, β_2, γ_2, δ_2 그리고 η_2는 추정대상이 되는 계수이다. 이 경우도 β_2의 추정치가 유의한 값을 갖는다면 〈假說 1〉을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假說 3〉은 다양한 금융자산을 포괄하는 金融構造의 장기균형이 존재함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가설에 따르면, 만일 直接金融과 間接金融 두가지의 금융방식을 상정할 경우, 어느 방식도 배타적으로 압도하지 않고 두 금융방식이 일정한 비율로 공존하는 混合均衡이 존재하게 되며, 이에 대한 검증은 直·間接金融比率이 금융시장규모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均衡比率로 수렴하는가의 여부를 검증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假說 3〉의 검증을 위해서는 式 (2)의 변형된 모형인 다음의 式 (3)을 국별 시계열·크로스섹션결합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left| y-y^* \right| = \alpha_3 + \beta_3 TF + \gamma_3 MR + \delta_3 DR + \eta_3 DUM \quad \cdots\cdots (3)$$

여기서 y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DF/IDF (直·間接金融比率), DF/TF (直接金融比重), IDF/TF (間接金融比重) 등 금융구조변수들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y^*는 시계열·크로스섹션결합자료를 이용해서 계산된 이들 변수들의 표본평균으로서 일종의 표본내 해당변수의 균형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α_3, β_3, γ_3, δ_3 그리고 η_3는 추정될 계수이다.

式 (3)에서 $\beta_3<0$이면, 각국의 y는 개별적으로는 TF가 확대됨에 따라 正(式 (1)의 $\beta_1>0$)이나 負(式 (1)의 $\beta_1<0$)의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나라의 y는 y^*로 수렴하게 된다. 이와 같이 DF/IDF, DF/TF 그리고 IDF/TF 모두가 일정한 陽(+)의 數로 수렴한다면 이는 DF도 IDF도 일방적으로 압도하지 않고 서로가 一定比率로 공존하게 됨을 시사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金融市場規模가 확대됨에 따라 金融構造는 直·間接金融이 一定比率로 존재하는 혼합균형수준으로 수렴해 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假說 4〉의 경우는 〈假說 3〉이 검증되면 자동적으로 검증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金融市場의 規模가 확대됨에 따라 각국 금융구조가 공통의 均衡構造를 시현하게 된다면 이는 바로 〈假說 4〉를 지지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엄격한 검증방법은 되지 못하지만, 式 (2)의 추정결과가 유의한 β_2값을 보여준다면, 이 또한 〈假說 4〉를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즉 모든 나라들이 개별적으로는 서로 상이한 β_1값을 갖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유의한 공통의 β_2값을 가짐으로써 장기적으로는 金融構造와 金融市場規模間의 공통된 관계를 보여준다면, 이 또한 세계금융산업구조의 수렴 가능성을 시사한다 할 것이다.

〈假說 5〉는 國別 시계열·크로스섹션결합자료를 이용하여 DUM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logit)함수를 추정하여 검증하였다.

$$DUM = f(TF) \quad \cdots\cdots (4)$$

여기서 式 (4)의 로짓함수 예측결과 TF변수가 負(-)의 계수를 가지면 〈假說 5〉가 지지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즉 이 경우는 金融市場(需要)의 규모가 확대되어 금융발전의 정도가 높은 경제일수록 專業主義制度를 채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假說 5〉의 가장 직접적인 검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一國의 복잡한 金融制度를 단순히 더미변수에 의해 측정하는 데 따른 지나친 일반화로 인해 동 검증의 신뢰성이 그만큼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假說 5〉는 정부규제가 없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반면, 여기서 사용한 DUM변수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각국의 金融制度를 현실 정부규제의 내용에 의해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은 각국의 金融規制는 궁극적으로 피규제자인 金融産業 및 市場의 여건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최근 先進國, 특히 美國, 英國, 日本 등지의 兼業化趨勢는 〈假說 5〉와는 달리, 금융산업내의 金融革新과 이에 따른 기존의 專業化規制에 대한 회피움직임의 확대에 대한 대응의 결과로서 오히려 金融先進國이 보다 앞장서서 金融業務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궁극적으로 이들 금융산업들이 長期混合均衡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여기서 이러한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주요국 금융제도변화를 *DUM*변수를 통해 감안함과 동시에 金融革新 등 최근의 兼業化를 촉진시키는 요인이라고 판단되는 새로운 변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로짓분석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의 검증은 이러한 변화들을 통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검증결과가 偏倚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兼業化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선진국들의 금융구조는 아직은 기존의 金融制度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나 英國 등 완전히 兼業化로 이행한 경우도 자료가 「빅뱅」이전자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偏倚의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表 1〉 變數內容 및 資料出處

	變數의 內容	資 料 出 處
TF	경제내의 총금융자산의 연간 증가액	· OECD, *Financial Statistics,* PART II. · 한국의 경우 金融資產에 대한 자료는 1990년 『國民計定』을 사용. · 個別國家의 회귀분석에서는 自國通貨 표시, 결합표본에서는 달러로 환산.
DF	경제내의 총보유유가증권(단기채권+장기채권+주식)의 연간 증가액	· OECD, *Financial Statistics*, PART II. · 한국의 경우 金融資產에 대한 자료는 1990년 『國民計定』을 사용. · 個別國家의 회귀분석에서는 自國通貨 표시, 결합표본에서는 달러로 환산.
IDF	· 경제내의 총보유대출의 연간 증가액 · 경제내의 총보유예금(현금+예금)의 연간 증가액	· OECD, *Financial Statistics*, PART II. · 한국의 경우 金融資產에 대한 자료는 1990년 『國民計定』을 사용. · 個別國家의 회귀분석에서는 自國通貨 표시, 결합표본에서는 달러로 환산.
GNP	경상GNP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MR	물가(CPI) 및 환율변동률을 감안한 實質市場金利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DR	물가(CPI) 및 환율변동률을 감안한 實質預金金利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M2	M2 통화량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P	소비자물가지수(CPI)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IV. 實證分析

1. 使用變數의 選擇 및 그 內容에 대한 說明

本稿의 實證分析은 韓國, 美國, 日本,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獨逸, 이탈리아, 英國, 네덜란드, 스페인 그리고 스웨덴 등 12개국의 국별 시계열자료와 이들 자료를 결합한 시계열·크로스섹션결합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式(1)~(4)의 검증모형의 추정은 모형내의 이론상의 변수를 실제로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예컨대, *TF, DF, IDF* 등 金融의 規模變數들의 가용성여부는 물론 이들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마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검증모형의 추정에 사용된 實際變數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변수의 內容 및 그 出處들에 대해서는 <表 1>에 요약하였다.

가. 金融市場의 規模

金融市場規模(*TF*)가 갖는 분석적 의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總需要의 크기를 반영하여, 전체금융산업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최대 금융서비스생산량을 제한함으로써, 금융산업이 갖는 潛在的 規模 및 範圍의 經濟의 실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데 있다 하겠다. 따라서 金融市場規模는 금융부문의 총금융서비스 생산규모를 나타내는 經濟의 實質 總金融資產殘額(stock)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國別資料의 제약때문에, 금융자산잔액에 대한 자료가 가용하지 않아 대신 資金循環表上의 총금융자산잔액의 연간 증가액(flow)을 規模變數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CPI로 나눈 금융자산의 實質增加額과 그렇지 않은 名目增加額을 모두 사용해 보았다[4]. 그리고 이 경우에는 모두 log를 취한 값을 사용하였다.

한편 기존의 經濟發展과 金融에 대한 문헌에서 제시되고 있는 소위 金融深化(financial deepening)의 측정지표인 金融聯關比率도 規模變數로 이용해 보았는데, 總名目金融資產增加의 對名目GNP比率과 名目M2의 對名目GNP比率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金融深化와 本稿에서 강조되는 전체금융시장의 규모는 개념상 서로 상이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金融深化의 척도는 金融資產規模를 對實物資產(편의상 對GNP) 比重으로 측정함으로써 金融의 실물경제규모에 대한 상대적 비중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를 통해 금융부문이 實物經濟의 운용을 얼마나 원활히 지원하고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5].

---

4) 本稿에서 이용한 OECD, *Financial Statistics*는 國別 資金循環表를 金融資產의 年間 變化額으로 발표하고 있어 금융자산의 증가액에 대한 자료만이 가능하였음. 그러나 한편 Shaw(1973)도 金融深化의 척도를 논함에 있어서 金融資產殘額(stock)은 물론 금융자산의 增減額(flow)과, 심지어는 국가간의 換率變動과 인플레를 감안한 實質金利水準도 금융심화의 척도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金融規模의 측정에 있어서는 實質金融規模가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pp. 4~9.

5) Shaw(1973)는 金融深化를 對非金融部門에 대한 金融部門의 상대적 실질성장률과 實質規模(The real rate of growth and the real size of the financial system relative to non-financial magnitudes)로 정의하고 있음. p. 3.

그러나 本稿에서 강조되는 금융규모는 이러한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전체 金融規模를 나타내는 절대적 規模를 의미하고 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對實物部門에 대한 금융의 상대적 비중이 아니라 금융부문 전체의 절대적 규모가 보다 정확하게 本稿에서 강조되는 금융산업의 (實質)生産規模를 반영할 것으로 사료된다. 어쨌든 여기서 시도되는 금융연관비율을 이용한 검증결과는 金融深化(金融聯關比率)가 金融構造決定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金融構造變數

本稿에서 주의깊게 관찰해 보고자 하는 金融構造의 측면은 최근의 金融制度改編論議나 世界金融産業의 變貌推移와 관련이 되는 금융의 증권화현상이다. 즉 金融市場規模의 변화가 金融의 證券化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의 분석을 통해, 일반적으로 金融市場規模와 金融(産業 및 業務) 構造間에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검증함은 물론, 金融證券化의 결정요인을 추출함으로써 앞으로의 금융산업정책 논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金融構造를 대변하는 변수로는 일국 금융에 있어서의 直接 및 間接金融比率을 택하였으며, 이 변수의 측정도 金融市場規模變數와 일관되게 이루어졌다.

우선 直接金融規模(DF)는 경제내에 존재하는 단기증권, 채권 그리고 주식의 전체 합이며, 間接金融規模(IDF)는 경제내의 總貸出과 總預金(현금포함)의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이들 변수는 시장규모변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연간 증감액(flow)을 가지고 측정하였다. 이에 따라 DF/TF, IDF/TF 그리고 DF/IDF변수도 금융자산잔액비율이 아니라, 각각의 증감액비율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式(1)~(4)는 원래의 가설이 시사하는 殘額(stock)이나 水準(level) 변수간의 관계가 아니라, 變化(flow나 change) 변수간의 관계로 전환되게 되며, 이 경우 수준변수간의 관계에 비해 R^2는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다. 金融制度變數

金融規制의 산물인 金融制度가 금융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金融市場規模가 금융제도의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기 위하여, 각국의 金融制度를 대변할 수 있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 DUM을 구성하였다.

동 더미변수는 은행의 證券業兼業을 허용하고 있는 兼業主義 銀行制度인 국가를 1로 하고, 은행과 증권업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專業主義 國家를 0으로 하고 있다. 각국의 은행제도에 대한 정보는 희소할 뿐만 아니라 일부 가용한 정보도 불완전하기 그지없는 형편이다. 예컨대, 같은 兼業主義라 하더라도 은행과 증권업의 통합정도는 국가에 따라 상이한데, 은행이 양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완전한 통합에서 子會社 형태의 業務兼營, 혹은 동일 持株會社 산하에 은행과 증권회사가 공존하는 형태 등 다양한 통합형태가 존재하고 있으며, 역으로, 표면적으로는 專業主義라 하더라도 여러가지 예외적인 방법 등을 통해 銀行業과 證券業과의 강한 업무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다.

우선 은행 자체내의 證券業務가 허용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 非銀行 子會社를 통한 證

〈表 2〉 國別 金融兼業形態와 國別 더미변수(專業 0, 兼業 1)

	銀行의 直接證券業兼營[1]	非銀行 子會社를 통한 證券業兼營[2]	持株會社(holding company)를 통한 證券業 兼營[3]	銀行業務와 證券業務의 통합정도[4]	*DUM* 變數
兼業制度					
프랑스	×			높음	1
독일	×			높음	1
이탈리아	×			높음	1
네덜란드	×			높음	1
스페인	×			높음	1
專業 및 混合制度					
벨기에		×		높음	1
스웨덴		×		높음[5]	1
캐나다		×		높음[5]	0
영국		×		높음[5]	0
일본		×		낮음	0
미국			×	낮음	0
한국		×		낮음	0

註 : 1) 은행이 직접 모든 小賣金融 및 證券業務 수행.
2) 은행이 非銀行 金融子會社 소유.
3) 한 持株會社가 은행과 비은행 금융회사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
4) 直接兼營 및 子會社, 持株會社를 통한 통합정도.
5) 최근 金融規制緩和로 은행 및 증권업무의 통합이 증가되고 있음. 그러나 캐나다와 영국은 표본기간중 대체로 專業主義的이었으며 통합정도가 약했음.

資料 : G. Bröker, *Competition in Banking,*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89, pp. 167~174.
Christine M. Cumming and Lawrence M. Sweet, "Financial Structure of the G-10 Countries: How Does the United States Compare?", *FRBNY Quarterly Review*, Winter 1987~88.
Litan, Robert E., *What Should Banks Do?,*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7, pp.56~57.

券業進出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업무진출정도가 높은 경우는 모두 兼業國家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英國이나 캐나다 등 최근에야 子會社를 통한 兼業을 허용한 경우에는 표본기간이 1970년대에서 1986 내지 1988년에 걸치고 있음을 감안하여 專業主義國家로 분류하였으며, 단지 持株會社形態만을 통한 증권업진출을 허용하고 있는 美國은 專業國家로 분류하였다. 韓國의 경우는 일부 은행의 直接證券投資나 子會社에 의한 증권업진출이 다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專業主義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專業國家로 분류하였다.

이상과 같은 專業과 兼業國家의 분류와 *DUM*변수의 구성내용은 〈表 2〉에 요약하였다.

2. 檢證結果에 대한 論議

式 (1)~(3)에 걸친 검증모형의 추정결과는 〈表 3〉에서 〈表 9〉에 걸쳐 요약하였다. 우선 式 (1)의 國家別 推定結果는 〈表 3〉에 제시하

였는데 이 경우에는 間接金融(*IDF*)을 貸出總額으로 측정하고 규모변수는 實質金融資產(*TF/P*)變數만 이용하였다[6]. 그 다음 式 (2)와 (3)의 추정결과를 間接金融(*IDF*)을 貸出總額으로 측정한 경우(表 4~表 6)와 預金總額으로 측정한 경우(表 7~表 9)로 나누어, 규모변수를 기준으로 實質金融資產, 名目金融資產 그리고 金融深化變數의 순서에 따라 〈表 4〉~〈表 9〉에 정리하였다. 그런데 實質總金融資產과 名目總金融資產을 시장규모변수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추정결과를 완전하게 모두 보고했으나, 金融深化變數를 市場規模變數의 대용변수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지면을 절약하기 위해 단지 규모변수와 더미변수에 대한 추정계수 및 그 유의성과 회귀식의 $\bar{R}^2$ 등만을 보고하였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假說 5〉의 검증모형인 式 (4)의 추정결과는 〈表 10〉에 보고하였다.

한편 자료가 주로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韓國과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질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계열과 크로스섹션자료결합시에는 韓國을 제외한 경우와 포함한 경우의 결과를 따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표본기간은 국가별로 서로 상이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1970~88년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시계열과 크로스섹션자료결합에 있어서는 서로 표본기간이 상이한 국별 시계열자료를 그대로 결합한 경우와 可用性이 낮은 국별자료를 기준으로 모든 나라의 시계열표본기간을 1979~88기간으로 동일하게 하여 결합한 경우의 두가지 결합표본을 사용하였다.

가. 〈假說 1〉에 대한 檢證

式 (1)은 OLS추정방법(오차항의 시계열상관이 높은 경우는 Cochrane-Orcutt方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는데, 〈表 3〉에 제시한 국별 추정결과는 대체로 〈假說 1〉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7]. 우선 결과를 보면 이미 기대했던 바와 같이 증감액과 비율간의 관계를 추정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낮은 $\bar{R}^2$ 문제와 일부 국가의 경우 規模變數의 有意性이 너무 낮다는 점을 제외하면 표본내의 다수 국가의 경우는, 規模變數의 계수의 부호가 個別國家에 따라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規模變數가 金融構造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國家別로 金融市場規模變數의 효과를 보면 OECD국가들의 경우는 대체로 *DF/TF*에 대해서는 負(-)의 효과를, *IDF/TF*에 대해서는 陽(+)의 효과를, *DF/IDF*에 대해서는 負(-)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韓國의 경우는 이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마도 선진국들의 경우 대체로 直接金融의 비중이 이미 너무 비대화되어 있는 반면, 韓國의 경우는 반대로 直接金融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수준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다음으로 式 (2)를 이용한 〈假說 1〉의 검증결과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여기서 式 (2)도

6) 間接金融(*IDF*)을 預金總額으로 측정한 경우와 名目金融資產(*TF*)과 金融深化變數를 규모변수로 이용한 경우의 式 (1)의 추정결과는 左承喜(1991*b*)를 참조하기 바람. 이 결과들도 대체로 〈表 3〉의 결과와 유사함.

7) 그러나 國別分析의 경우 시계열자료가 짧기 때문에 소표본(small sample)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아, 이 결과에 의한 統計的 推論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OLS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는데, 오차항의 시계열상관이 높은 경우에는 Cochrane-Orcutt 方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결과는 〈表 4〉~〈表 9〉에 제시하였는데 〈表 4〉~〈表 6〉은 貸出總額을, 〈表 7〉~〈表 9〉는 預金總額을 間接金融(*IDF*)變數로 이용한 결과들이다. 우선 韓國을 제외한 경우를 먼저 보면, 實質 및 名目金融資産變數는 모든 경우 결합된 표본의 크기에도 관계없이 대체로 유의하게 *DF/TF*에는 負(-)의 효과를, *IDF/TF*에는 陽(+)의 효과를, 그리고 *DF/IDF*에는 *IDF*를 대출과 예금으로 측정한 모두의 경우 負(-)의 효과를 미치고 있다[8]. 그러나 金融深化變數의 경우는 결과가 표본에 따라 그리고 *TF/GNP*와 *M2/GNP*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韓國을 포함한 경우는 거의 모든 경우 결과가 대체로 악화되고 있지만, 이 중에서는 역시 實質金融資産變數를 사용한 경우가 그런대로 유의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부호유형도 대체로 앞의 유형과 유사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들 경우에 있어, 規模變數 이외의 변수들의 효과를 보면 국별 금융제도더미변수(*DUM*)는 모든 경우에 있어 대단히 유의한 효과를 미치고 있는데, 부호유형이 *DF/TF*에는 負(-)의 효과, *IDF/TF*에는 陽(+)의 효과, 그리고 *DF/IDF*에는 負(-)의 효과를 미치고 있어, 기대했던 대로 兼業主義國家일수록 專業主義國家에 비해 상대적으로 間接金融의 비중이 높고 直接金融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實質市場金利(*MR*)의 상승은 直接金融比重을 높이고 역으로 預金金利(*DR*)의 상승은 間接金融의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또한 기대에 부합되는 결과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金融市場規模의 확대는 각국 金融構造 각각에 대해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이들 나라들의 金融構造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韓國은 약간 예외적인 것으로 관찰되고 있지만, 표본내의 OECD국가들의 경우 개별적으로는 물론, 공통적으로도 金融市場의 規模擴大는 대체로 直接金融의 비중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와 같이 式 (1)과 (2)의 추정결과는 대체로 〈假說 1〉을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金融深化變數는 일관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나. 〈假說 3〉에 대한 檢證

〈假說 3〉은 式 (3)의 추정결과를 이용해서 검증할 수 있는데, 추정결과는 〈表 4〉~〈表 9〉에 걸쳐 式 (2)의 추정결과와 같이 보고하였다. 式 (3)의 추정도 OLS추정방법을 이용하였는데 오차항의 시계열상관이 높은 경우는 Cochrane-Orcutt方法을 이용하였다. 우선 분석결과에 의하면, 韓國을 제외한 경우 표본에 관계없이 實質 및 名目金融資産規模의 효과가 모든 金融構造測定變數의 $|y-y^*|$값에 대해 강력하고 유의한 負(-)의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여기에 韓國을 포함하더라도 規模變數의 유의성이 다소 떨어질 뿐 전체적인 부호유형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따

8) 間接金融規模(*IDF*)를 預金總額으로 측정한 경우는 지면절약을 위해 *IDF/TF*에 대한 결과보고는 생략하였는데, 이 결과는 貸出總額을 이용한 경우와 대동소이하였음.

〈表 3〉 式 (1)의 推定結果 : 實質金融資產規模와 直·間接(貸出) 金融構造와의 關係

	從屬變數[1]	說明變數				$\bar{R}^2$	DW	$AR\ 1$ ρ	標本數 (標本期間)
		Constant	log(TF/P)	MR	DR				
한 국	DF/TF	0.25**	0.11	-0.84E-02	0.98E-02	0.20	1.93		15
		(2.81)	(1.38)	(-0.56)	(0.70)				(74~88)
	IDF/TF	0.12	-0.12*	0.18E-01	-0.16E-01	0.12	1.56		
		(1.63)	(-1.81)	(1.47)	(-1.45)				
	DF/IDF	1.48**	1.06**	-0.70E-01	0.73E-01	0.47	2.03		
		(3.65)	(2.83)	(-1.05)	(1.17)				
미 국	DF/TF	0.50*	-0.84E-01	0.15E-01	-0.91E-03	0.07	1.55		15
		(1.95)	(-0.86)	(0.73)	(-0.74E-01)				(74~88)
	IDF/TF	-0.37E-01	0.13	-0.24E-01	0.10E-01	0.12	1.95		
		(-0.18)	(1.77)	(-1.49)	(1.03)				
	DF/IDF	3.60	-1.01	0.15	-0.57E-01	-	2.00		
		(1.72)	(-1.29)	(0.93)	(-0.57)				
일 본	DF/TF	0.31**	-0.69E-01**	-0.77E-02	0.94E-01**	0.60	1.27		15
		(10.57)	(-4.61)	(-1.75)	(2.28)				(74~88)
	IDF/TF	0.34**	-0.30E-01*	0.24E-02	-0.34E-02	0.59	1.41		
		(10.38)	(-1.79)	(0.48)	(-0.74)				
	DF/IDF	1.02**	-0.19**	-0.28E-01	0.37E-01*	0.50	1.05		
		(7.15)	(-2.79)	(-1.35)	(1.90)				
벨 기 에	DF/TF	0.30**	-0.18**	-0.56E-02	0.60E-02	0.54	2.31	0.77**	19
		(5.68)	(-3.89)	(-0.65)	(0.73)			(5.86)	(70~88)
	IDF/TF	0.10**	0.48E-01	0.59E-02	-0.52E-02	0.58	1.93	0.80**	
		(2.30)	(1.30)	(0.87)	(-0.80)			(5.60)	
	DF/IDF	-0.50E-01	-5.76	1.16	-1.14	-	1.69		
		(-0.19E-01)	(-1.61)	(1.06)	(-1.10)				
캐 나 다	DF/TF	0.41**	-0.13	0.38E-01	-0.51E-01**	0.41	1.85		17
		(4.54)	(-1.19)	(1.63)	(-2.36)				(70~86)
	IDF/TF	0.36E-01	0.13**	-0.11E-01	0.12E-01	0.52	1.82		
		(0.91)	(2.60)	(-1.07)	(1.26)				
	DF/IDF	-31.50	44.58	12.03	-9.76	-	1.31		
		(-0.89)	(1.04)	(1.32)	(-1.16)				
프 랑 스	DF/TF	0.77**	-0.23**	-0.28E-02	0.59E-02	0.84	2.27	0.90**	19
		(5.16)	(-4.88)	(-0.44)	(1.02)			(7.39)	(70~88)
	IDF/TF	-0.41E-01	0.20**	0.10E-01	-0.15E-01*	0.56	2.13	0.67**	
		(-0.37)	(3.06)	(1.22)	(-1.83)			(4.13)	
	DF/IDF	4.01**	-2.06**	0.30E-01	0.62E-02	0.78	2.62	0.72**	
		(5.72)	(-5.04)	(0.56)	(0.12)			(5.34)	
독 일	DF/TF	0.32**	-0.10*	0.10**	-0.10**	0.46	1.98		16
		(5.86)	(-1.79)	(3.87)	(-3.83)				(73~88)
	IDF/TF	0.23**	0.16*	-0.12**	0.11**	0.63	1.76		
		(3.27)	(2.12)	(-3.42)	(3.26)				
	DF/IDF	1.07**	-0.43	0.54**	-0.52**	0.52	1.67		
		(3.32)	(-1.21)	(3.29)	(-3.18)				
이탈리아	DF/TF	0.62**	-0.20*	-0.96E-02	0.10E-01	0.72	2.53		11
		(3.36)	(-2.24)	(-0.50)	(0.57)				(78~88)
	IDF/TF	-0.71E-01	0.19	0.31E-01	-0.32E-01	0.16	1.79		
		(-0.20)	(1.14)	(0.91)	(-0.98)				
	DF/IDF	2.91	-1.09	-0.75E-01	0.88E-01	0.44	1.86		
		(1.50)	(-1.13)	(-0.38)	(0.47)				

〈表 3〉의 계속

	從屬變數[1]	說明變數				$\bar{R}^2$	DW	$AR\ 1$ ρ	標本數 (標本期間)
		Constant	log(TF/P)	MR	DR				
영 국	DF/TF	0.25** (3.54)	-0.59E-01 (-1.21)	0.81E-01 (1.75)	-0.76E-02 (-1.47)	0.34	2.56		16 (71~86)
	IDF/TF	0.37E-01 (0.29)	0.16* (1.88)	-0.57E-02 (-0.69)	0.18E-02 (0.20)	0.31	1.63		
	DF/IDF	1.08** (2.75)	-0.26 (-0.99)	0.48E-01* (1.94)	-0.40E-01 (-1.45)	0.37	2.72		
네덜란드	DF/TF	0.26** (3.84)	-0.19E-01 (-0.28)	0.10E-01 (0.49)	-0.98E-02 (-0.47)	-	1.86		11 (78~88)
	IDF/TF	0.27** (4.72)	-0.10 (-1.76)	-0.15E-01 (-0.81)	0.16E-01 (0.91)	0.27	2.44		
	DF/IDF	1.02 (1.70)	0.21 (0.34)	0.10 (0.52)	-0.10 (-0.56)	-	2.10		
스페인	DF/TF	0.51** (3.42)	-0.17** (-2.85)	-0.63E-01 (-1.42)	0.63E-01 (1.45)	0.53	2.13		10 (79~88)
	IDF/TF	0.29* (2.11)	0.21** (3.26)	-0.41E-01 (-1.00)	0.37E-01 (0.92)	0.68	2.82		
	DF/IDF	0.61** (2.58)	-0.32** (-3.32)	-0.39E-01 (-0.55)	0.41E-1 (0.61)	0.60	2.84		
스웨덴	DF/TF	0.28** (11.70)	-0.15** (-3.12)	-0.12E-01 (-0.58)	0.10E-01 (0.50)	0.59	2.14		12 (77~88)
	IDF/TF	0.38** (8.12)	0.13 (1.38)	0.39E-01 (0.92)	-0.35E-01 (-0.85)	0.22	1.79		
	DF/IDF	0.80** (6.33)	-0.68** (-2.67)	-0.12 (-1.06)	0.11 (0.99)	0.49	2.43		

註 : 1) IDF = 대출총액.
2) ( ) 안은 t값.
3) * 10% 수준에서 有意.
** 5% 수준에서 有意.

라서 이 결과는 〈假說 3〉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金融深化變數를 規模變數로 이용한 경우는 규모변수계수의 유의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國別金融制度 더미변수도 거의 모든 경우에 표본과 규모변수가 달라짐에 관계없이 負(-)의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兼業主義 金融制度가 일반적으로 專業制度에 비해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個別金融主體들이 보다 자유롭게 均衡金融構造를 지향해 나갈 수 있음으로 해서 일국경제의 均衡金融構造로의 이행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한편 金利變數들은 그 유의성은 대체로 낮지만 市場金利(MR)는 陽(+)의 부호를, 그리고 預金金利(DR)는 負(-)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앞의 式 (1)과 式 (2)의 결과에서 金融規模變數가 直接金融比重에 負(-)의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결과와 연결해서 보면, 아마도 세계금융은 평균적으로 直接金融比重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상황, 즉 과도하게 證券化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表 4〉 式 (2)와 (3)의 推定結果 : 實質金融資産規模와 直·間接(貸出) 金融構造와의 關係
(시계열·크로스섹션結合資料)

	從屬變數[1]	說明變數					$\bar{R}^2$	DW	$AR\ 1$ ρ	標本
		Constant	$\log(TF/P)$	MR	DR	DUM				
結合標本 I[2] : 한국제외	DF/TF	0.39**	-0.76E-01**	0.65E-02	-0.52E-02	-0.11**	0.50	2.12	0.60**	161
		(11.42)	(-4.75)	(1.62)	(-1.35)	(-3.50)			(9.28)	
	$\lvert y_1-y_1^* \rvert$	0.13**	-0.21E-01**	0.50E-02	-0.45E-02	-0.46E-01**	0.20	2.06	0.44**	
		(5.88)	(-2.00)	(1.62)	(-1.51)	(-2.18)			(6.07)	
	IDF/TF	0.12**	0.55E-01**	-0.36E-02	0.15E-02	0.17**	0.62	2.19	0.70**	
		(3.29)	(3.30)	(-0.98)	(0.42)	(5.26)			(11.52)	
	$\lvert y_2-y_2^* \rvert$	0.14**	-0.35E-01**	0.17E-02	-0.15E-02	-0.16E-01	0.33	2.12	0.48**	
		(6.44)	(-3.42)	(0.60)	(-0.54)	(-0.79)			(6.83)	
	DF/IDF	6.95**	-2.43*	0.58	-0.53	-5.74**	0.01	1.94		
		(2.63)	(-1.89)	(1.21)	(-1.16)	(-2.16)				
	$\lvert y_3-y_3^* \rvert$	8.54**	-2.87**	0.67	-0.63	-7.15**	0.03	1.99		
		(3.33)	(-2.30)	(1.45)	(-1.41)	(-2.78)				
結合標本 I[2] : 한국포함	DF/TF	0.30**	-0.33E-01**	0.19E-03	0.80E-03	-0.48E-01	0.46	2.14	0.69**	176
		(9.23)	(-2.32)	(0.48E-01)	(0.21)	(-1.48)			(12.21)	
	$\lvert y_1-y_1^* \rvert$	0.11**	-0.13E-01	0.37E-02	-0.34E-02	-0.29E-01**	0.19	2.05	0.43**	
		(6.27)	(-1.54)	(1.31)	(-1.27)	(-1.66)			(6.27)	
	IDF/TF	0.18**	0.14E-01	0.39E-03	-0.20E-02	0.13**	0.58	2.24	0.75**	
		(5.32)	(1.05)	(0.11)	(-0.59)	(4.29)			(14.23)	
	$\lvert y_2-y_2^* \rvert$	0.10**	-0.20E-01**	0.47E-03	-0.26E-03	0.13E-01	0.32	2.14	0.54**	
		(5.60)	(-2.33)	(0.17)	(-0.10)	(0.70)			(8.21)	
	DF/IDF	3.91*	-0.94	0.15	-0.12	-2.46	-	1.91		
		(1.86)	(-0.92)	(0.36)	(-0.31)	(-1.20)				
	$\lvert y_3-y_3^* \rvert$	5.08**	-1.18	0.18	-0.16	-3.42*	-	1.96		
		(2.48)	(-1.18)	(0.44)	(-0.42)	(-1.72)				
結合標本 II[3] : 한국제외	DF/TF	0.38**	-0.87E-01**	0.22E-01**	-0.19E-01**	-0.10**	0.37	2.03	0.48**	88
		(13.22)	(-5.90)	(4.59)	(-4.44)	(-4.22)			(4.47)	
	$\lvert y_1-y_1^* \rvert$	0.12**	-0.20E-01**	0.75E-02*	-0.63E-02*	-0.51E-01**	10.08	1.59		
		(6.13)	(-2.12)	(1.90)	(-1.69)	(-2.53)				
	IDF/TF	0.13**	0.76E-01**	-0.22E-01**	0.19E-01**	0.17**	0.38	1.93		
		(4.49)	(5.69)	(-3.99)	(3.75)	(6.27)				
	$\lvert y_2-y_2^* \rvert$	0.13**	-0.35E-01**	-0.29E-02	0.29E-02	-0.96E-03	0.15	1.61		
		(6.51)	(-3.64)	(-0.73)	(0.77)	(-0.47E-01)				
	DF/IDF	9.58*	-3.46	0.80	-0.74	-8.40*	-	1.98		
		(1.85)	(-1.45)	(0.81)	(-0.79)	(-1.67)				
	$\lvert y_3-y_3^* \rvert$	14.20**	-4.85**	0.96	-0.90	-12.38**	0.04	2.01		
		(2.90)	(-2.14)	(1.02)	(-1.02)	(-2.60)				
結合標本 II[3] : 한국포함	DF/TF	0.31**	-0.56E-01**	0.15E-01**	-0.13E-01**	-0.58E-01**	0.20	2.24	0.57**	96
		(9.50)	(-3.71)	(3.24)	(-3.00)	(-2.39)			(5.88)	
	$\lvert y_1-y_1^* \rvert$	0.10**	-0.11E-01**	0.49E-02	-0.39E-02	-0.31E-01**	0.05	1.94		
		(6.06)	(-1.38)	(1.39)	(-1.18)	(-1.92)				
	IDF/TF	0.21**	0.32E-01**	-0.81E-02	0.63E-02	0.77E-01**	0.13	1.51		
		(7.50)	(2.54)	(-1.45)	(1.19)	(3.02)				
	$\lvert y_2-y_2^* \rvert$	0.12**	-0.24E-01**	-0.71E-02**	0.71E-02**	0.13E-01	0.17	1.96	0.25**	
		(6.70)	(-2.71)	(-2.09)	(2.26)	(0.78)			(2.29)	
	DF/IDF	5.56	-1.34	0.14	-0.11	-3.60	-	1.95		
		(1.29)	(-0.70)	(0.17)	(-0.13)	(-0.93)				
	$\lvert y_3-y_3^* \rvert$	0.90**	-2.06**	0.10	-0.88E-01	-6.09*	-	1.98		
		(2.15)	(-1.12)	(0.12)	(-0.11)	(-1.64)				

註 : 1) $y_1=DF/TF$, $y_2=IDF/TF$, $y_3=DF/IDF$, $y_1^*=(DF/TF)^*$, $y_2^*=(IDF/TF)^*$, $y_3^*=(DF/IDF)^*$, IDF=대출총액.
2) 結合標本 I은 모든 국가의 이용가능한 자료를 모두 결합한 결과.
3) 結合標本 II는 표본의 공통기간(1979~86) 자료를 결합한 결과.
4) ( ) 안은 t값.
5) * 10% 수준에서 有意.
** 5% 수준에서 有意.

〈表 5〉 式 (2)와 (3)의 推定結果 : 名目金融資産規模와 直·間接(貸出) 金融構造와의 關係
(시계열·크로스섹션結合資料)

	從屬變數[1]	說明變數					$\bar{R}^2$	DW	$AR\ 1$ ρ	標本
		Constant	log TF	MR	DR	DUM				
結合標本 I[2] : 한국제외	DF/TF	0.38**	-0.20E-01**	0.58E-02	-0.48E-02	-0.51E-01	0.43	2.09	0.62**	161
		(4.53)	(-1.37)	(1.36)	(-1.17)	(-1.58)			(9.65)	
	$\lvert y_1-y_1^* \rvert$	0.18**	-0.15E-01*	0.54E-02*	-0.48E-02	-0.39E-01**	0.20	2.05	0.42**	
		(3.52)	(-1.72)	(1.74)	(-1.62)	(-1.99)			(5.75)	
	IDF/TF	0.13	0.10E-01	-0.27E-02	0.85E-03	0.14**	0.60	2.24	0.76**	
		(0.61)	(0.74)	(-0.72)	(0.23)	(4.29)			(13.34)	
	$\lvert y_2-y_2^* \rvert$	0.23**	-0.27E-01**	0.22E-02	-0.18E-02	-0.41E-02	0.32	2.12	0.46**	
		(4.74)	(-3.19)	(0.76)	(-0.67)	(-0.21)			(6.39)	
	DF/IDF	11.54*	-1.50	0.62	-0.55	-4.53*	-	1.96		
		(1.73)	(-1.31)	(1.26)	(-1.19)	(-1.78)				
	$\lvert y_3-y_3^* \rvert$	14.09**	-1.79	0.72	-0.66	-5.76**	0.01	2.01		
		(2.18)	(-1.61)	(1.50)	(-1.45)	(-2.33)				
結合標本 I[2] : 한국포함	DF/TF	0.24**	0.29E-02	0.16E-02	-0.86E-03	-0.24E-01	0.45	2.13	0.68**	176
		(3.65)	(0.24)	(0.41)	(-0.22)	(-0.76)			(11.97)	
	$\lvert y_1-y_1^* \rvert$	0.15**	-0.11E-01	0.40E-02	-0.37E-02	-0.26E-01	0.19	2.04	0.42**	
		(3.76)	(-1.55)	(1.45)	(-1.38)	(-1.59)			(6.06)	
	IDF/TF	0.24**	0.96E-02	-0.91E-04	-0.13E-02	0.13**	0.58	2.26	0.79**	
		(3.73)	(-0.87)	(-0.26E-01)	(-0.39)	(4.16)			(15.87)	
	$\lvert y_2-y_2^* \rvert$	0.16**	-0.16E-01**	0.68E-03	-0.42E-03	0.19	0.32	2.14	0.52**	
		(3.95)	(-2.21)	(0.25)	(-0.16)	(1.10)			(7.86)	
	DF/IDF	4.89	-0.42	0.20	-0.17	-2.04	-	1.92		
		(0.95)	(-0.46)	(0.50)	(-0.44)	(-1.02)				
	$\lvert y_3-y_3^* \rvert$	6.59	0.58	0.24	-0.22	-2.92	-	1.96		
		(1.31)	(-0.65)	(0.61)	(-0.58)	(-1.50)				
結合標本 II[3] : 한국제외	DF/TF	0.80**	-0.95E-01**	0.21E-01**	-0.18E-01**	-0.10**	0.35	2.08	0.48**	88
		(8.32)	(-5.70)	(4.53)	(-4.29)	(-4.19)			(4.47)	
	$\lvert y_1-y_1^* \rvert$	0.23**	-0.23E-01*	0.74E-02*	-0.62E-02*	-0.55E-01**	0.09	1.88		
		(3.81)	(-2.33)	(1.90)	(-1.67)	(-2.69)				
	IDF/TF	-0.18**	0.73E-01**	-0.21E-01**	0.18E-01**	0.17**	0.34	1.88		
		(-2.12)	(5.08)	(-3.80)	(3.50)	(5.90)				
	$\lvert y_2-y_2^* \rvert$	0.30**	-0.38E-01**	-0.30E-02	0.32E-02	-0.62E-02	0.16	1.63		
		(4.96)	(-3.77)	(-0.77)	(0.86)	(-0.30)				
	DF/IDF	22.43	-3.07	0.77	-0.70	-8.04	-	1.97		
		(1.44)	(-1.21)	(0.78)	(-0.75)	(-1.54)				
	$\lvert y_3-y_3^* \rvert$	35.18**	-4.80**	0.92	-0.85	-12.53**	0.03	2.01		
		(2.40)	(-2.01)	(0.99)	(-0.97)	(-2.54)				
結合標本 II[3] : 한국포함	DF/TF	0.55**	-0.55E-01**	0.14E-01**	-0.11E-01**	-0.54E-01**	0.19	2.25	0.57**	96
		(6.01)	(-3.39)	(2.97)	(-2.63)	(-2.21)			(5.81)	
	$\lvert y_1-y_1^* \rvert$	0.16**	-0.12E-01	0.46E-02	-0.36E-02	-0.32E-01**	0.05	1.94		
		(3.33)	(-1.52)	(1.31)	(-1.08)	(-2.00)				
	IDF/TF	0.10	0.27E-01**	-0.83E-02	0.64E-02	0.74E-01**	0.11	1.48		
		(1.26)	(2.05)	(-1.46)	(1.19)	(2.84)				
	$\lvert y_2-y_2^* \rvert$	0.23**	-0.25E-01**	-0.76E-02**	0.77E-02**	0.13E-01	0.17	1.96	0.24**	
		(4.34)	(-2.73)	(-2.22)	(2.42)	(0.81)			(2.18)	
	DF/TF	9.07	-1.93	0.17	-0.13	-3.32	-	1.95		
		(0.75)	(-0.47)	(0.20)	(-0.17)	(-0.84)				
	$\lvert y_3-y_3^* \rvert$	16.66	-1.84	0.10	-0.85E-01	-5.99	-	1.98		
		(1.44)	(-0.96)	(0.13)	(-0.11)	(-1.59)				

註 : 1) $y_1=DF/TF$, $y_2=IDF/TF$, $y_3=DF/IDF$, $y_1^*=(DF/TF)^*$, $y_2^*=(IDF/TF)^*$, $y_3^*=(DF/IDF)^*$, IDF=대출총액.
2) 結合標本 I은 모든 국가의 이용가능한 자료를 모두 결합한 결과.
3) 結合標本 II는 표본의 공통기간(1979~86) 자료를 결합한 결과.
4) ( ) 안은 t값.
5) * 10% 수준에서 有意.
** 5% 수준에서 有意.

〈表 6〉 式 (2)와 (3)의 推定結果 : 金融深化와 直·間接(貸出) 金融構造와의 關係
(시계열·크로스섹션結合資料)

	從屬變數[1]	說明變數		$\bar{R}^2$	DW	AR 1 ρ	說明變數		$\bar{R}^2$	DW	AR 1 ρ	標本
		TF/GNP	DUM				M2/GNP	DUM				
結合標本 Ⅰ[2] : 한국제외	DF/TF	-0.19** (-3.19)	-0.29E-01 (-0.94)	0.46	2.18	0.67** (11.07)	-0.39E-01 (-0.42)	-0.35E-01 (-1.14)	0.43	2.10	0.64** (10.03)	161
	$\lvert y_1-y_1^* \rvert$	-0.99E-01** (-2.14)	-0.22E-01 (-1.27)	0.21	2.05	0.43** (6.03)	-0.62E-01 (-1.23)	-0.24E-01 (-1.43)	0.19	2.03	0.39** (5.36)	
	IDF/TF	0.17E-01 (0.31)	0.13** (4.21)	0.60	2.27	0.78** (15.13)	-0.19* (-1.80)	0.16** (4.77)	0.60	2.27	0.83** (16.98)	
	$\lvert y_2-y_2^* \rvert$	-0.11E-01 (-0.24)	0.21E-01 (1.09)	0.28	2.15	0.54** (7.94)	-0.14** (-2.72)	0.22E-01 (1.28)	0.31	2.11	0.48** (6.82)	
	DF/IDF	1.35 (0.18)	-2.77 (-1.27)	-	1.93		-9.29 (-1.44)	-2.96 (-1.37)	0.17E-01	1.96		
	$\lvert y_3-y_3^* \rvert$	-3.89 (-0.54)	-3.71* (-1.75)	-	1.98		-8.53 (-1.36)	-3.83* (-1.82)	0.09E-02	2.00		
結合標本 Ⅰ[2] : 한국포함	DF/TF	-0.20** (-3.47)	-0.20E-01 (-0.65)	0.48	2.17	0.68** (12.09)	0.69E-01 (0.87)	-0.32E-01 (-0.99)	0.45	2.14	0.69** (12.47)	176
	$\lvert y_1-y_1^* \rvert$	-0.92E-01** (-2.08)	-0.22E-01 (-1.38)	0.20	2.04	0.42** (6.11)	-0.52E-01 (-1.16)	-0.18E-01 (-1.11)	0.19	2.03	0.40** (5.73)	
	IDF/TF	-0.49E-05 (-0.89E-04)	0.13** (4.18)	0.58	2.25	0.77** (15.32)	-0.18** (-2.39)	0.16** (4.84)	0.59	2.36	0.82** (17.82)	
	$\lvert y_2-y_2^* \rvert$	-0.19E-01 (-0.45)	0.26E-01 (1.48)	0.30	2.14	0.55** (8.47)	-0.10** (-2.29)	0.34E-01** (1.96)	0.32	2.12	0.52** (7.84)	
	DF/IDF	-0.84 (-0.12)	-1.80 (-0.93)	-	1.92		-5.02 (-0.88)	-1.55 (-0.81)	-	1.93		
	$\lvert y_3-y_3^* \rvert$	-5.94 (-0.91)	-2.81 (-1.50)	-	1.97		-4.11 (-0.74)	-2.37 (-1.27)	-	1.96		

〈表 6〉의 계속

	從屬變數[1]	說明變數		$\bar{R}^2$	DW	$AR\ 1$ ρ	說明變數		$\bar{R}^2$	DW	$AR\ 1$ ρ	標本
		TF/GNP	DUM				$M2/GNP$	DUM				
結合標本 II[3] : 한국제외	DF/TF	-0.22** (-2.91)	-0.30E-01 (-1.24)	0.19	1.94	0.38** (3.66)	-0.21** (-2.86)	-0.15E-01 (-0.60)	0.11	1.70		88
	$\lvert y_1-y_1^* \rvert$	-0.11** (-2.10)	-0.27E-01* (-1.66)	0.08	1.73		0.63E-01 (-1.32)	-0.24E-01 (-1.50)	0.05	1.91		
	IDF/TF	-0.19** (-2.47)	0.94E-01** (3.73)	0.26	1.95	0.31** (2.84)	0.24** (3.42)	0.78E-01** (3.14)	0.25	1.63		
	$\lvert y_2-y_2^* \rvert$	-0.82E-01 (-1.46)	0.21E-01 (1.22)	0.06	1.98	0.27** (2.52)	-0.13** (-2.81)	0.44E-01** (2.64)	0.10	1.95		
	DF/IDF	2.15 (0.16)	-4.04 (-0.98)	-	1.94		-13.38 (-1.13)	-3.92 (-0.96)	-	2.01		
	$\lvert y_3-y_3^* \rvert$	-8.40 (-0.65)	-6.43 (-1.63)	-	1.98		-12.76 (-1.12)	-6.18 (-1.58)	0.31E-01	2.06		
結合標本 II[3] : 한국포함	DF/TF	-0.24** (-3.19)	-0.17E-01 (-0.73)	0.20	1.96	0.43** (4.60)	0.26E-01 (0.32)	-0.15E-01 (-0.57)	0.10	2.18	0.42** (4.33)	96
	$\lvert y_1-y_1^* \rvert$	-0.10** (-2.02)	-0.26E-01* (-1.77)	0.07	1.81		0.48E-01 (-1.08)	-0.19E-01 (-1.28)	0.04	1.96		
	IDF/TF	-0.18** (-2.38)	0.81E-01** (3.40)	0.20	1.98	0.38** (3.89)	0.99E-01 (1.29)	0.67E-01** (2.59)	0.17	1.92	0.30** (3.03)	
	$\lvert y_2-y_2^* \rvert$	-0.88E-01* (-1.66)	0.25E-01 (1.58)	0.12	1.97	0.27** (2.63)	-0.10** (-2.37)	0.56E-01** (3.69)	0.13	1.87		
	DF/IDF	-0.21E-01 (-0.16E-02)	-2.56 (-0.70)	-	1.94		-8.41 (-0.78)	-2.04 (-0.56)	-	1.98		
	$\lvert y_3-y_3^* \rvert$	-10.50 (-0.87)	-4.87 (-1.40)	-	1.97		-7.15 (-0.69)	-4.04 (-1.15)	-	2.02		

註 : 1) $y_1=DF/TF$, $y_2=IDF/TF$, $y_3=DF/IDF$, $y_1^*=(DF/TF)^*$, $y_2^*=(IDF/TF)^*$, $y_3^*=(DF/IDF)^*$, IDF=대출총액.

2) 結合標本 I은 모든 국가의 이용가능한 자료를 모두 결합한 결과.

3) 結合標本 II는 표본의 공통기간(1979~86) 자료를 결합한 결과.

4) ( ) 안은 t값.

5) * 10% 수준에서 有意.

** 5% 수준에서 有意.

〈表 7〉 式 (2)와 (3)의 推定結果 : 實質金融資產規模와 直·間接(預金) 金融構造와의 關係
(시계열·크로스섹션結合資料)

	從屬變數[1]	說明變數					$\bar{R}^2$	DW	$AR\ 1$ ρ	標本
		Constant	log(TF/P)	MR	DR	DUM				
結合標本 I[2] : 한국제외	DF/IDF	2.45**	-0.73**	0.57E-01	-0.52E-01	-1.20**	0.35	1.91	0.54**	161
		(5.75)	(-3.64)	(1.06)	(-1.02)	(-2.96)			(7.97)	
	$\lvert y-y^* \rvert$	1.44**	-0.43**	0.49E-01	-0.45E-01	-0.69**	0.22	1.88	0.43**	
		(4.16)	(-2.58)	(0.99)	(-0.96)	(-2.07)			(5.93)	
結合標本 I[2] : 한국포함	DF/IDF	1.73**	-0.39**	0.64E-02	-0.44E-02	-0.58*	0.31	1.93	0.55**	176
		(4.99)	(-2.37)	(0.13)	(-0.93E-01)	(-1.68)			(8.71)	
	$\lvert y-y^* \rvert$	1.00**	-0.24*	0.13E-01	-0.12E-01	-0.29	0.20	1.90	0.45**	
		(3.56)	(-1.76)	(0.31)	(-0.30)	(-1.04)			(6.69)	
結合標本 II[3] : 한국제외	DF/IDF	3.26**	-0.98**	0.92E-01	-0.87E-01	-1.94**	0.19	1.96		88
		(7.05)	(-4.58)	(1.05)	(-1.04)	(-4.32)				
	$\lvert y-y^* \rvert$	2.24**	-0.66**	0.74E-01	-0.75E-01	-1.44**	0.12	1.97		
		(5.48)	(-3.53)	(0.95)	(-1.01)	(-3.62)				
結合標本 II[3] : 한국포함	DF/IDF	2.37**	-0.51**	-0.46E-01	0.46E-01	-0.89**	0.06	1.93		96
		(5.72)	(-2.81)	(-0.56)	(0.60)	(-2.40)				
	$\lvert y-y^* \rvert$	1.58**	-0.33**	-0.26E-01	0.22E-01	-0.67**	0.02	1.99		
		(4.40)	(-2.10)	(-0.36)	(0.34)	(-2.08)				

註 : 1) $y=DF/IDF$, $y^*=(DF/IDF)^*$, IDF=예금총액(현금포함).
2) 結合標本 I은 모든 국가의 이용가능한 자료를 모두 결합한 결과.
3) 結合標本 II는 표본의 공통기간(1979~86) 자료를 결합한 결과.
4) ( ) 안은 t값.
5) * 10% 수준에서 有意. ** 5% 수준에서 有意.

〈表 8〉 式 (2)와 (3)의 推定結果 : 名目金融資產規模와 直·間接(預金) 金融構造와의 關係
(시계열·크로스섹션 結合資料)

	從屬變數[1]	說明變數					$\bar{R}^2$	DW	$AR\ 1$ ρ	標本
		Constant	log TF	MR	DR	DUM				
結合標本 I[2] : 한국제외	DF/IDF	2.96**	-0.29*	0.59E-01	-0.55E-01	-0.68*	0.31	1.89	0.54**	161
		(2.89)	(-1.69)	(1.06)	(-1.04)	(-1.77)			(7.94)	
	$\lvert y-y^* \rvert$	2.25**	-0.26*	0.54E-01	-0.50E-01	-0.47	0.20	1.89	0.43**	
		(2.65)	(-1.82)	(1.07)	(-1.04)	(-1.49)			(6.02)	
結合標本 I[2] : 한국포함	DF/IDF	1.80**	-0.10	0.21E-01	-0.20E-01	-0.37	0.29	1.92	0.55**	176
		(2.31)	(-0.78)	(0.43)	(-0.42)	(-1.10)			(8.54)	
	$\lvert y-y^* \rvert$	1.43**	-0.14	0.22E-01	-0.20E-01	-0.20	0.19	1.90	0.45**	
		(2.18)	(-1.20)	(0.49)	(-0.48)	(-0.73)			(6.68)	
結合標本 II[3] : 한국제외	DF/IDF	7.55**	-0.98**	0.88E-01	-0.77E-02	-1.98**	0.17	1.86		88
		(5.40)	(-4.30)	(0.98)	(-0.92)	(-4.22)				
	$\lvert y-y^* \rvert$	5.73**	-0.76**	0.73E-01	-0.70E-01	-1.59**	0.14	1.95		
		(4.75)	(-3.88)	(0.94)	(-0.96)	(-3.93)				
結合標本 II[3] : 한국포함	DF/IDF	4.44**	-0.48**	-0.47E-01	0.49E-01	-0.89**	0.04	1.88		96
		(3.82)	(-2.52)	(-0.57)	(0.63)	(-2.34)				
	$\lvert y-y^* \rvert$	3.26**	-0.37**	-0.32E-01	0.31E-01	-0.71**	0.03	1.98		
		(3.28)	(-2.26)	(-0.46)	(0.46)	(-2.19)				

註 : 1) $y=DF/IDF$, $y^*=(DF/IDF)^*$, IDF=예금총액(현금포함).
2) 結合標本 I은 모든 국가의 이용가능한 자료를 모두 결합한 결과.
3) 結合標本 II는 표본의 공통기간(1979~86) 자료를 결합한 결과.
4) ( ) 안은 t값.
5) * 10% 수준에서 有意. ** 5% 수준에서 有意.

〈表 9〉 式 (2)와 (3)의 推定結果 : 金融深化와 直·間接(預金) 金融構造와의 關係
(시계열·크로스섹션結合資料)

	從屬變數[1]	說明變數		$\bar{R}^2$	DW	AR 1 ρ	說明變數		$\bar{R}^2$	DW	AR 1 ρ	標本
		TF/GNP	DUM				M2/GNP	DUM				
結合標本 I[2] : 한국제외	DF/IDF	-2.85** (-3.52)	-0.36 (-1.02)	0.34	1.92	0.55** (8.23)	-0.69 (-0.66)	-0.41 (-1.17)	0.29	1.90	0.54** (7.86)	161
	$\lvert y-y^* \rvert$	-1.68** (-2.25)	-0.19 (-0.67)	0.21	1.89	0.45** (6.36)	-0.21 (-0.25)	-0.21 (-0.74)	0.18	1.89	0.44** (6.11)	
結合標本 I[2] : 한국포함	DF/IDF	-2.84** (-3.79)	-0.33 (-1.05)	0.34	1.92	0.55** (8.56)	-0.75E-01 (-0.84E-01)	-0.31 (-0.93)	0.29	1.92	0.54** (8.46)	176
	$\lvert y-y^* \rvert$	-1.76** (-2.55)	-0.16 (-0.60)	0.21	1.90	0.46** (6.74)	0.39E-01 (0.52E-01)	-0.12 (-0.47)	0.18	1.90	0.45** (6.64)	
結合標本 II[3] : 한국제외	DF/IDF	-3.88** (-3.11)	-0.77** (-2.00)	0.09	1.71		-1.76 (-1.52)	-0.70* (-1.75)	0.02	2.13		88
	$\lvert y-y^* \rvert$	-1.96* (-1.79)	-0.63* (-1.88)	0.02	1.82		-0.80 (-0.81)	-0.59* (-1.75)	-	2.07		
結合標本 II[3] : 한국포함	DF/IDF	-4.02** (-3.43)	-0.64* (-1.89)	0.09	1.71		-1.05 (-0.98)	-0.43 (-1.18)	-	2.06		96
	$\lvert y-y^* \rvert$	-2.19** (-2.12)	-0.49 (-1.64)	0.02	1.83		-0.29 (-0.32)	-0.39 (-1.26)	-	2.04		

註 : 1) $y=DF/IDF$, $y^*=(DF/IDF)^*$, IDF=예금총액(현금포함).
2) 結合標本 I은 모든 국가의 이용가능한 자료를 모두 결합한 결과.
3) 結合標本 II는 표본의 공통기간(1979~86) 자료를 결합한 결과.
4) ( ) 안은 t값.
5) * 10% 수준에서 有意.
** 5% 수준에서 有意.

다. 〈假說 4〉의 檢證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式 (2)와 式 (3)의 추정결과는, 세계각국의 금융산업구조는 金融市場規模의 확대에 따라 개별적으로는 물론, 공통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最適構造를 향해 이행해 나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국별 시계열자료의 결합자료가 유의한 金融市場規模效果를 시현하고 있음은, 세계금융시장의 통합에 따른 金融構造의 同質化 可能性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假說 5〉의 檢證

式 (4)의 로짓함수는 最尤度推定方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추정결과는 〈表 10〉에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놀랍게도 금융시장규모가 커질수록 이 經濟가 兼業主義 金融制度를 채택할 확률은 낮아지고 역으로 專業主義 金融制度를 채택할 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여기서도 金融深化變數는 그 유의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부호도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이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式 (4)의 추정결과가 반드시 因果關係(causation)까지를 검증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물론 앞의 式 (1)~(3)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될 수 있겠지만, 특히 式 (4)의

〈表 10〉 金融規模와 金融制度間 關係에 대한 式(4)의 LOGIT分析結果

回歸式別 說明變數	結合標本 I[1]		結合標本 II[2]	
	한국포함(176)	한국제외(161)	한국포함(96)	한국제외(88)
常數項	3.13(3.97) **	6.60(5.70) **	5.29(3.99) **	11.75(4.72) **
log(*TF*)	-0.58(-3.77) **	-1.20(-5.42) **	-0.96(-3.80) **	-2.11(-4.56) **
常數項	0.91(4.12) **	2.22(6.01) **	1.02(3.39) **	2.40(4.65) **
log(*TF/P*)	-0.83(-4.69) **	-1.73(-6.08) **	-0.86(-3.56) **	-1.83(-4.58) **
常數項	1.29(2.32) **	0.84(1.48)	0.96(1.29)	0.59(0.76)
TF/GNP	-2.17(-1.99) **	-0.83(-0.73)	-1.27(-0.87)	-0.80E-01(-0.52E-01)
常數項	-0.62(-1.15)	0.47(0.76)	-0.88(-1.11)	0.32(0.37)
M2/GNP	1.52(1.63)	-0.26E-01 (-0.26E-01)	2.09(1.58)	0.39(0.28)

註 : 1) 모든 국가의 이용가능한 자료를 모두 결합한 표본.
2) 표본의 공통기간(1979~86)의 자료를 결합한 표본.
3) ( ) 안은 *t*값.
4) * 10% 수준에서 有意.
** 5% 수준에서 有意.

경우는 兼業主義 金融制度를 채택한 나라는 상대적으로 金融發展이 저해되고, 專業主義 金融制度를 채택한 나라는 금융발전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정반대의 명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도 없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나 筆者의 판단으로는, 다른 조건이 다 같은 경우 보다 더 규제적인 專業主義制度가 보다 더 業務의 自由를 허용하는 兼業主義制度보다 金融發展을 더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V. 結　論

本稿에서의 실증분석결과는 대체로 檢證對象假說들을 지지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本稿에서 제시한 실증분석은 앞으로의 보다 많은 검증작업의 시작에 불과하다. 특히, 本稿에서 시도한 巨視的 金融產業構造分析과는 달리 앞으로 좀더 微視的 資料를 이용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컨대, 은행의 資產構成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좀더 微視的 차원에서 가설검증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銀行에 대한 규제 및 제도 선택방향의 설정에 필요한 지침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이들 결과의 정책시사점을 논함으로써 本稿를 마감하고자 한다.

우선, 金融市場規模變數가 金融深化變數(금융연관비율)보다 더 일관되게, 그리고 유의하게 金融構造決定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마도 金融深化變數는 Shaw(1973)나 McKinnon(1973) 등의 주장과 같이 實物經濟의 성장에

는 유의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金融構造의 형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대부분의 OECD內의 선진국들은 金融의 과도한 증권화현상(excessive securitization)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金融市場規模의 확대나 세계금융의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각국 金融構造는 점차 전체금융 중에서 차지하는 直接金融과 間接金融의 상대적 비중이 각각 감소 및 증대되는 방향으로 변모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로, 각국의 전체금융 중에서의 直接金融 및 間接金融比重과 直接金融과 間接金融의 相對的 比重은 장기적으로 金融市場規模의 擴大와 世界金融의 統合에 따라 각각 공통의 일정한 균형비율로 수렴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로, 金融構造의 長期均衡으로의 수렴과정은 각국이 선택하는 금융제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兼業主義 金融制度가 專業主義 金融制度보다 이러한 수렴과정을 보다 더 촉진시키는 것으로 관찰된다.

다섯째로, 兼業主義 金融制度는 直接金融의 비중을 낮추는 반면, 間接金融의 비중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는 兼業主義制度下에서는 대체로 은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의한 證券業務兼營에 따른 直接金融活性化可能性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直接金融比重을 낮추고 間接金融(貸出 및 預金)의 比重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金融制度의 선택은 각국이 처한 金融與件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금융시장의 規模 및 金融部門의 크기가 클수록 專業主義 金融制度를 채택할 확률이 높았던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世界金融의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앞으로의 世界金融産業構造는 점차 同質化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즉, 이들 각국이 앞으로 직면할 金融市場은 단일의 統合世界金融市場으로서 모든 나라가 동일한 규모의 金融市場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金融制度도 점차 유사한 제도로 귀일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의 분석은 이 공통의 제도가 어떠한 제도이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지만, 앞의 〈假說 3〉에 의할 경우 앞으로의 金融制度는 실제 제도적 규제가 어떠하건 專業과 兼業이 공존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상의 결과가 앞으로 우리나라 金融制度 및 金融産業構造改善方向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우선, 金融構造는 궁극적으로 일국의 경제규모확대와 그에 따른 金融需要 및 市場의 확대에 부응하여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제도적 규제를 통해 원하는 金融構造의 달성을 도모하는 정책은 오히려 金融의 效率性을 저하시키고, 金融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예컨대, 금융시장의 규모가 아직도 直·間接金融의 분화와 일정 비중 이상의 直接金融의 活性化를 도모하기에는 미흡한 상황하에서 인위적으로 金融需要規模가 지지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直接金融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金融發達이 저위에 있던 개발초기부터 專業主義 金融制度를 도입하였으나 지난 30여년의 기간동안 작은 金融市場規模를 반영하여 子會社形態는 물론 직접진출을 통한 은행의 비은행진출이 확

대되어 金融制度는 오히려 兼業主義的 경향을 강하게 띠어 왔으며, 개발초기부터 活性化를 위한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 온 直接金融市場도 그동안 혼란과 부침을 계속해 오다 80년대 후반 이후가 되어서야, 큰 폭의 國際收支赤字 시현에 따른 金融需要의 확대로, 어느 정도 순조로운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일국의 金融制度 및 金融構造改善政策은 궁극적으로 일국경제의 금융수요가 지탱할 수 있는 수준 및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금융시장의 절대규모가 金融構造形成의 절대적 한계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또한 인위적으로 채택된 金融制度도 均衡金融構造達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특히 專業主義 金融制度가 균형금융구조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비추어, 앞으로의 金融產業改編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이 점 또한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兼業主義 金融制度는 동 제도가 갖는 은행의 안전성 저해 가능성이나 불공정 금융거래의 촉발 가능성 등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조치가 마련된다면, 效率性 측면에서 볼 때에는 專業主義 金融制度보다 더 바람직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本稿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 金融產業改編論議와 관련해서 볼 때 金融產業 및 制度는 이를 받치는 전체금융의 규모성장에 따라 적절한 제도와 구조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금융의 성장과정 및 속도에 부응하지 못하는 너무 급격한 改編政策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시사를 주고 있음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左承喜, 「金融의 專業 및 兼業化 理論 : 金融產業組織論의 摸索」, 『韓國開發硏究』, 1991 봄호(1991a).

_____, 「金融產業構造의 決定要因에 대한 實證分析」, 政策硏究資料 91-19, 韓國開發硏究院, 1991. 9(1991b).

左承喜・李善愛・劉載均・盧載烈, 「兼業主義 銀行制度와 우리나라 金融產業의 效率化를 위한 制度改善方案」, 政策硏究資料 91-12, 韓國開發硏究院, 1991. 3.

Baumol, William J., John C. Panzar, and Robert D. Willig, *Contestable Markets and the Theory of Industry Structure*,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New York, 1982.

Bröker, G., *Competition in Banking*,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89.

Cumming, Christine M. and Lawrence M. Sweet, "Financial Structure of the G-10 Countries: How Does the United State Compare?", *FRBNY Quarterly Review*, Winter 1987~88.

Litan, Robert E., *What Should Banks Do?*,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87.

McKinnon, Ronald I., *Money and Capital in Economic Development*,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73.

Shaw, Edward S., *Financial Deepening in*

Economic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973.

Stigler, George J., "The Division of Labor is Limited by the Extent of the Marke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LIX, No.3, June 1951.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9,*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國民生活水準의 國際比較分析

權 純 源

本稿는 國民生活水準에 영향을 주는 주요 巨視 및 微視指標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추구해 온 開發戰略을 再照明하고 우리의 現在座標를 검토코자 집필되었다. 資料의 制限, 國際比較에서 흔히 제기되는 評價의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國際比較分析은 유용한 手段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政策的 含意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韓國이 추구한 開發政策의 力點은 대체적으로 經濟成長에 두어져 왔었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는 높은 經濟成長率이나 1人當 所得의 지속적인 증가를 통하여 消費水準의 제고와 消費構造의 개선 등 國民生活水準의 향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더불어 所得分配를 위시하여 保健, 營養指標 등 社會指標 측면에서도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開發政策의 成功的 結實은 國民福祉增進에 크게 이바지한 것임에 틀림없으나 社會福祉向上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미흡하였다. 지속적인 高度成長의 결과 國民生活向上을 위한 基本要件인 1人當 所得이 크게 증가되어 貧困人口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生活을 둘러싸고 있는 經濟·社會的 환경은 상대적으로 劣惡해지게 되었다. 앞으로도 産業化와 都市化가 계속될 전망임에 비추어 國民生活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生活與件의 改善에 대한 각별한 政策的 配慮가 요청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經濟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國民生活水準의 內實 있는 향상을 기해 나가자면 高度成長이 준 副作用을 극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삶의 質에 대한 수용할 만한 國民的 欲求를 과감히 받아들여 社會開發에 돌려지는 公的支出을 꾸준히 늘려나가되 日本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처럼 費用效果的인 지출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國民生活水準의 개선은 長期的인 視角에서 비전과 일관성을 지니고 추진되어야 할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I. 序 論

經濟發展의 第1次的 目的 중 가장 우선적인 것은 國民所得水準의 전반적 향상을 통한 貧困人口의 감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보다 一般的으로는 經濟·社會福祉의 增進이 경제발전의 목적이라고 간주된다. 이와 같은 경제발전의 目的에 비추어 韓國經濟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채택된 政策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本稿는 두가지 목적을 지니고 집필되었다.

筆者 : 本院 硏究委員
원고를 읽고 유익한 助言을 주신 本院의 盧基星 博士, 高日東 博士께 감사드리며 資料蒐集을 도와준 鮮于惠 主任硏究員께도 사의를 표한다.

그 하나는 지난 4半世紀 동안의 經濟의 近代化過程에서 國民生活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부문별로 韓國國民의 福祉水準이 어떻게 향상되어 왔는가를 검토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간의 經濟發展戰略이 國民經濟福祉에 미친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필요한 方法論의 開發과 관련하여 經濟福祉의 諸側面에 걸쳐 이용 가능한 적절한 資料를 정리하려는 것이다[1].

이러한 집필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우리는 理論的 接近方法과 實證的 接近方法을 제기할 수 있는데 本稿에서는 巨視的·微視的 經濟社會指標 등 적합한 可用統計를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國際比較分析을 행하는 實證的 接近方式이 채용될 것이다[2]. 理論的 接近에 대해서는 Deaton과 Muellbauer의 硏究 그리고 世界銀行의 生活水準測定硏究(Living Standard Measurement Study ; 줄여서 LSMS)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인데 世界銀行報告書는 家口調査를 이용한 實證分析結果도 아울러 소개하고 있다[3].

本稿는 國民生活에 영향을 주는 主要指標의 國際比較를 통하여 그동안 韓國經濟의 成長이 國民福祉에 미친 正과 負의 효과를 분석함과 더불어 分配構造와 社會福祉의 변모를 略述하게 될 것인바, 比較對象國은 주로 同一文化圈域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日本과 台灣이 될 것이다. 序論에 이어 II章에서는 먼저 所得, 消費 등 巨視經濟指標를 살펴본 다음 住生活의 안정에 대한 國民的 관심을 감안하여 住居條件 그리고 生活便益施設과 社會間接資本 관련 주요지표의 비교분석으로 高度成長이 國民福祉에 끼친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III章에서는 經濟成長이 所得分配側面에 준 效果와 더불어 經濟成長이 초래한 社會的 費用에 대하여 고찰한 후 國民의 要求에 비하여 社會福祉의 制度的 成熟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자 한다. IV章에서는 II章과 III章에서의 國際比較分析을 토대로 國民生活水準의 향상을 위한 政策課題를 정리한 다음 結言을 맺고자 한다.

II. 高度成長과 國民福祉 : 過去와 現在

1. 經濟成長의 功過

韓國經濟가 그간 이룩한 高度成長은 費用이나 代價를 치르지 않고 얻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급속한 產業化와 都市化의 촉진과정에서 우리는 大氣汚染이나 水質汚濁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人口의 都市集中으로 住宅不足, 交通混雜, 人口過密, 騷音 등을 경험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農漁村地域은 上下水道施設 등 生活基盤施設의 미비, 交通·敎

1) 本稿에서는 우선 국민생활과 관련되고 있는 자료를 묶어 정리하고자 하며 이의 종합화는 다음 연구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國民生活 관련자료의 不足과 최근 統計의 入手不可能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本 硏究가 그만큼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 둔다.

2) 이와 같은 接近方法의 短點으로 統計事情이나 어떤 生活側面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論議가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며, 國際比較에 따른 諸問題도 있을 것인바, 이 점에 대해서는 溝口敏行(1990) 참조.

3) 이를테면, Deaton and Muellbauer(1980), Glewwe(1987) 및 기타 LSMS 報告書 참조.

育·醫療·文化施設의 부족 등 基本需要充足施設의 결핍으로 日常生活의 불편을 겪고 있다.

經濟發展의 진정한 목표가 국민들이 골고루 필요한 財貨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소득을 바탕으로 건강과 자유를 향유하면서 안정된 生活을 누리는 데 있다면, 앞으로의 經濟社會發展戰略을 논의함에 있어서 "韓國國民들 스스로가 지금까지 고도성장에 기여한 만큼 成長의 果實을 배분받고 있다고 實感하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平均的인 韓國國民의 經濟福祉(economic welfare)[4] 수준이 고도성장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韓國經濟는 지속적인 成長으로 GNP 규모가 급속하게 擴大되고 있고 1人當 所得水準 역시 괄목할 만한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그와 같은 急成長이 초래하고 있는 環境破壞와 混雜이 주는 非經濟로 社會的 費用 역시 해를 달리할수록 커지고 있어 사실상 生活의 質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向後의 經濟社會發展은 國民生活의 質的向上을 통한 經濟福祉水準의 제고에 그 기본방향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계속적인 產業化의 추진으로 個人所得은 增大될 것이나, 이는 한편으로 生活環境에 負의 영향을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國民的 期待水準을 높여 다양한 욕구표출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人口構造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國民期待水準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므로, 人口構造의 변화를 감안하는 經濟福祉增進政策의 추진이 바람직할 것이다.

2. 主要經濟社會指標의 推移

가. 巨視經濟指標의 變化 : 1人當 所得, 貯蓄 및 消費패턴

韓國經濟가 成長의 고개를 든 1964년부터 1990년까지 지난 26년간 年平均 GNP 增加率은 8.9%를 기록하였는데, 여기서 年平均人口增加率 1.6%를 차감하면 1人當 GNP는 年平均 7.2%가 증가한 셈이 된다. 대체로 보아 經濟成長率은 近年에 올수록 加速된 반면 人口增加率은 해를 달리할수록 조금씩 떨어져 兩者의 차이가 커지게 되었으나,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經濟成長率이 둔화되어 兩者의 隔差가 다시 좁혀지고 있다.

平均所得의 계속적인 增加推移는 전반적인 國民生活水準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필요조건을 제공해 주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 國民生活水準, 특히 低所得層의 生活水準을 직접적으로 개선시키는 公共支出 특히 社會福祉支出이 늘어날 때 비로소 지속적인 經濟成長은 國民福祉 增進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韓國經濟는 國民生活水準 向上과 관련하여 몇가지 주요한 特色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그 하나는 1人當 所得水準에 비하여 租稅負擔率과 社會保障寄與金率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최근 들어 地下經濟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韓

4) Martin Bronfenbrenner 등은 日本의 經濟成長實績을 분석하면서 經濟福祉에 영향을 주는 主要要因으로 다음 네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① 現在와 앞으로의 生活水準 ② 所得과 富의 分配狀態 ③ 生活水準의 安定的 維持 가능성, 그리고 ④ 身體的, 精神的 健康과 民主社會의 市民으로서 自由享有 程度. Bronfenbrenner and Yasuba(1987) 참조.

〈表 1〉 韓・日・台灣間 勤勞者家口의 所得 5分位別 貯蓄率 比較[1)]

		平均	1	2	3	4	5	1人當GNP[2)] (85년불변, 달러)
韓國	1980	22.5	-9.0	12.9	19.6	24.0	32.5	2,060
	1985	23.5	-6.7	18.4	22.1	26.2	30.4	2,194
	1990	25.3	1.3	19.4	23.6	26.5	32.9	4,700
日本	1960	14.9	-17.3	6.5	11.2	16.9	25.4	1,638
	1965	17.3	12.4	14.9	16.3	17.5	20.6	3,016
	1968	19.6	13.1	17.4	18.6	19.7	23.8	4,224
	1970	20.3	14.2	17.8	20.5	22.3	24.2	5,140
	1975	23.0	28.5	24.8	25.6	26.1	16.0	8,336
	1980	22.1	13.2	18.9	22.2	23.9	26.0	11,702
台灣	1980	23.2	9.0	14.5	19.3	24.6	35.9	2,990
	1985	24.0	5.1	15.5	19.8	26.0	36.1	3,198
	1989	27.6	9.3	18.2	23.6	30.1	27.8	6,693

註：1) 韓國은 도시근로자가구.
日本은 전국근로자가구(1960, 1965년은 도시근로자가구).
貯蓄率＝黑字/可處分所得
可處分所得＝實收入－非消費支出
2) 購買力平價指數를 산출하여 비교하는 것이 理想的이나 本稿에서는 基礎資料不足으로 各國의 經常 1人當 GNP를 美國의 GNP디플레이터指數로 나누어 不變 1人當GNP 계산.

資料：韓國；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都市家計年報』, 各年度.
日本；國民生活センター,『國民生活統計年報』, 各年度；總務廳 統計局,『家計調査年報』, 1961, 1965, 1970.
台灣；Republic of China,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90; *Statistical Yearbook of the Republic of China*, 1990.

國經濟의 特徵은 우리나라 國民의 일반적인 福祉水準이 經濟成長速度에 비하여 비교적 천천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만일 우리나라의 純國民福祉(Net National Welfare ; NNW)[5)]를 계산할 수 있다면 NNW는 GNP의 成長率보다 분명히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며 최근에 올수록 兩者間의 격차가 커질 것으로 推量되고 있다.

5) 理論的으로 말하자면 NNW는 GNP에서 모든 稅金을 控除한 다음, 가정주부들의 家事勞動에 대한 價値를 합산하고 公害나 事故增加 등 成長의 副作用과 여가시간증가, 耐久消費財의 확대보급에 따른 效果를 耐用年數로 분산시키는 등 成長의 福祉增進效果를 아울러 감안하여 계산될 수 있음.

통상 家計의 貯蓄增加는 家口員의 福祉增進에 기여하게 된다. 現在의 소비보다 未來의 소비에 대한 合理的 選好를 나타내는 貯蓄은 未來의 소비가 주는 만족뿐만 아니라 資産의 축적을 도와주게 되어 거기서 오는 만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韓國民의 貯蓄率은 70년대 이후 高度成長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제고되었으나 문제는 階層別 貯蓄率이 어떻게 분포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國勤勞者家口의 저축률을 日本 및 台灣의 勤勞者家口의 그것과 비교해 보면 비슷한 1人當所得 水準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平均貯蓄率은 낮지 않지만 最低 20%에 속하는 소득계층의 貯蓄率은 1989년까지 負의

수치를 보여 주었던 반면 最高 20%를 점하는 高所得階層의 貯蓄率은 계속적으로 30%를 상회하고 있어, 소득계층간 저축률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日本이나 台灣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다음으로 韓國人의 實質消費는 1964~90년 期間中 年平均 약 6%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成長의 초기단계에서는 굶주림을 해결하는 일이 중요하였으므로 1970년대 前半까지는 家計消費에서 점하는 食料品費의 비중이 계속 증대되어 엥겔係數가 1974년 49.8%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絶對貧困人口가 줄어들면서 엥겔係數가 점차로 下落하여 1990년에는 同 係數가 32%를 기록하고 있는데,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日本의 1975년 數値와 동일하며 台灣의 최근 數値(1988년의 35.0%)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엥겔係數의 下落推移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韓國國民들의 經濟福祉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해 주고 있는데 食料品中心의 소비생활에서 벗어나 消費構造가 다양화되고 있는 경향을 시사하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家口의 엥겔係數를 歐美諸國의 그것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食料品費의 比重이 상대적으로 천천히 감소하고 있어 1인당 소득수준이 비슷할 때, 우리나라 家口는 상대적으로 높은 엥겔係數를 보이고 있다. 이는 日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高米價政策 등 農產物價格支持政策으로 食料品價格水準이 높을 뿐만 아니라 食料品에 대한 價格彈力性이 특히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근로자가구의 所得階層別 소비지

<表 2> 韓・日・台灣間 都市勤勞者家口의 消費패턴 比較

(단위 : %)

	韓 國			日 本			台 灣		
	1980	1985	1990	1970	1975	1980	1980	1985	1988
食料品費	43.0	36.8	32.0	34.1	32.0	29.0	40.4	38.2	35.0
住居費	4.7	4.6	4.7	4.9	4.9	4.6	23.6	23.5	23.2
光熱・水道費	7.5	7.3	4.5	4.4	4.5	5.7			
家具집기・家事用品費	4.5	4.8	5.7	5.0	5.0	4.3	4.6	4.1	4.7
被服・신발비	10.9	7.6	8.3	9.5	9.2	7.9	7.0	5.9	6.1
保健醫療費	6.5	7.7	5.3	2.7	2.5	2.5	4.2	5.3	5.2
交通通信費	5.8	6.4	8.4	5.2	6.1	8.0	6.7	8.3	8.4
教育費	5.5	6.3	8.1	2.7	2.8	3.6	8.2	9.5	11.7
教養・娛樂費	1.9	3.7	4.7	9.0	8.4	8.5			
其 他	9.8	14.9	18.3	22.6	24.8	25.8	5.3	5.2	5.7
1人當 GNP[1]	2,060	2,194	4,700	5,140	8,336	11,702	2,990	3,198	5,505

註 : 1) 1985년 不變價格(美달러).

資料 : 韓國 ;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局, 『都市家計年報』, 各年度.
日本 ; 總務廳 統計局, 『家計調査年報』, 各年度.
台灣 ; Republic of China, *Statistical Yearbook of the Republic of China*, 1990.

〈表 3〉 主要國의 칼로리 및 蛋白質 攝取量(1978～80)

		日常칼로리攝取量 (kcal)	蛋白質 (g)	動物性蛋白質의 比率 (%)
韓 國	1970	2,370	65.2	10.6
	1975	2,390	71.1	15.2
	1980	2,485	73.6	20.1
	1985	2,687	86.6	28.5
	1988	2,814	87.5	29.2
	1989[1)]	2,870	89.6	30.7
필 리 핀		2,315	51.7	35.8
日 本		2,916	93.4	53.6
이탈리아		3,650	104.0	47.6
英 國		3,316	91.4	60.3
西 獨		3,537	90.4	63.3
프 랑 스		3,390	105.3	64.2
美 國		3,652	106.7	67.5
台 灣		2,812	78.2	-

註 : 1) 暫定數値임.
資料 : 經濟企劃院, 『韓國의 社會指標』, 1990.
日本總務廳 統計局, 『國際統計要覽』, 1983.
Republic of China,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90.
Republic of China, *Statistical Yearbook of the Republic of China*, 1990.

출구성을 보면 특히 低所得家口의 엥겔係數가 1980년의 48～50% 수준에서 1989년에는 36% 선으로 크게 줄었으나, 아직도 平均的인 근로자가구는 衣·食·住費目에 總消費의 50% 이상을 할애하고 있는 한편 敎育을 제외한 文化費 支出의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家口의 消費패턴이 보여주는 주요 특징으로는 1人當所得이 비슷할 때 생활환경이 상대적으로 類似하다고 간주되는 日本에 비하여 敎育費, 保健醫療費, 交通通信費 등의 비중은 큰 편이나, 敎養·娛樂費나 雜費의 비중은 작은 편에 속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기후조건 등 生活與件이 우리나라와 다른 台灣 勤勞者家口의 경우 韓國과 日本에 비하여 食料品費와 住居關聯支出의 비중이 높은 반면 雜費와 被服 및 신발費의 비중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表 2 참조).

한편, 지속적인 所得增加에 힘입어 한국국민의 日當 칼로리섭취량은 꾸준히 늘어나게 되었는데 특히 단백질섭취량은 1970～89년중 37% 이상이나 증가되었다(表 3 참조). 그런데 動物性蛋白質 섭취량은 해를 달리할수록 계속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특히 低所得層의 경우 곡류와 채소류에 주로 의존하는 食生活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住宅供給 및 住居條件의 現況

전반적인 生活水準의 향상과 최근 數年間 住宅 200萬戶 건설의 순조로운 추진에 힘입어 韓國國民의 平均住宅規模는 커지고 있으나(1人當 住居面積이 1975년 2.4평에서 1988년에

〈表 4〉 主要國의 住居條件 比較

	年度	人口千名當[1] 住宅數(戶)	住宅當 房數 (個)	房當住居 人員數(名)	自家所有率 (%)	上水道普及率 (%)	水洗式化粧室 普及率
韓 國	1970	144	3.0	2.4	68.2	33.2	1.8
	1975	134	3.1	2.3	63.1	43.1	-
	1980	140	3.3	2.1	58.4	54.6	18.4
	1985	150	3.5	1.8	53.6	67.2	33.1
	1990	172	4.2	1.5	50.6	73.8	52.0
日 本	1988	342	4.5	0.8	60.4	92.7	45.9
이탈리아	1971	-	3.7	0.9	50.9	86.1	79.1
英 國	1971	399	4.9	0.6	50.1	(-)	98.9
西 獨	1972	448	4.2	1.5	33.5	99.2	94.2
프 랑 스	1975	451	3.6	0.9	47.1	97.3	72.5
美 國	1977	419	5.1[2]	0.6[2]	64.8	99.3	96.0[2]

註 : 1) 日本은 1988년, 美國은 1987년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1980년 統計임.
2) 1970년 統計임.

資料 : 經濟企劃院, 『韓國의 社會指標』, 1990.
日本總務廳 統計局, 『國際統計要覽』, 1983.

는 3.6평으로 증가), 自家住宅所有率은 1970~90년 기간중 68.2%에서 50.6%로 크게 떨어지고 있는바, 특히 人口 千名當 住宅數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都市低所得層의 住宅不足現象이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다(表 4 참조).

또한 주택부대시설을 보면, 아직도 水洗式 화장실의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水道施設 설치주택의 비율도 낮은 편이며, 農漁村의 경우는 下水處理施設이 매우 부족한 형편에 있다. 國民들의 현재 住居地域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34%밖에 되지 않은 반면 20% 이상의 응답자가 주거생활에 대하여 不滿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주로 住居空間의 협소, 부대시설의 미흡, 주택의 老朽 등이 열거될 수 있다[6].

6) 經濟企劃院, 『韓國의 社會指標』, 1990, 참조.

최근 土地公槪念의 적용확대와 주택공급증가로 不動産景氣가 다소 진정되고는 있으나 住宅供給이 주로 中産層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無住宅庶民의 주택에 관한 苦衷은 크게 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規制中心의 근시안적인 주택정책, 公共住宅投資率의 상대적 低位, 關聯稅制의 不合理 등으로 大都市地域을 중심으로 土地와 住宅이 投機의 대상이 되어 週期的으로 가격이 폭등하였고, 더불어 전세값을 급등시켰기 때문에 전반적인 住居條件의 개선노력은 미흡했다고 평가된다. 住宅供給의 擴大를 지지해야 할 土地政策 역시 地價上昇과 土地投機를 억제하기 위한 직접적인 規制로 일관해 옴으로써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住居條件과 관련하여 특히 대도시의 人口集中程度를 살펴보면, 서울은 세계 주요도시 중 타이페이와 함께 人口密度가 매우 높은 도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表 5〉에서 보는 바

〈表 5〉 住宅地의 地價와 關聯指標

地 名	大都市圈의 人口密度(1985) (千名/㎢)	一般住宅地의 地價(1987) 원貨換算額(千원/㎡)
서 울	15,427	330～390[1]
토쿄/요코하마	9,018	5,916
샌프란시스코	3,419	111
런 던	4,171	202～228[1]
파 리	7,716	2,663
시드니	3,879	115
타이페이	15,528	1,728
로스엔젤레스	3,352	61

地 名	賃貸아파트(1987) 月賃貸料 (千엔)	面 積 (㎡)	面積單位當年賃貸料 (千엔/㎡)	賃貸아파트賃貸料의 大卒初賃에 대한 비율 (%) 1975	1989
서 울	86	106	9.74	60.0	76.7
토 쿄	105	60	21	55.7	57.0
샌프란시스코	225	150	18	-	-
런 던	196	114	20.63	60.0	92.2
파 리	207	60～70	35.47～41.4	60.0	53.9
시 드 니	79	100	9.48	41.3	84.2
타 이 페 이	83	100	9.96	42.9	135.4

註：1) 나중 數値는 신흥지역에 대한 것임.
資料：高木新太郎,「土地・住宅」,『日本經濟硏究』, 第20號, 1990. 5.
Republic of China,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90.
Republic of China, *Statistical Yearbook of the Republic of China*, 1990.

와 같이 1987년 현재 서울의 一般宅地價格은 다른 국제도시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美國 都市를 예외로 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아파트 賃貸料의 大卒初賃에 대한 比率은 先進國 都市의 그것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다. 社會間接資本과 生活便益施設

도로, 철도, 항만, 비행장 등 社會間接資本은 주로 정부의 投資에 의해서 확충되는 公益施設이다. 우측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政府投資率은 70년대에 3% 수준에 머물렀고 80년대에는 4%線으로 제고되었다고는 하나 日本의 5% 수준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낮아왔다는 사실은, 近年에 와서 사회간접자본이 애로요인으로 등장하게 된 背景을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台灣의 政府投資率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社會間接施設의 애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韓國	日本	台灣
1970～74년	3.8%	5.2%	2.8%
1975～79년	3.8	5.7	4.5
1980～84년	4.6	5.7	4.1
1985～88년	4.1	5.0	3.4

〈表 6〉 一般道路延長 및 鋪裝道路延長 比較(1988)

	一般道路(km)			鋪裝道路		
	전체길이	포장길이	鋪裝率	國土面積當 (km/km²)	人口當 (km/千名)	車輛保有台數當 (km/千臺)
韓國	55,778	34,248	61.4	0.35	0.82	16.83
日本	1,125,217	626,195	55.7	1.66	5.22	14.06
美國	6,365,591	5,219,785	82.0	0.56	22.05	30.96
西獨	487,263	482,390	99.0	1.94	7.88	17.82
英國	347,376	347,376	100.0	1.42	6.15	18.38
프랑스	804,505	741,505	92.2	1.36	13.49	31.00
이탈리아	297,738	297,738	100.0	0.99	5.23	13.04
台灣[1)]	19,981	17,036	85.3	0.47	0.86	8.10

註 : 1) 高速道路 포함.

資料 : 日本經濟企劃廳, 「社會資本」, 『日本經濟硏究』, 第20號, 1990. 5.
Republic of China,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90.
Republic of China, *Statistical Yearbook of the Republic of China*, 1990.

生活便益施設 중 도로상태를 보면, 〈表 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道路의 延長은 日本 등 先進國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더욱이 포장률 역시 낮은 수준이어서 人口千名當 포장도로 길이는 0.8km에 불과하여 台灣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바, 선진국의 포장도로 길이가 人口千名當 5km 이상인 것과는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表 7〉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高速道路의 延長은 自動車保有台數를 감안할 경우 선진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긴 편이지만, 京釜高速道路와 中部高速道路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고속도로는 正規的인 高速道路라고 보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고속도로에서는 수시로 교통체증이 초래되어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 鐵道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台灣이나 마찬가지로 先進國에 비하여 延長이 매우 짧은 편이어서 交通部門에 대한 投資가 전반적으로 未洽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表 8 참조).

〈表 7〉 各國의 高速道路(1988)

	高速道路총길이 (km)	國土面積當 (m/km²)	人口千名當 (m)	自動車保有台數當 (m)
韓國	1,550	15.6	36.9	761.5
日本	4,846	12.8	39.5	92.4
美國	83,214	8.9	337.8	464.8
西獨	8,715	35.1	142.4	289.5
英國	2,981	12.2	52.2	126.2
프랑스	6,570	12.0	117.6	264.3
이탈리아	6,083	20.2	105.9	249.3

資料 : 日本經濟企劃廳, 「社會資本」, 『日本經濟硏究』, 第20號, 1990. 5.

〈表 8〉 鐵道의 利用現況(1988)

	營業킬로 (千km)	複線化率 (%)	電鐵化率 (%)	最高速度 (km/h)	輸送人킬로 (億名킬로)	輸送톤킬로 (億톤킬로)
韓 國	3.2	27	16.7	150	260	138
日 本	25.8	31	55.7	240	3,447	206
美 國	312.1	-	1.1	200	185	13,104
西 獨	27.4	42	42.0	250	431	620
英 國	16.6	74	25.3	200	331	175
프 랑 스	34.7	45	33.7	300	600	513
이 탈 리 아	16.1	31	55.9	200	414	184
스 위 스	3.0	46	100.0	140	107	68
台 灣	2.6	-	-	-	82	23

資料 : 鐵道廳, 『鐵道統計年報』, 1989.
日本經濟企劃廳, 「社會資本」, 『日本經濟硏究』, 第20號, 1990. 5.
Republic of China,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90.
Republic of China, *Statistical Yearbook of the Republic of China*, 1990.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 農漁村地域은 도시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道路 등 社會間接施設이 未備한 이외에도 文化, 敎育, 病院 등 生活關聯 公共便益 施設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經濟福祉水準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농어촌주민들의 욕구불만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평가된다.

III. 經濟成長, 衡平 및 社會福祉

1. 經濟成長과 所得分配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經濟成長은 특히 開發의 初期에 있어서 分配改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人當 所得의 계속적인 증가와 함께 絶對貧困階層에 속하는 人口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經濟成長이 반드시 所得分配의 改善을 수반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쿠즈네츠」假說을 생각해 볼 수 있다. Kuznets의 逆U字假說은 經濟發展의 初期段階에 있어서 經濟成長의 진행은 所得分布를 일시적으로 不平等하게 하는 작용을 하나 그후로도 經濟成長이 지속되면 一定時點을 경계로 反轉하여 所得分布를 平等한 방향으로 변모시키는 영향을 주게 된다고 풀이하고 있다[7].

Kuznets 교수는 당시의 歐美工業國을 대상으로 행한 實證分析을 통하여 이와 같은 檢證結果를 발표하였는데 그는 다음 두가지 논의를 부각시키고 있다. 하나는 成長初期에 있어서 所得不平等의 擴大는 비교적 所得隔差가 큰 非農業部門의 급속한 成長에 기인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성장과정에서 어떤

7) S. Kuznets(1963) 참조.

時點을 지나면서 不平等이 축소되는 경향은 農業과 非農業間의 所得隔差縮小, 全體個人所得에서 점하는 財産所得의 比率低下, 社會保障의 擴大普及과 完全雇傭의 推進 등 3要因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그는 지속적인 經濟成長은 조만간 所得隔差를 축소시키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전체로서 파이의 크기를 확대시키게 되면 사회구성원간 파이를 나눈 몫 또한 결과적으로 보다 平等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經濟成長의 초기에는 작은 파이를 어떻게 나누어 가지느냐 하는 논의보다는, 파이의 크기 그 자체를 확대시키는 데 우선하는 편이 바람직스럽다고 그는 결론짓고 있다. 왜냐하면 成長政策의 추진에 의하여 所得의 平等化라고 하는 分配政策의 目的도 결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그는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Kuznets의 설명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고무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經濟開發戰略의 重點은 대체로 經濟成長의 촉진에 두어졌었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쿠즈네츠」假說은 歐美先進國의 자료를 가지고 檢證된 데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假說의 무게를 가볍게 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다. 다만 日本의 전문가에 의해 日本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는 同 假說에 대하여 否定的이었으며[8] 우리나라의 경우 충분히 긴 시기에 걸쳐 일관성있게 수집된 所得分配資料가 없기 때문에 엄격한 檢證이 不可能하다고 판단되나 最近年度를 포함하여 檢證한다면 아마도 日本의 결과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즈네츠」假說이 지니는 또 하나의 단점은 所得分配統計의 문제점과 관련된다. 만일 所得分配指標作成에 사용된 家口所得統計가 家計의 實質購買力이나 厚生水準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면 所得分布指數가 國民生活水準의 격차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만큼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에 의한 所得分配資料는 富의 分布狀態는 물론 資本利得과 地下經濟의 規模를 감안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바, 특히 經濟構造와 經濟的 條件이 急變하는 상황하에서는 所得分布와 實質購買力의 分布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所得分配統計와 國民이 피부로 느끼는 分配狀態間의 격차는 住宅所有 여부를 포함하는 住居條件을 비롯하여 거주지역의 與件을 구성하는 生活基本施設의 충실정도, 공기오염, 물의 汚濁 등 公害나 소음의 정도 등 환경조건, 나아가서 日常生活에서 피부로 느끼는 經濟正義나 自由의 享有程度 여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가. 所得分配構造의 推移

우리나라 家口所得分布의 추이를 보면 1980년대에 와서 전국적으로 所得의 不均衡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를 市部·郡部로 나누어 보더라도 所得分配狀態는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득분배지표상의 개선은 도시 및 농촌지역 低所得層의 소득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한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農地所有規模에 따른 家口所得隔差가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줄어들었고, 高卒以下 學歷者의 失業率도 크게 줄어 學歷間 所得隔差도 완화

8) 高山憲之(1980) 참조.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單純勞務職種의 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어 職種間 임금격차도 감소되었다.

대체적으로 보아 指標上으로 나타난 우리나라 所得分配狀態는 良好한 것으로 판단되며 地理的인 특징의 하나로서 아시아 國家의 所得不平等度는 1人當 所得水準이 비슷할 경우 여타지역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表 9〉에서 보듯이 소득분포의 國際比較를 보면, 최근 우리나라의 분배상태는 台灣과 스웨덴에 이어 매우 양호한 나라 群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日本의 경우 1970년대말에 비하여 1980년대 후반경에는 土地價格의 急上昇 등으로 富의 偏在現象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所得分配指標가 악화되고 있어 우리나라에 의미있는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近年에 土地, 住宅 등 不動産價格의 폭등으로 대규모 資本利得이 발생하였다는 생생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地下經濟의 규모팽창에 힘입어 致富한 일부 벼락부자들을 중심으로 최근 과시적 소비풍조가 확산되고 있는 등 物質萬能風潮를 팽배시켜, 가지지 못한 계층에 속한 국민들의 相對的 貧困感을 자극하거나 展示效果(demonstration effect)를 통하여 전체국민의 消費行爲를 助長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더불어 우리 國民들은 대체로 貧富隔差를 용인하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이와 같은 物質中心 風潮는 人間輕視로 연결되어 상대적으로 所得이나 資産이 적은 사람들의 근로자세나 經濟行爲에도 否定的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테면 성실 근면하게 勤勞하겠다는 의지가 박약해진다든가 手段·方法을 가리지 않고 致富하겠다든가 장기에 걸쳐 쌓아올려야 하는 貯蓄 대신 당장의 消費에서 만족을 느낀다든가 하는 등의 行態變化는 우리 經濟의 지속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政策當局의 현명한 處方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나. 經濟成長과 富의 分配

經濟成長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일반적으로 生産性增加率이 상대적으로 낮은 農業部門이 製造業部門 등에 뒤떨어지면서 所得이나 資産이, 開發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都市地域의 上位所得階層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表 9〉 所得分布의 國際比較

	年度	1人當 GNP	지니係數
韓　國	1980	1,592	0.389
	1985	2,194	0.363
	1988	4,127	0.336
日　本	1968	1,436	0.354
	1979	8,738	0.336
	1986	16,155	0.356
台　灣	1980	2,310	0.303
泰　國	1981	738	0.436
인도네시아	1979	343	0.500
캐 나 다	1981	11,954	0.374
美　國	1979	10,613	0.412
英　國	1979	7,415	0.362
西　獨	1981	11,077	0.414
스 웨 덴	1981	13,605	0.329
노 르 웨 이	1979	11,581	0.356

資料：寺崎康博, 「所得分配： 世界の所得較差」, 『日本經濟研究』, 第20號, 1990.5.
經濟企劃院, 『韓國의 社會指標』, 1989.
Republic of China,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90.
Republic of China, *Statistical Yearbook of the Republic of China*, 1990.

富의 分配狀態가 악화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金融資產 측면에서는, 情報나 接近性 등의 이유로 資產所有가 당초부터 高所得階層에 집중되어 있었고 近年에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證券市場의 活況으로 金融資產의 총규모가 늘어나면서 資產의 偏重分布現象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富를 구성하는 또 하나의 要素인 實物資產 측면에서는, 그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각종 開發에 따르는 資產價値의 上昇惠澤이 소수 大企業群을 위시하여 일부 高所得階層에 귀속됨으로써 분배상태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成長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富의 偏重現象은 產業化가 진전되면서 經濟成長의 혜택이 고루 퍼지게 되면 所得隔差가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所得分配의 개선이 지속될 경우 富의 偏在現象도 완화되게 된다. 產業化의 진전으로 新規雇傭이 창출되고 특히 遊休農村人力의 일부가 제조업종으로 흡수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고르게 배분되는 勤勞所得의 비중이 커지게 되어 경제 전반적인 衡平提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平等化傾向은 相續稅, 贈與稅 등 富의 再分配機能을 지닌 租稅政策의 엄격한 운용과 經濟力集中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장치가 先行되어야 기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個人所得에서 점하는 財產所得의 비중이 높을수록 所得分配는 물론 富의 分配도 더욱 악화되는 추세를 그리게 되는데, 先進國들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아 富의 所有集中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경우, 產業化의 계속적인 진전은 財產所得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켜 分配構造를 개선시키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產業化初期에는 資本의 집중현상으로 富의 分配가 악화되나 經濟發展이 成熟段階에 접어들게 되면 資本收益率이 저하되어 財產所得의 비중이 저하되는 추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表 10〉에서 主要先進國들의 富의 分配現況을 보면 대체로 두가지 특징적인 면모를 알 수 있겠는데, 그 하나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近年에 올수록 그 集中度가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所得分配에 비해서 富의 集中現象의 강도가 훨씬 높다는

〈表 10〉 資產集中의 國際比較

(단위 : %)

	年度	上位 1% 및 5% 人口의 占有比率		지니係數
		上位 1%	上位 5%	
美 國	1962	28.5	46.5	0.68
	1983	26.2	44.1	0.66
英 國	1923	61	82	0.66
	1970	30	54	n.a.
	1981	23	43	n.a.
프랑스	1977	18.5	45.0	0.78
韓 國	1988	13.2	31.2	0.57

資料 : 美 國 ; Edward N. Wolff, "Estimates of Household Wealth Inequality in the U.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p. 1987.

英 國 ; Anthony F. Shorrocks, "UK Wealth Distribution: Current Evidence and Future Prospects," in E. Wolff(ed.),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Wealth*,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U.S.A., 1987.

프랑스 ; Annie Fouquet Insee and Dominique Strauss-Kahn, "The Size Distribution of Personal Wealth in France(1977): A First Attempt at the Estate Duty Method", *Review of Income and Wealth*, Dec. 1984.

韓 國 ; 韓國開發硏究院, 「國民生活水準 및 經濟意識調査」, 1990.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富의 分配에 관한 公式統計가 全無한 관계로 本院이 1988년을 기준으로 행한 家口調査結果의 集積値를 활용하여 富의 分配指標를 산정하였는바, 資料의 現實狀況의 반영 측면에서 先進國에 비하여 精度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지만 先進國보다 富의 集中現象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2. 高度成長의 社會的 費用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개인소득이 꾸준하게 증대된 배경에는 여가의 단축, 安全度의 희생, 건강에 위험을 주는 요소의 증가 등과 더불어 公害, 도시지역의 人口過密, 交通滯症으로 인한 時間의 浪費 등 사회적 비용이란 代價가 지불되었으며 이는 국민생활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여 事故 및 犯罪의 증가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近年에는 民主化·自由化로 요약되는 政治的·社會的 改革措置가 高度成長의 副作用과 합세하기 시작하면서 變革過程의 혼란이 초래하는 經濟的 效率喪失의 정도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특히 韓國製造業部門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週當 근로시간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일관성 있게 53~54시간대를 유지하여 日本을 포함한 歐美先進國의 平均勤勞時間보다 약 1/3이나 초과하고 있었고, 근무환경면에서 安全을 輕視하거나 무리한 延長勤務, 근로강행 등으로 產業災害가 늘어나 이로 인한 死亡者數가 1970년에 비하여 1988년에는 3倍 이상 불어나게 되었다. 또한 職業病의 有病者數도 지난 18년간 10.8倍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9].

物質主義 및 核家族化 경향과 함께 利己主義의 팽배, 民主化·自由化過程에서 분출된 과도한 요구와 經濟正義가 확립되지 못한 데 주로 기인하는 相對的 生活隔差나 富의 축적과정에 대한 正當性 不認定, 勞使紛糾의 만연 등 社會階層間 對立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人間輕視, 질투, 원망, 불평 등 敵對的인 감정의 표출경향과 더불어 공격적이고 인내심이 결여된 생활자세로 인하여 犯罪率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治安對策이 미흡하여 社會的 不安感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근면·성실하게 노력하는 근로자세는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적은 시간의 근로로 보다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우리 經濟는 活力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國民健康의 또 다른 측면에서도 전국적으로 自動車普及率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人口 10萬名當 自動車事故로 인한 死亡者數는 29.7명(1989년)에 달하고 있어 赤信號를 울려주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며 더욱이 증가하는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시간낭비, 정서적인 고통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所得水準의 향상과 醫療保險의 擴大普及으로 의료서비스이용률이 늘어가면서 醫師를 비롯한 醫療人力과 醫療施設이 꾸준히 증가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수요에 비하여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醫療資源의 地域間 不均等分布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制度運營의 硬直性과 政策對應의 非效率性으로 인하여 의료

9) 1989년에 와서는 產災로 인한 死亡者數와 職業病 有病者數가 줄어들었음. 經濟企劃院, 『韓國의 社會指標』, 1990 참조.

서비스의 質은 낮은 반면 의료이용상 浪費要因이 크게 불어나고 있어 國民醫療費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國民健康狀態를 대표하는 두가지 指標인 嬰兒死亡率과 平均壽命은 계속 개선되고는 있으나 1989년 현재 出生兒 千名當 영아사망률은 23명을 기록하여 日本의 7.5명에 비해 아직도 큰 격차가 있다[10].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大氣·水質汚染과 소음 등 公害問題는 國民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해악을 끼치고 있으나 實態把握에 근거를 둔 효과적인 政策樹立努力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3. 經濟成長과 福祉制度의 體系化

社會福祉制度는 그 性格上 長期的인 眼目에서 體系的으로 마련되어야 하나 우리나라는 短期的인 視角에서 각종 제도가 도입되었다. 비록 짧은 시간에 社會保障이 擴充되어 國民福祉增進에 기여하였지만 制度間 중복 또는 空白 등으로 효율적인 연계가 결여되어 있다. 각종 社會保險制度는 제도 상호간의 有機性이나 調和가 결여되어 非效率的이고 浪費的인 요소가 많으며 關聯部處가 경쟁적으로 立法을 서둘렀기 때문에 제도가 體系化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社會保障이나 社會開發, 社會福祉 등 혼용되고 있는 여러 槪念들에 대하여 定義와 包括範圍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附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用語는 國家나 國際機構에 따라서 포괄범위는 엇비슷하나 다르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社會保障 및 關聯制度는 전면적으로 실시될 때, 이를테면 <附表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내용을 갖추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社會保障制度 중 社會保險은 1964년 産災保險을 시발로 醫療保險과 年金保險 등 主要制度와 最低賃金制가 차례로 도입되었고 단기간에 醫療保險 適用人口가 급속하게 확충되었으나 年金制度의 적용범위확대, 그리고 雇傭保險의 도입·검토가 큰 과제로 남아 있다.

公的扶助는 生活保護, 醫療保護를 근간으로 영세민자녀의 敎育費支援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政府의 支援幅이 증가되고 있기는 하나 家口當 지원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최저생활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지원대상인구의 선정, 給與水準 등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質的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관련 部處間의 업무협조의 결여, 專門人力의 不足 등으로 社會福祉傳達體系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어 영세민의 복지수요를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社會保障制度의 未備는 결국 이 분야로 돌려지는 公共財源의 규모와 관련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社會保障費支出의 對GDP比率을 보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 2% 수준에 머물고 있다. 日本은 이미 1970년에 4%, 그리고 1975년에는 같은 비율이 6%를 넘어섰고, 西獨은 同 比重이 1970년에 16% 이상이었던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 社會保障費 支出水準이 상대적으로 매우

10) 保健社會部 統計는 1988년과 1989년 공히 영아사망률이 12.5명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반면, 世界銀行 資料는 1988년 24명, 1989년 23명으로 집계하고 있는바, 여기서는 國際比較分析의 취지에 비추어 後者의 수치를 인용함.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1* 참조.

〔圖 1〕 韓·日·台灣間 財政收支의 擴大推移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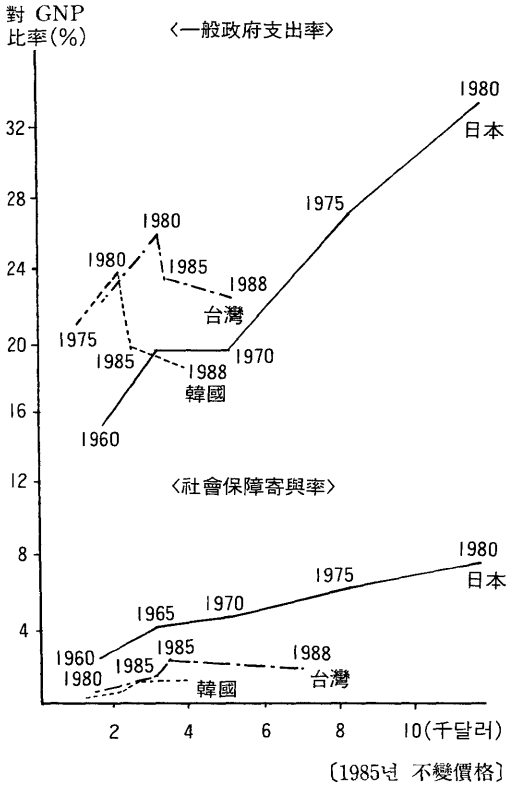

註：台灣의 社會保障寄與金 내에는 其他 기여금이나 징수금 포함.

資料：韓國銀行, 『國民計定』, 各年度.
Japan, Economic Planning Agency, *Yearbook of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Republic of China, *Statistical Yearbook of the Republic of China,* 1990.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圖 1]에서 1人當 所得水準을 감안하여 社會保障寄與金率과 一般政府支出率을 韓·日·台灣間 비교해 보면 前者는 日本이 훨씬 높은 편이며 台灣도 韓國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一般政府支出率은 1980년까지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그 이후로는 比率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 兩國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요컨대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日本이나 台灣에 비하여 긴축적인 財政運用으로 경제성장에 따라 증대되고 있는 福祉財政需要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등 財政의 再分配機能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공공주택, 도로 등 社會間接資本의 擴充이나 生活關聯施設의 質的 改善도 미흡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日本은 西歐型 福祉國家를 지향하면서도 그 나라 특유의 資源節約型 福祉增進施策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 社會保障의 主要部門 制度 도입에 있어 原型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日本의 社會保障制度는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土地와 住宅政策의 失敗로 富의 偏在現象이 심하고 住生活을 위한 협소한 공간 등이 문제로 제기될 뿐, 세계적으로 가장 安全한 환경에서 안정된 삶을 구가하고 있는 日本國民은, 西歐諸國의 경우에 비하여 老齡人口比率이 상대적으로 낮은 탓도 있지만 매우 費用效果的으로 社會保障을 전개하여 왔다고 평가된다. 앞으로 日本은 老齡人口의 급속한 증가에 힘입어 社會保障을 위한 財政負擔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나 오늘날 西歐型 복지국가가 경험하고 있는 "高福祉－高負擔"의 방향을 피하려고 全力投球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表 11〉에서 韓國의 1989년과 日本의 1970년에 있어서 一般政府의 支出構成을 비교할 경우 日本은 保健과 社會保障部門 등 主要社會開發分野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支出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政府가 一般行政과 國防에 투입하는 公共財源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社會開發을 위한 公共財源이 상대적으로 적게 할당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表 11〉 一般政府의 支出構成 推移 : 韓・日・台灣 比較

(단위 : %)

	韓 國			日 本	台 灣	
	1980	1986	1989[1]	1970	1987	1989
一般行政 및 國防	38.3	37.4	36.1	17.4	49.9	51.1
社會開發	28.7	33.3	33.7	56.7	42.1	39.1
敎 育	14.8	16.7	16.1	18.4	21.5	16.8
保 健	2.0	2.4	3.2	15.2	3.2	2.4
社會保障	5.5	5.5	7.6	14.3	15.2	17.5
住 宅	2.3	3.2	3.2	7.6	2.2	2.4
其 他	4.1	5.5	3.6	1.2	-	-
經濟開發	28.8	23.4	22.6	25.9	7.7	8.4
其 他	4.3	5.8	6.1	0.0	0.3	1.4
合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人當GNP[2](美달러)	2,060	2,439	4,366	5,140	4,753	6,693

註 : 1) 豫算値.
2) 1985년 不變價格.

資料 :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90.
日本經濟企劃廳, 『國民經濟計算年報』, 1982.
Republic of China,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90.
Republic of China, *Statistical Yearbook of the Republic of China,* 1990.

〈表 12〉 主要 經濟・社會指標의 韓・日・台灣間 比較

	日 本			韓 國[1]	台 灣
	1968	1970	1975	1989	1989
都市化率(%)		72.2	75.9	70.8	81.7
從事上地位別 就業者構成(%)					
被傭者	62.9	65.0	70.0	59.2	67.4
自營者	19.7	19.2	18.0	28.8	23.4
家族從事者	17.3	15.8	12.0	12.0	9.2
平均家口員數(名)	3.9	3.7	3.5	4.1(1985)	4.1
65세이상 老人人口比率(%)	6.8	7.1	7.9	4.6	6.0
65세이상/15~64세 인구(%)	9.8	10.3	11.7	6.7	8.9
1人當 GNP(美달러)[2]	4,224	5,140	8,336	4,366	6,693

註 : 1) 推定値.
2) 1985년 不變價格.

資料 : 經濟企劃院, 『韓國의 社會指標』, 1989 및 內部資料.
日本總務廳, 『日本經濟年鑑』, 1989.
日本統計協會, 『日本長期統計總鑑』, 1987.
Republic of China, *Taiwan Statistical Data Book*, 1990.
Republic of China, *Statistical Yearbook of the Republic of China,* 1990.

있다. 台灣은 一般行政 및 國防에 대한 정부 지출이 매우 높은 편이나 經濟開發費支出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 敎育·社會保障 등 社會開發을 위한 지출비용의 비중이 우리나라의 그것보다 상당수준 높게 나타나고 있다.

經濟社會發展段階의 특징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一連의 經濟·社會變數를 정리해 보면 〈表 12〉와 같다. 우리나라의 最近動向은 就業者構成, 都市化率 그리고 平均家口員數 등에서 日本의 1960년대 後半期와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老齡人口比率이나 老年人口指數(65세이상 인구/15~64세 인구)는 兩國間에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台灣은 韓國과 비교하여 平均家口員數는 같으나 都市化率, 老齡人口, 被傭者比率 등이 높게 기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長期的으로 老人人口가 점점 빠르게 증가될 전망이므로 앞으로 年金制度의 확대적용, 老人福祉對策 등의 강구로 人口動態의 추이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要約 및 結言

지금까지 우리는 國民生活水準에 영향을 주는 주요 巨視 및 微視指標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추구해 온 開發戰略을 검토하고 우리의 現座標를 모색코자 하였다. 資料의 制限, 國際比較에서 흔히 제기되는 같은 차원에서의 評價의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國際比較分析은 유용한 手段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政策的 含意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韓國이 추구한 開發政策의 力點은 대체적으로 經濟成長에 두어져 왔었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는 높은 經濟成長率이나 1人當所得의 지속적인 증가를 통하여 消費水準의 제고와 消費構造의 개선 등 國民生活水準의 향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더불어 所得分配를 위시하여 保健, 營養指標 등 社會指標 측면에서도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開發政策의 成功的 結實은 國民福祉增進에 크게 이바지한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과거 30년간 韓國經濟는 계속적으로 빠른 成長率을 기록하였으나 社會福祉 向上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미흡하였다고 평가된다. 지속적인 高度成長의 결과 國民生活向上을 위한 基本要件인 1人當 所得이 크게 증가되어 貧困人口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生活을 둘러싸고 있는 經濟·社會的 환경은 상대적으로 劣惡해지게 되었다. 앞으로도 產業化와 都市化가 계속될 전망임에 비추어 國民生活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生活與件의 改善에 대한 각별한 政策的 配慮가 요청된다고 본다.

우선 生活與件의 변화로 生活의 質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드높아가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들어 民主化와 自由化의 물결을 타고 衡平이나 福祉增進에 대한 각계각층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무리한 主張이나 欲求에 대하여는 自制하도록 관리되어야 하겠지만 正當한 국민적 요구나 權利는 保障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經濟史的인 경험을 통하여 볼 때, 衡平과 福祉增進을 수반하는 經濟成長이야말로 安定性과 持續性을 지녀왔다고 하는 귀중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 先進各國에서는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生活의 質(quality of life)

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市民들의 欲求가 經濟的·物質的 풍요함에서 健康, 精神的 安定이나 인간다운 文化的 價値의 추구 등 經濟外的 내지 內面的인 것의 充實로 옮아가고 있음을 본다. 이와 관련하여 UN 등 國際機關을 중심으로 '인간다운 삶'이 經濟成長의 최종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최근 人間開發(human developmen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도 특기할 만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國際的인 環境變化와 앞으로 韓國 國民들의 欲求가 生活의 質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轉移될 것으로 예상됨에 비추어, 계속적인 工業化 추진에 따른 社會的 費用 발생에 대하여 적절한 政策代案開發이 요청된다. 구체적으로 大氣汚染이나 水質汚濁, 人口의 都市集中, 過密이나 騷音에 대한 對策講究와 生活便宜施設에 대한 國民들의 欲求增加推移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빨리 달려가는 車일수록 순탄한 길에서는 순조로운 운행을 즐길 수 있겠지만, 굴곡이 많거나 평탄치 못한 길에서는 그만큼 事故의 위험도 높고 먼지나 소음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 법이다. 高度成長의 전개와 함께 그간 우리는, 이를테면 社會福祉制度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住宅 200萬戶建設 등 國民的 關心事를 정책으로 구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적어도 國民生活水準의 安定的 向上이란 시각에서 볼 때 經濟의 高成長過程은 各種 公害와 交通混雜, 產業災害나 事故, 犯罪 등 否定的인 指標의 上昇이나 突出을 아울러 수반하였기 때문에 그만큼 成長의 긍정적인 효과를 감쇄시켰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近年에는 富의 偏在現象이 社會的 이슈로 부각되었고 이에 자극을 받은 정부는 效率뿐만 아니라 衡平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 채 民間建設 중심의 住宅供給政策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평가로는 집값 안정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해야 할 것이나 住宅供給이 필요한 實需要者와 제대로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요컨대, 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두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國際比較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國民生活安定을 위해 社會開發에 배분된 公共財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고 그나마 費用效果性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된다. 둘째, 民主化나 自由化는 國民의 經濟福祉를 향상시킴에 있어서 긴요한 요소를 구성하나, 마치 봇물을 터뜨린 것처럼 일거에 社會政治的 改革을 추진한 결과 경제에 많은 주름살을 안겨 주었고 우리 經濟의 活力을 감소시키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앞으로 經濟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國民生活水準의 內實 있는 향상을 기해 나가자면 高度成長이 준 副作用과 民主化 추진의 試行錯誤를 극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삶의 質에 대한 수용할 만한 國民的 欲求를 과감히 받아들여 社會開發에 돌려지는 公的支出을 꾸준히 늘려나가되, 日本의 경험이 시사하는 것처럼 費用效果的인 지출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國民生活水準의 개선은 長期的인 視角에서 비전과 일관성을 지니고 추진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바, 社會政策의 추진에는 도량과 인내가 필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附表 1〉 社會保障 및 關聯制度의 槪念定義와 包括範圍

1. 일반적인 社會保障의 範圍:
   - 狹義의 社會保障: ① 社會保險, ② 公的扶助 및 ③ 社會福祉서비스
   - 廣義의 社會保障: ① ② ③과 ④ 公衆保健 ⑤ 報勳 (⑥ 環境衛生)

   *ILO의 國際比較를 위한 기준에서는 ⑥이 포함 안됨.
2. 社會政策(Social Policy)의 對象分野:
   - 西獨의 경우: ① 公衆保健 ② 住宅 ③ 社會保障
   - 英國의 경우: ① ② ③과 ④ 敎育
   - OECD의 경우: 住宅을 뺀 ① ③ ④를 묶어 社會支出(Social Expenditure)이란 개념을 사용
   - EC의 경우: 社會的 保護給與(Social Protection Benefits)라는 넓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職業訓練 및 알선, 住宅에 대한 給與, 企業福祉 혹은 기타의 慈善制度 등이 여기에 포함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① ② ③ ④와 人力開發을 합쳐서 社會開發分野라고 부름.
3. 社會福祉(Social Welfare)의 範圍:
   - 狹義의 社會福祉는 社會福祉서비스를 가리킴.
   - 廣義의 社會福祉는 가장 폭넓은 개념으로 經濟發展을 통하여 個人의 經濟福祉(Economic Welfare)가 社會全體的으로 개선되는 경우 社會福祉가 증진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여기에는 社會保障 및 關聯制度의 充實뿐만 아니라 社會的 衡平增進과 國民生活水準의 向上까지도 포함된다고 간주됨.

資料: 權純源(1991).

〈附表 2〉 社會保障 및 關聯制度의 分類와 主要 例

	所得給與	서비스 給與	施設 또는 現物
1. 社會保險			
公的年金 ┌基礎年金 / └附加年金	公的年金給與		
醫療保險	醫療費·分娩費 附加給與	診療·治療	入院·藥品
産災保險	産災保險給與	(診療·治療)	(入院·藥品)
失業保險(雇傭保險)	失業手當	(아래 4의 雇傭을 포함)	
兒童手當	兒童手當給與		
住宅手當等	住宅手當給與		
2. 公的扶助	生活扶助給與	醫療保護에 의한 診療·治療	醫療保護에 의한 入院·藥品
3. 其他 社會福祉서비스		孤兒, 老人, 身體障害者用 施設에 제공하는 서비스 등	孤兒院, 養老院, 身體障害者施設, 母子施設 등
4. 社會保障 關聯事業 ┌敎育	奬學金		學校給食, 敎科書 無料配付 등
├保健		豫防注射, 無料檢診	
├雇傭		公共職業訓練 및 紹介	
└報勳	補償金 (敎育支援)	(診療·治療)	(入院·藥品)

資料: 權純源(1991).

▷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各年度.

_____, 『韓國의 社會指標』, 各年度.

權純源, 『經濟發展段階와 社會保障政策의 方向』, 韓國開發研究院 政策討議資料 91-01, 1991.

權純源 外, 『分配不均等의 實態와 政策課題』, 韓國開發研究院, 1991(近刊).

保健社會部, 『保健社會統計年報』, 各年度.

鐵道廳, 『鐵道統計年報』, 1989.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90.

溝口敏行, 「國民生活の國際比較をめぐる諸問題」, 『日本經濟研究』, 第20號, 1990. 5.

高木新太郎, 「土地・住宅」, 『日本經濟研究』, 第20號, 1990. 5.

高山憲之, 『不平等の經濟分析』, 東洋經濟新報社, 1980.

寺埼康博, 「所得分配：世界の所得隔差」, 『日本經濟研究』, 第20號, 1990. 5.

日本經濟企劃廳, 「社會資本」, 『日本經濟』, 第20號, 1990. 5.

_____, 『國民經濟計算年報』, 1982.

日本 國民生活センタ (編), 『國民生活統計年報』, 各年度.

日本 總務廳 統計局(編), 『家計調査年報』, 各年度.

_____, 『國際統計要覽』, 1983, 1989.

_____, 『日本經濟年鑑』, 1989.

日本 統計協會, 『日本長期統計總鑑』, 1987.

Bronfenbrenner, M. and Y. Yasuba, "Economic Welfare" in K. Yamamura and Y. Yasuba(eds.), *The Political Economy of Japan*, Vol. I, 1987, pp.93～136.

Deaton, A, and J. Muellbauer, *Economics and Consumer Behavior,*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Glewwe, P., "Investigating the Determinants of Household Welfare in Cote d'Ivoire", Living Standards Measurement Study Working Paper No.71, The World Bank, Washington, D.C.

Griffin, K. and J. Knight, "Human Development: The Case for Renewed Emphasis" *Journal of Developing Planning,* No.19, 1989, pp.9～40.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The Cost of Social Security*, 1978～80.

Kuznets, S., "Quantitative Aspects of the Economic Growth of Nations: Ⅷ. Distribution of Income by Siz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11, Jan. 1963.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Human Development Report 1990,* New York, 1990.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1*, Washington, D.C., 1991.

韓國開發硏究院 硏究叢書 案內

1 韓國「인플레이션」의 原因과 그 影響
金光錫 著 18 切 判/ 122쪽 高級洋裝/3,000원

2 穀價政策의 計劃化～次善의 糧穀政策
文八龍 著 18 切 判/ 158쪽 高級洋裝/3,600원

3 韓國農業의 成長(1918～1971)
潘性紈 著 18 切 判/ 250쪽 高級洋裝/5,600원

4 韓國家計의 貯蓄行態
金光錫 著 18 切 判/ 146쪽 高級洋裝/3,000원

5 農產物價格分析論～理論과 政策
文八龍 柳炳瑞 共著 18 切 判/ 318쪽 高級洋裝/7,000원

6 *TRADE AND DEVELOPMENT IN KOREA*
洪元卓 A.O. Krueger 編 18 切 判/ 254쪽 高級洋裝/6,000원

7 *SOCIAL SECURITY IN KOREA*
朴宗淇 著 18 切 判/ 198쪽 高級洋裝/4,600원

8 *PUBLIC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L.P. Jones 著 18 切 判/ 294쪽 高級洋裝/6,600원

9 韓國의 外換·貿易政策
金光錫 L.E. Westphal 共著 18 切 判/ 336쪽 高級洋裝/7,600원

10 *FACTOR SUPPLY AND FACTOR INTENSITY OF TRADE IN KOREA*
洪元卓 著 18 切 判/ 236쪽 高級洋裝/5,000원

11 勞動供給과 失業構造
金秀坤 著 18 切 判/ 202쪽 高級洋裝/4,600원

12 韓國의 鐵鋼需要分析
宋熙秊 著 18 切 判/ 250쪽 高級洋裝/5,600원

13 韓國鐵鋼工業의 成長
金胤亨 著 18 切 判/ 508쪽 高級洋裝/11,000원

14 *PLANNING MODEL AND MACROECONOMIC POLICY ISSUES*
金迪敎 編 18 切 判/ 492쪽 高級洋裝/11,000원

15 *INDUSTRIAL AND SOCIAL DEVELOPMENT ISSUES*
金迪敎 編 18 切 判/ 342쪽 高級洋裝/7,600원

16 韓國의 人口問題와 對策
金善雄 編 18 切 判/ 532쪽 高級洋裝/11,600원

17 韓國電力需要 및 價格의 分析
張榮植 著 18 切 判/ 252쪽 高級洋裝/5,600원

18 市場構造와 獨寡占規制
李奎億 著 18 切 判/ 370쪽 高級洋裝/8,000원

19 賃金과 勞使關係
金秀坤 著 18 切 判/ 244쪽 高級洋裝/5,600원

20 韓國의 人口와 人口政策
洪思媛 著 18 切 判/ 214쪽 高級洋裝/4,600원

21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洪元卓 著 18 切 判/ 410쪽 高級洋裝/9,000원

22 成長과 構造轉換
金光錫 M. Roemer 共著 18 切 判/ 194쪽 高級洋裝/4,000원

23 韓國의 綜合輸送體系
林浩奎 著 18 切 判/ 306쪽 高級洋裝/7,000원

24 韓國企業의 財務行態
南相祐 著 18 切 判/ 204쪽 高級洋裝/4,600원

25 韓國經濟의 高度成長要因
金光錫 朴埈卿 共著 18 切 判/ 166쪽 高級洋裝/3,600원

26 *COMMUNITY DEVELOPMENT AND HUMAN REPRODUCTIVE BEHAVIOR*
洪思媛 著 18 切 判/ 198쪽 高級洋裝/4,600원

27 農業投資分析論
文八龍 林栽煥 共著 18 切 判/ 250쪽 高級洋裝/5,600원

28 纖維・電子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金榮奉 著 18 切 判/ 180쪽 高級洋裝/4,000원

29 鐵鋼工業의 特性과 需給構造
南宗鉉 著 18 切 判/ 192쪽 高級洋裝/4,600원

30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朱鶴中 編 18 切 判/ 470쪽 高級洋裝/10,600원

31 韓國의 國土・都市・環境
宋丙洛 編 18 切 判/ 410쪽 高級洋裝/9,000원

32 韓國의 保健財政과 醫療保險
朴宗淇 著 18 切 判/ 272쪽 高級洋裝/6,000원

33 石油化學工業의 現況과 展望
具本英 著 18 切 判/ 236쪽 高級洋裝/5,000원

34 成長과 都市化問題
宋丙洛 E.S. Mills 共著 18 切 判/ 270쪽 高級洋裝/6,000원

35 韓國의 流通經濟構造
林浩奎 著 18 切 判/ 306쪽 高級洋裝/7,000원

36 韓國工業化패턴과 그 要因
金光錫 著 18 切 判/ 272쪽 高級洋裝/6,000원

37 保健醫療資源과 診療生活圈
延河清 金學泳 共著 18 切 判/ 336쪽 高級洋裝/7,600원

38 韓國의 敎育과 經濟發展
金榮奉 N.F. McGinn 外 18 切 判/ 272쪽 高級洋裝/6,000원

39 貿易・外援과 經濟開發
A.O. Krueger 著 田英鶴 譯 18 切 判/ 256쪽 高級洋裝/5,600원

40 *MACRO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18 切 判/ 414쪽 高級洋裝/9,000원

41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IN KOREA*
朴宗淇 編 18 切 判/ 384쪽 高級洋裝/8,600원

42 *KOREAN REGIONAL FARM PRODUCT AND INCOME: 1910~75*
A. Keidel 著 18 切 判/ 268쪽 高級洋裝/6,000원

43 韓國의 農村開發
文八龍 潘性紈 D.H. Perkins 共著 18 切 判/ 396쪽 高級洋裝/9,000원

44 需給構造와 物價政策
李 烘 著 18 切 判/ 288쪽 高級洋裝/6,600원

45 經濟開發과 政府 및 企業家의 役割
司空 壹 L.P. Jones 共著 18 切 判/ 410쪽 高級洋裝/9,000원

46 *PRIMARY HEALTH CARE IN KOREA*
延河清 著 18 切 判/ 214쪽 高級洋裝/4,600원

47 韓國 經濟·社會의 近代化
金滿堤 E.S. 메이슨 外 18 切 判/ 530쪽 高級洋裝/11,600원

48 輸出主導型 成長經濟의 外換政策
李天杓 著 18 切 判/ 228쪽 高級洋裝/5,000원

49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下)
朱鶴中 著 18 切 判/ 432쪽 高級洋裝/9,600원

50 國民經濟와 福祉年金制度
延河清 閔載成 共著 18 切 判/ 428쪽 高級洋裝/9,600원

51 技術革新의 過程과 政策
金仁秀 李軫周 共著 18 切 判/ 402쪽 高級洋裝/9,000원

52 韓國의 經濟開發과 人口政策
R. 레페토 金善雄 外 18 切 判/ 328쪽 高級洋裝/7,000원

53 韓國의 金融發展：1945～80
D.C. 콜 朴英哲 共著 18 切 判/ 334쪽 高級洋裝/7,600원

54 韓國의 賃金構造
朴烜求 朴世逸 共著 18 切 判/ 440쪽 高級洋裝/10,000원

55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KOREA*
金光錫 朴埈卿 共著 18 切 判/ 238쪽 高級洋裝/5,400원

56 轉換期의 韓國經濟와 金融政策
金重雄 南相祐 共著 18 切 判/ 354쪽 高級洋裝/8,000원

57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
延河清 著 18 切 判/ 348쪽 高級洋裝/8,000원

58 地方財政調整制度와 財源配分
李啓植 著 18 切 判/ 280쪽 高級洋裝/6,000원

59 벤처캐피탈의 役割과 課題
姜文秀 著 18 切 判/ 236쪽 高級洋裝/5,000원

60 家計貯蓄과 租稅政策
李啓植 著 18 切 判/ 366쪽 高級洋裝/8,000원

61 韓國의 公企業管理政策
宋大熙 著 18 切 判/ 310쪽 高級洋裝/8,400원

62 韓國經濟의 歷史的 照明
具本湖 編 18 切 判/ 368쪽 半 洋 裝/11,000원

韓國開發研究院 新刊案內

國民年金財政의 安定化를 위한 政策課題 및 方向 南 相 祐 外
半洋裝／18切判／194쪽／定價 5,600원

開放化와 下都給體制의 改編 金 周 勳 趙 觀 行 著
半洋裝／18切判／268쪽／定價 7,600원

韓國經濟의 歷史的 照明 具 本 湖 編
半洋裝／18切判／368쪽／定價 11,000원

法經濟硏究(I) 李 奎 億 李 成 舜 外
半洋裝／18切判／296쪽／定價 7,400원

金利自由化의 課題와 政策方向 南 相 祐 金 東 源 著
半洋裝／18切判／142쪽／定價 4,400원

韓國財政 40年史〔第一卷～第七卷〕 編纂委員會 編
洋 裝／18切判／各卷 700쪽 내외, 各 10,000원 내외

國家豫算과 政策目標(1991) 李 啓 植 盧 基 星 編
半洋裝／18切判／328쪽／定價 8,800원

KDI圖書會員制 案內

■ 會員에 대한 特典
- 會員加入期間(1년)중 本 硏究院이 發刊하는 一切의 刊行物을 郵送함.
  (단, 自體資料 및 配布制限資料는 제외)
- 本 硏究院 情報資料室 所藏圖書·資料의 利用惠澤을 드림.

■ 會 費 : 60,000원

■ 加入方法
- 직접 本院 發刊資料相談室에 拂入하거나,
- 가까운 郵遞局에서 本院 郵便對替計座(計座番號 : 010983-31-0514919)에 拂入하면 됨.

■ 問 議 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의 41 우편번호 : 130-012
KDI 발간자료상담실(Tel. 960/3283, 960/4811(交) 305)